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77-10

2010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4448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2010

농림수산식품부

- 목 차 -

I. 원양협력관실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정원	3
2. 과별 주요 업무	4
3. 예산 및 기금	5

II. 원양정책 추진 방향	7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
2.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내 수산 여건	11
3. 현 황	12
4. 기본 추진 방향 설정	14

III. 과별 업무추진 계획	15
------------------------------	-----------

원양정책과	17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19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21
3. 한-러간 불법수산물 교역방지 협정체결 추진	23
4.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25
5.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26
6.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27
7.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28
8.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29
9.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32
10.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36

《참고》

《1- 1》 다량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38
《1-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41
《1- 3》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42
《1- 4》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43

《1- 5》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44
《1- 6》 원양어업 생산 추이	47
《1- 7》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48
《1- 8》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49
《1- 9》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50
《1-10》 원양업체 현황	51
《1-11》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53
《1-12》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54
《1-13》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55
《1-14》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56
《1-15》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57
《1-16》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58
《1-17》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	59
《1-18》 2009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60
《1-19》 한국원양산업협회회원사 현황	63

국제기구과 73

1. 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2.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참고》

《2- 1》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논의경과 및 주요내용	82
《2- 2》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83
《2- 3》 OECD 수산위원회 개요	84
《2- 4》 FAO 수산위원회 개요	85
《2- 5》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86
《2-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7
《2- 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89
《2- 8》 '10년도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90
《2- 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92
《2-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106
《2-11》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	108

어업교섭과 109

- 1. 남북수산업협력 활성화 111
-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113
- 3.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115
-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117
-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118

《참고》

- 《3- 1》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121
- 《3- 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122
- 《3- 3》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23
- 《3- 4》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24
- 《3- 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125
- 《3- 6》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126
- 《3- 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128
- 《3- 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129
- 《3- 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130
- 《3-10》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132
- 《3-11》 수산진흥종합대책 133
- 《3-12》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134
- 《3-13》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135
- 《3-1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 136
- 《3-15》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138
- 《3-16》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139
- 《3-17》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140
- 《3-18》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141
- 《3-19》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142
- 《3-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43

IV. 수산통계	145
1. 어업별 생산량(총괄)	147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148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150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154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155
6. 수산물 수입 현황	156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159
8.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현황	160
9. 주요 품목별 일본 수출 현황	161
10. 업종별 어선현황	162
11. 수산종묘 방류량	162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163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163
V. 소관법령	165
1. 원양산업발전법	167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186
3. 원양산업발전 시행규칙	197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15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5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9
7. 신어장개발사업자금지원요령	243
8.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248
9.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255
10.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259
11.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263
12.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272
13.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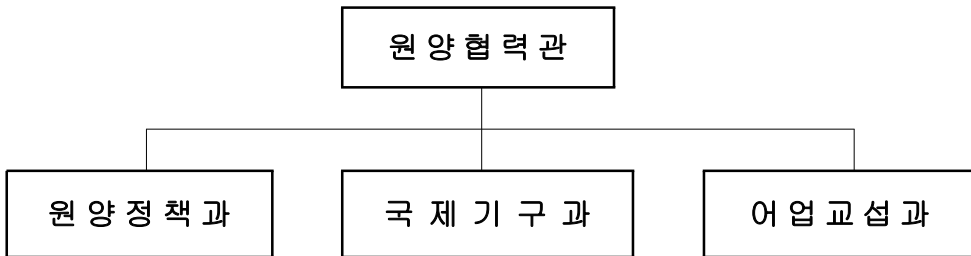
14.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286
15.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295
16.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310
17.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319
18.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321
19.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327
20.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333
21.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338
2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343
23.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354
2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358
2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80
2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92
VI. 원양어업 모식도	403
1. 참치연승어업	405
2. 참치선망어업	406
3. 원양트롤어업	407
4. 원양봉수망어업	408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409
6.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어업)	410
VII. 수역도	411
1. 지역기구도(1)	413
2. 지역기구도(2)	414
3. 원양어업어장도	415
4.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416

I .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과 별	구분	계	고위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정원	35	1	1	2	1	14	9	2	1	4
	현원	35	1		3	1	14	10	1	1	4
원양정책과	정원	14	1	1		1	4	5	1		1
	현원	14	1		1		5	5	1		1
국제기구과	정원	10			1		5	1	1	1	1
	현원	10			1		5	2		1	1
어업교섭과	정원	11	-		1		5	3	-	-	2
	현원	11			1	1	4	3	-	-	2

* 원양협력관실 : 35명(원양정책과 14, 국제기구과 10, 어업교섭과 11)

2. 과별 주요 업무

담당과	주요업무내용
원양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한·러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양어업 생산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수산기구 (22개)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수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산관련 국제협약 (31개)에 관한 사항 4. 어업협정(10개) 및 수산협력약정(6개)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한·일, 한·중, 한·러 제외)
어업교섭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5. 수산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기금

□ 2010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총괄(예산+기금)	194,936	214,512	19,576	10
<예산>	32,193	35,426	3,233	10
일반회계	1,994	2,726	732	37
원양협력관실 기본경비	3	3	0	0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8,381	5,399	△2,982	△36
어업협정 이행	1,994	2,726	732	37
농특회계	30,199	32,700	2,501	8
원양어업활성화	3,754	5,197	1,443	38
연안국과의 협력	2,435	3,370	935	38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4,010	4,133	123	3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20,000	20,000	0	0
<기금>	162,743	179,086	16,343	10
수산발전기금	162,743	179,086	16,343	10
노후원양어선 대체 지원	16,376	32,319	15,943	97
우수 수산물 지원	134,000	134,000	0	0
소득보전 직불	1,500	1,500	-	-
폐업지원금	5,000	5,000	0	0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	3,000	3,000	0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10		-	-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1,600	2,000	400	25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징수	267	267	0	0

* 원양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은 수산금융이차보전에 포함되어 합계에서 제외

Ⅱ. 원양정책 추진 방향

□ 세계 28개국에 입어하여 61만톤(1조1천억원)을 어획

- 생산량(만톤) : ('96) 72 → ('00) 65 → ('05) 56 → ('09) 61
 - ※ 조업척수(척) : ('96) 607 → ('00) 575 → ('05) 410 → ('09) 362
- 수출액(백만불) : ('96) 531 → ('00) 535 → ('05) 410 → ('09) 540
 - ※ '09년 수산물 총 수출액 1,511백만\$ 중 원양산 수산물 수출비중 35.7%

□ 해외 수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노후 어선 신조(40억원) 및 원양어업 경영자금 2,680억원 지원
-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인도양(FAO 51해구) 및 베트남 배타적경제 수역(EEZ), 남서대서양(FAO 41해구) 자원조사 실시('09)
- 체계적인 해외어장조사 및 정보관리를 위한 '해외어장정보화 시스템' 구축(약 30개국)

□ 적극적인 수산외교로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확보

- 쿼터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 추진
 - 러시아 EEZ 수역에서 명태 45천톤, 오징어 7천톤 등 66천톤 확보
 -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의 안정적 쿼터 확보(39천톤)
- 연안국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 및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
 - 태평양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한 물자공여(400백만원)
 - ※ 솔로몬, 나우루와 장기(5년) 입어약정을 체결, 안정적 입어권 확보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참치자원관리프로그램 참여(2억원)
-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협상력 강화
 - 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CCSBT) 연례회의 등 7개회의 국내 개최
 - 수산관련 국제기구(22개)에 48회 참석하여 쿼터 및 조업조건 협상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09.10)

- 어업 인프라 강화를 통해 매년 70만톤 이상 원양생산 기반 구축
 - 노후원양어선(평균선령 27년) 38척을 '16년까지 신조 대체
- 「관련회사」 육성을 통해 원양어업의 산업화 지원
- 자원 부국과 맞춤형 경제협력 과제 발굴
- 농수산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한 해외수산식량자원 확보

□ 수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 및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산발전기금 용자 지원
 - 예산/업체수: ('07) 1,365/112 → ('08) 1,369/138 → ('09) 1,400억원/140개사
 - * 수출액(백만\$): ('80)760 → ('90)1,513 → ('00)1,504 → ('05)1,193 → ('08)1,447 → ('09)1,511
-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위한 김 이물질선별기(53대) 및 금속 탐지기(15대) 구입 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9회) 및 박람회 기간 중 8,400만\$ 계약 체결
- 한·아세안 TRQ 적용 물량에 대한 관세차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8,458톤, 85억원)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 한·일 상호 입어수역에서 한국이 어획량 1.5배, 조업척수 2.8배로 양호
 - ※ 연평균 입어척수·어획량('99~'09): 한국 766척 2,4871톤 / 일본 279척 1,7154톤
- 중국어선의 입어규모 감축을 통해 우리 EEZ수역의 자원관리 기여
 - (협정전) 12,192척/440천톤 → ('01) 2,796/164 → ('10) 1,750/ 67
 - ※ 양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등량·등척 합의(6만톤/1,700척)
- 한·일 중간수역의 침적어구 수거를 통한 어장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로 양국 어업인간 조업 마찰 해소
 - ※ ('07) 1억원 → ('08) 2억원 → ('09) 23억원 (추경 20억 포함)

□ 세계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 생산 적지 부재

-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세계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연어, 새우, 메기, 참치 등) 생산은 '참치(원양어업)'로 한정
 -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넙치 - 세계 1위, 해조류 - 세계 4위)은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높고, 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미흡

□ 국내 수산물 생산 증대는 한계에 봉착, 수요는 지속 증대

- 연근해 어업은 자원관리를 위한 조치 등으로, 양식은 적지 부족, 환경오염 문제 발생 등으로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는 무리
 - 특히, 원양어업은 자원 자국화 심화에 따른 어장 상실 가속화 등으로 생산량은 계속 감소 추세
- 지속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로 냉동 수산물 위주로 수입하여 충당
 - * 수산물 소비량 : ('02) 44.7kg/연/1인 → ('04) 49 → ('06) 54.2 → ('07) 55
 - * 수산물 수입량 : ('04) 1,280 천톤 → ('06) 1,377 → ('08) 4,187 → ('09) 4,080

□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탄력성 미흡

- 국내 글로벌 기업이 없어, 시장 개방시 국가도 기업도 외국 거대 기업(3~7조원 자산 규모, 5~8조원 매출) 종속자로 전략 우려
 - * NAFTA 사례 : 멕시코인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이 NAFTA 이후 7배 상승 → 카길 등 거대 곡물회사들이 옥수수 유통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시, 원양산업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81%('09년 집행 337억원 기준, 면세유 제외)은 금지 예상

가. 원양산업

- 원양어업 중심으로 발달하여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
 - 원양어업(362척)은 국내 수산물 전체 생산량 318만톤의 19%(61만톤, 1.1조원), 수산물 수출액 15억불 중 36%(5.4억불수준) 차지
 - 합작 수산물 생산 등을 합하면 연간 약 100만톤(추정) 수준
 - * 과거 810여척 중 400여척은 대부분 해외 합작 또는 제3국적으로 전환
- 반면, 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어려움에 봉착
 - 전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82%)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고, 자원 부국(연안국)은 합작 또는 직접 투자로 입어 방식을 전환 요구
 - * '87년 미국수역(명태)어장 등 7개 어장에서 철수, '93년 러시아 오호츠크 공해 조업 금지 등
 - 보유 원양어선수/총톤수 : ('90) 810척/422천톤 → ('09)362척/185천톤
 - * '09 현재 원양어선 362척 평균 선령 : 27년
 - 원양 어선 2척 이하 업체 62%, 자본금 2억 미만업체 52%
- 생산·가공·유통이 융복합화된 해외수산자원 개발 미흡
 - 그간 일부 업체는 소규모 해외수산자원 개발 등 추진
 - * '97년 이후 해외 수산분야 총 투자액 (35,461천\$) : 전체 해외 투자액 743억\$의 0.01%
 - 반면, 국가별 투자 정보 및 자금 부족이 사업 지속 실패 원인 및 신규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
 - 현재의 소규모 투자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략

나. 수산물 수출

□ 최근 수산물 수출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증가 추세

- 수산물 수출량은 '88년 19억불을 정점으로 감소 후 증가추세, 최근 수출진흥정책 추진 및 달러화 강세 등에 기인함

* 수출규모: '88년(19억불)→'97년(15)→'03(11)→'06(10)→'07(12)→'08(14)→'09(15)

* 업종별 수출 : 원양어업(36%), 연근해 및 양식(59%), 원료 수입후 가공 수출(5%)

□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일본 49%, 중국 9.6%, 미국 8.5%, 태국 8.4% 차지

- 최근 대일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대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감소

* 일본수출 : '97년(1,000백만불)→ '03(740)→ '07(573)→ '08(687)→ '09(734)

* 중화권 수출 : '97년(9.8백만불)→ '03(129)→ '07(185)→ '08(222)→ '09(177)

- 일본 등 수출 시장(국가)은 원어 또는 저차가공 중심으로 발달

* 주요 수출 품목 : 활넙치, 김, 전복, 굴

□ 수산물 40백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7개 업체이며 주로 저차 가공임

- 참치(314백만불), 오징어(108), 김(82), 넙치(52), 굴(42) 순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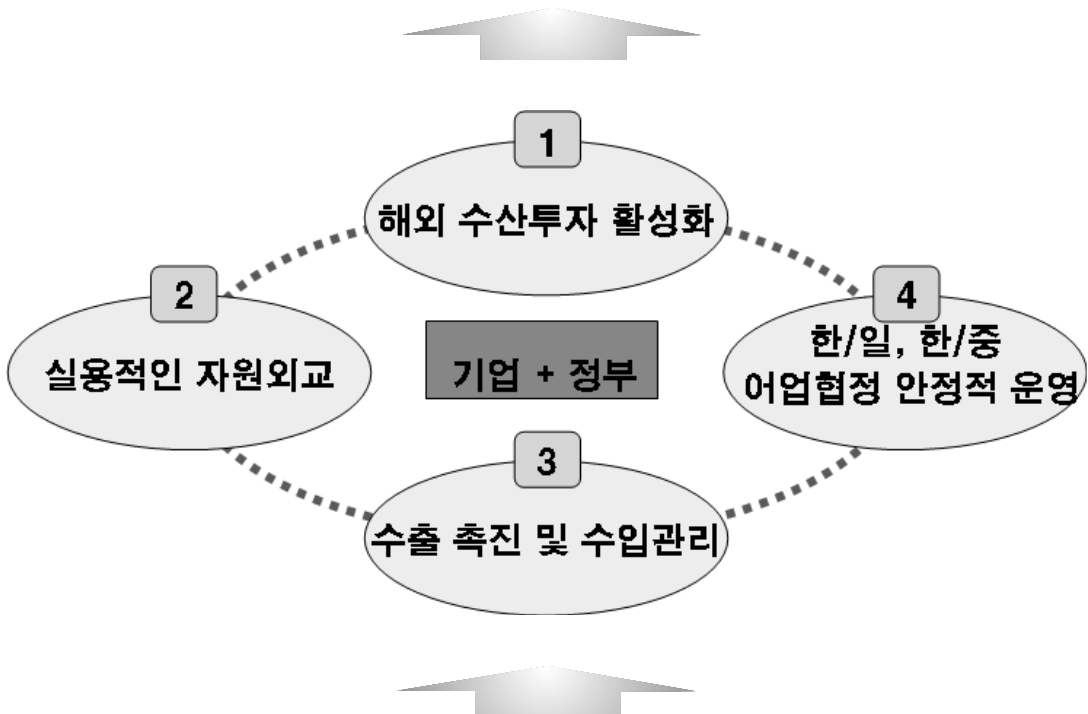
- 국내 수산 가공산업 침체로 인해 고차 가공품(통조림, 연육 등) 수출은 담보, 저차 가공품(냉동, 냉장) 수출은 다소 증가

* 고차가공품 : '97년(611백만불)→ '03(435)→ '07(374)→ '08(430)→ '09(439)

* 저차가공품 : '97년(882백만불)→'03(676)→'07(853)→'08(1,025)→ '09(1,072)

비전 및 목표

해가 지지 않은 수산 강국 실현
 <원양산업 생산량 100만톤, 수산물 수출 17억불 달성>



기본 방향

- 자원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 수산물 생산 거점 확보
- 금융기법을 활용한 외부자금 유입 장치 마련
- 세계속의 우리 기업 생산 수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Ⅲ. 과별 업무추진 계획

원양정책과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19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21
3. 한-러간 불법수산물 교역방지 협정체결 추진	23
4.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25
5.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26
6.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27
7.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28
8.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29
9.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32
10.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36

《참고》

《1- 1》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38
《1-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41
《1- 3》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42
《1- 4》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43
《1- 5》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44
《1- 6》 원양어업 생산 추이	47
《1- 7》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48
《1- 8》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49
《1- 9》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50
《1-10》 원양업체 현황	51
《1-11》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53
《1-12》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54
《1-13》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55
《1-14》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56
《1-15》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57
《1-16》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58
《1-17》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	59
《1-18》 2009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60
《1-19》 한국원양산업협회회원사 현황	63

가. 현황

- '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200해리 해양 분할 및 자원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규제 강화 등 새로운 해외어장 확보 애로
 -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이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의 EEZ 선포와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이 강화됨
 - '90년대 810여척이던 우리원양 어선이 '09년 현재 362여척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는 등 원양어업 환경은 아주 어려운 상황임
 - * 어획량 감소 및 유가급등 등 원양업계 경영악화로 업계 단독 해외 신어장 자원조사 실패시 위험부담 가중으로 투자기피

□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비 현황(총 20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8	15	29	29	29	22	20	26	18

나. 추진실적

- '01년부터 '09년까지 '01~'09년(18개수역, 200억원)까지 추진하여 현재 7개 수역에 대해서 상업 조업을 추진 중임
 - '02년부터 7개 수역에 대하여 약 185척의 원양어선이 약20만톤 (2,328억) 생산·성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북태평양 꽂치 (02)	남태평양 전갱이 (03)	북태평양 양돔 (04)	FAO41 민대구 (08)	미드웨이 참치 (07)	FAO47 메로 (05)	FAO51 체르네 (09)
조업척수	185	143	16	10	2	6	7	1
어획량(톤)	199,919	122,503	72,302	3,226	1,126	214	437	111
생산고(백만)	232,865	166,359	51,768	8,207	693	1,094	4,195	549

- '09년 자원조사 결과 평가 및 '1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1.19)
 - '09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결과, FAO 51해구(이빨고기, 체르네)는 상업 조업 가능성이 있고 FAO 41해구 및 베트남 어장은 불투명
 - '10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선정(3개소)
 - FAO 51해구(2차조사), SFAFO수역(전갱어), 기니아 수역(그루파)

다. 추진계획

- 인도양 서남부(FAO 51해구)해역 원양어업허가 추진
 - 금년 해외어장자원조사 후 상업조업 가능여부를 판단(수과원과 협의)하여 신규 원양어업허가 또는 조업구역 확대 검토
- 포클랜드수역의 오징어 어획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채낚기업체의 대체어장(FAO 41, 47해구 중심) 자원조사예산 확보 추진
 - 우리나라 오징어 주어장인 포클랜드 수역이 중국 및 대만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의 고갈
 - ('85) 93척, 260천톤 → ('04) 49척, 3.4천톤 → ('09) 29척, 24천톤

가. 현 황

- 러시아 경제수역(EEZ)은 우리 명태트롤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
 - '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로 러시아 EEZ 조업 시작
- 러시아는 명태 자원감소 및 자원보호를 이유로 총허용어획량 (TAC)을 불규칙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추세
 - * 명태 TAC 동향 : ('05)1,052→('06)1,060→('07)1,310→('08)1,500→('09)1,446→('10)1,582
- '91년 한·러어업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어업위원회를 개최(19차례) 하여 정부쿼터 배정 및 입어조건 등 협의

(단위 : 천톤)

년 도 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입어쿼터	100	1,554	77	77	74	74	67	56	54	61	59	51	32	38	39	34	55	60

* 입어쿼터 어종(8종) :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가오리, 청어, 복어, 가자미

나. 추진 실적

- '08.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 쿼터를 과거 4만톤 수준으로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청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진출과 한·러 수산물 불법 수출방지 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고 우리측 요구사항 수락
- 제19차 한·러위원회('09.12/서울)시 “한·러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체결과 “명태쿼터 45천톤” 확보(기본 40천톤, 추가 5천톤)
 - 러측 관심사항인 「IUU 어업방지 협정」과 우리측 관심사항인 「명태 조업쿼터」를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 계기 마련
 - ※ 명태 쿼터 확보 현황 : ('08) 28,500톤 → ('09) 39,000톤 → ('10) 45,000톤

- 2010년 한·러 수교 및 어업협정체결 20주년을 맞아 “한·러 수산협력 우정의 해”로 정하고 수산분야 교류협력 강화 합의
 - 러시아 극동지역의 어선조선소,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한국측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등 수산분야 교류 확대
 - 러시아 연해주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

다. 추진 계획

- 한·러 수교 및 어업협정체결 20주년을 맞아 금년은 호혜적·포괄적인 수산협력을 심화시키는 원년
 - 수산물 가공단지 및 어선조선소 등 수산부문 개발 기본계획 수립 ('09.12~'10.6, KMI)
 - ※ 러시아 어선 조선 수요 : '20년까지 600여척 신조 계획(러시아 수산진흥계획)
 - 러시아 수역내 조업중인 국적선사(5개사) 및 조업희망 선사를 중심으로 “한·러 어업투자회사 설립(가칭)”
 - ※ 투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북양트를 회원사별 100만불씩 출자 합의
 - 한·러 IUU 어업 방지협정 국내 이행조치 추진
 - 「한·러 IUU 방지협정 국내 이행을 위한 고시」 제정 추진('10.6)
- 한·러 수산투자 방안 협의('10.4, 블라디보스톡)
 - 한·러 어업투자회사 설립안, 양국 민간간 접촉창구(Contact point) 및 활게 수입방안 등 정식 논의
 -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중 협의를 통해 한·러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토록 추진('10.10)

가. 현황

- 러측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불법수산물에 대해서 "국부유출"로 판단하고 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
- '08.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정의 조기체결 요청
- 한·러 정상회담('08.9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추진

나. 추진경과

- ('09. 3월, 모스크바) : 금년 상반기내 협상을 통해 IUU 협정문안이 완성될 경우, 4만톤 수준으로 증대키로 기본적인 합의
- ('09. 5월, 모스크바) : 협정안을 13개조항 정리·합의하였으나, 발효 조항(제13조)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타결 실패
- ('09. 6.25~26, 모스크바) : IUU 협정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 및 가서명
- '09.12.21일 제19차 한러어업위원회시 양측 정부대표는 동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에 정식서명('10년 하반기 발효 추진)

다. 협정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선박은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거나, 각 당사국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양국 선박
- 어느 한쪽 당사국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신고 다른 한쪽 당사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

- 미 허가 선박이나 이 협정이 규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항구 이용 금지

* 협정의 발효시기(협정 제13조(발효조항)) :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당사자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일자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라. 향후 추진계획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국내 이행조치 추진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국내이행을 위한 고시제정(6월말)
- 러시아정부의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고시 발효(7월중순)

가. 현 황

- 참치 연승 등 전체 원양어선 380척중 선령 21년 이상되는 어선은 290척이며, 이중 31년이상 선박도 129척으로 선박 및 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국제경쟁력 약화

○ 원양어선 선령별 현황

구 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원양어선(척)	380	4	4	4	77	102	60	129

나. 추진 실적 및 계획

-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북양트롤, 오징어 채낚기, 해외 트롤업종의 어선 137척 중 24척의 노후선박을 대상으로 설비 현대화 투자계획 수립('08)

○ 연차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척/백만원)	24척/ 24,000	1척/ 1,000	1척/ 1,000	7척/ 7,000	7척/ 7,000	8척/ 8,000

※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척수조정 가능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어선 저선령화 보완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노후원양어선 저선령화사업 : 신조대체, 중고선 도입 지원

- 지원효과 분석 후 결과가 좋을 경우 타 업종의 노후선박 설비 현대화 사업으로 확대 지원하여 원양업체 경쟁력 제고

가. 현 황

- 중소기업규모 원양선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어획물 운반·가공·판매 등을 전담함으로써 전문화, 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나. 추진실적 및 계획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07.8)으로 원양어업관련회사 지원 근거 마련
 - ※ 원양어업관련회사 : 원양선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공동 수집·보관·운반·판매
- 예산지원(용자)을 위한 원양어업관련회사 실태 조사('09.6)
- 연차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한미FTA 발효 1차년도	한미FTA 발효 2차년도	한미FTA 발효 3차년도	한미FTA 발효 4차년도	한미FTA 발효 5차년도
총사업비(백만원)	20,200	5,000	3,000	4,000	4,000	4,200

※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사업은 한·미 FTA 협상 발효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인도네시아트롤과 대서양트롤 등 2개소에 지원(개소당 용자금 101억원)
 - 개소당 101억원 : 가공공장 35억원, 운반선구입 21억원, 운영자금 45억원
 - 지원조건 : 운반선 등 시설자금(용자 70%, 자담 30%,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용자 100%, 연리 3%, 1년상환)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인도양 및 대서양트롤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지원효과 분석 후 결과가 좋을 경우 타 업종으로 사업 확대 지원

가. 현 황

-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 해외수산시설 투자로 연안국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해외 어장 및 식량확보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
- 국내적으로 고유가, 수산자원감소, 양식장 과다개발, 원양어업 여건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 향후 국가간 식량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식량 기지를 조기구축,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

나. 추진실적

-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10억원, 용자)
 - 인도네시아 새우양식장 건립시설에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양식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생산 1,809톤, 매출 6,884천\$)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해외수산시설에 대한 건축비 및 시설비의 용자지원으로 해외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양산업기반구축에 기여토록 추진

라. '10 추진계획

- 해외양식·유통·가공 등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지원 사업 추진
 -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 계획(16억원)
 - 2개소 × 1,000백만원 × 용자 80% = 1,600백만원

가. 현 황

- 1979년 원양어선계획조선사업을 1989년까지 지원한 이후 신조대체가 전무하여 어선의 노후화로 원양어업의 기반상실 우려
 - 선박 안전성 확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3년부터 신조 대체사업 지원추진
 - 원양어선 선령(362척) : 20년이하 52척(14%), 21년이상 310척(86%)

나. 추진실적 및 '10년 계획

- 지원내용
 - 21년이상 노후된 원양어선의 신조대체 자금 융자(신조대체 70%)
- 지원실적
 - 참치선망어선 신조대체 : 3척 건조
 - '04년 1척, '06년 1척 건조, '09년 1척 건조
 - 저선령 중고선 도입('07지원 개시) : 5척 도입
 - '07, '08년에 참치연승 중고선 각 1척, '09년에 참치연승 중고선 3척 도입
- '10년도 추진계획
 - 선망신조('10~'11, 2개년) 준공 2척
 - 선망신조 완료('09~'10, 2개년) 1척

다. 향후 추진방향

- WTO-DDA 수산보조금 폐지 및 감축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으로 사업 수요의 적극 창출로 생산수단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도모

가. 현 황

- 수산물 수출은 '0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내외 수출여건 악화
 - 세계 주요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등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국가와 치열한 경쟁 불가피
 - ※ 수출액(백만\$) : ('01)→1,273→('04) 1,279→('05) 1,193→('06) 1,089→('07) 1,226→('08) 1,455→('09) 1,511
(증가율, %) (Δ15.4) (13.2) (Δ6.7) (Δ8.7) (2.6) (18.7) (3.8)
 - 국제 유가 및 환율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우리 수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 수산물 수출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출진흥대책 추진 필요
 - 기존의 수산물 수출진흥 정책과 병행, 수산물 수출인프라 확충 및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수산가공·수출기업 육성 등 정책 추진

나. 추진실적

-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산발전기금 융자 지원
 - 예산/업체수 : ('06) 1,447억/128개 → ('07) 1,366/130 → ('08) 1,406/138 → ('09) 1,400/140
 -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위한 김 이물질선별기('03부터 184대) 및 금속 탐지기('07부터 80대) 구입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99부터 123품목) 및 카탈로그 제작·배부('99부터)
 - 수출용 전복 물류센터 건립 지원('06~'07/5개소)
 -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 등에 제공('07부터)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우수 수산물 홍보 등 해외마케팅 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97부터 86회) 및 국내 국제무역박람회 지원(5회)
 - 국·내외 수산물 홍보('00부터/TV광고, 외국 공항·버스 광고 등)
 - 수출 시장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04부터/28회)
- 수출관련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외국과 협력
 - 한·일 무역실무(과장급) 회의 정기 개최(연 2회/총 24회) 등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지역거점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주력품목 지원 강화
 - 부산 감천항에 국제수산물 가공·수출단지 조성
 - 수출용 김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이물질선별기 등 지원
 - 활어 수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한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운영 등
-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수출 주력품목 및 선도기업 육성
 - 수산 정책자금(우수수산물 지원)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산물 수출관련 규제 발굴·완화 추진
 -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 확대,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등

라. '10 추진계획

- 지역거점 수출인프라 확충 및 주력품목 지원 강화
 - 부산 감천항 수산물류무역기지 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조성
 - '10확보예산(200억원)을 부산시에 교부
 - ※ 사업개요 : '09~'12년/1,390억원/부지 64,110㎡, 건축 82,996㎡
 - 김 이물질선별기(45대) 및 금속탐지기(15대) 구입지원 지속 추진

□ 수산물 가공 수출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추진

- 우수수산물 지원(수산발전기금/1,340억원)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 추진
- 유망품목에 대하여 수출상품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6억원, 20개 업체)

□ 주요 타깃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 국제식품(수산)박람회 참가 지원(8회), 로드쇼 개최 및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홍보
- 중국 상해 버스노선 광고 및 대형 할인 매장내 기획 홍보 등 추진
- 한일 무역실무회의의 2회 개최를 통한 비관세 장벽 개선 추진
- 수요자할당 김 IQ 활성화를 위한 수출판촉 및 홍보지원

□ 수산물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 등에 제공
- 정기 12회, 심층 조사 2개국(중국, 태국), 수산물 주요수입국 수출입 통계 작성 등
-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와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매칭바이어 시스템 구축 추진
- 수산물 수출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용 및 수출진흥회의(협의회 포함) 내실화 추진 등

가. 현황

□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

- '97년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 후 생산량 정체,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매년 수입 증가

※ 수입액(백만 \$) : ('04)2,261→('05)2,384→('06)2,770→('07)3,056→('08)3,097→('09)2,895
 (증가율 %) (15.3) (5.4) (16.2) (10.3) (1.3) (△6.5)

- '09년도 기준 주 수입대상국은 중국(29.5%), 러시아(15.0%), 베트남(10.5%), 일본(6.7%), 미국(4.3%) 순이며, 동 5개국의 수입액(1,914백만\$)이 전체 수입액의 66.1% 점유

- 주요 수입품목은 명태(11.4%), 새우(6.5%), 소금(6.1%), 낙지(4.1%), 참치(3.8%)순이며, 동 5개 품목의 수입액(926,642천\$)이 전체 수입액의 32.0% 점유

□ 수산물 양허 및 관세율 인하 압력으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불가피함

- 관세조치를 통한 민감품목 보호수단의 점진적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관세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 조정관세 품목 : '97(27개)→'05(11개)→'06(10개)→'07(9개)→'08(9개)→'09(9개)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및 WTO/DDA의 협상동향에 따라 수산부문의 대외여건 변화 대응

□ 수산물 수입물량이 증가하며, 다양한 수산물 가격 형성으로 낮은 가격 수입신고를 하여도 적발이 곤란

나. 추진실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TRQ) 제도를 운영하여 수산물 수입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조성
 - 한-아세안 TRQ적용 물량에 대한 관세차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8,458톤, 85억)
 - ※ 새우류 4품목 7,300톤 및 냉동갑오징어 2,000톤 등 총 9,300톤
 - 한-EFTA 고등어 TRQ 물량(500톤) 국내판매 예상수익금 33천만 원을 대형선망조합에서 고등어 소비홍보 등에 사용
 - 한-아세안, 한-EFTA 수산물 TRQ 관리제도 검토 및 운영방안을 개선
 -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09.8)

- 탄력관세 도입을 통해 국내 어업생산 경쟁력 제고에 노력
 - 2010년도 수산물 조정관세를 9개 품목에 적용하여 민감품목 보호
 - ※ 수산물 조정관세('09→'10) : 활뱀장어(27→27), 활돔·활농어·활민어(34→31), 냉동명태(30→30), 냉동꽁치(31→31), 냉동민어(53→50), 새우젓(42→42), 냉동오징어(22→22)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정보 조사 사업 추진
 - 주요 수산물 수입국(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 현지 유통경로 및 가격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수산물 가격조사('07, aT)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수산물 가격조사('08, 한국수산업)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08, aT)
 - 수산물 현지 수출가와 국내 위판가 조사비교 결과를 관세청 '저가신고조기경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저가신고 예방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수입 관리체제 구축·운영
 - 지속적으로 각국과 FTA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수입관리 방안 마련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및 WTO/DDA의 협상 동향에 따라 조정관세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수산물 수입증가율,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과 기타 업계요구사항, 외국과의 어업 및 교역실태 등을 고려 추진
- 한-아세안, 한-EFTA FTA TRQ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 수립
 - '09년 운영결과를 기초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개선 방안을 마련
 - 한-EFTA TRQ 운영 관련 고시정비를 통해 대행기관의 수입이익금 집행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FTA, DDA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의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 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관세청 “저가신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통계모형 및 수입기준 가격 설정”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
 -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가 수입신고로 인한 국내 유통질서 문란행위 차단하여 국내 어업인을 보호

라. '10 추진계획

□ FTA 체결에 따른 TRQ 물량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 한-EFTA TRQ '10년도 물량 도입(냉동고등어 500톤)하여 공매 실시
- 한-아세안 TRQ물량 9,300톤에 대한 두 차례의 입찰시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증대

□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품목수 및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신청

- '11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 반영을 위한 기획재정부 실무협의를, 관세심의위원회 상정 등 절차 추진 ('10 하반기)

※ 조정관세 품목현황 : ('06)11개→('07)9개→('08)9개→('09)9개→('10)9개

□ 수산물 저가신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정보조사 위탁사업 추진

- 사업예산 : 50백만원(수발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대상 품목

- 중 국 : 민물장어, 활홍민어, 신선냉장대구, 조미오징어, 북어, 냉동낙지, 마른명태, 염장새우, 활농어, 냉동조기, 활낙지
- 러시아 : 활대게, 냉동명태
- 베트남 : 냉동주꾸미, 조미취치포

□ 기타 추진계획

- 수산물 수출입 교역 정보인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매월 작성하고, 매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를 작성하여 배부

※ 관련실국, 지자체, 과학원, 감사원 및 수출입관련 업계 등에 제공(150부)

가. 현 황

- 목적 : 해외수산자원을 개발, 수입하는 자에 대한 관세 감면으로 원양어업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 도모
- 관세감면 추천근거 및 대상·방법·요건
 - 근거 : 관세법 제93조의7호(특정물품 면세)
 - 대상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대상사업별 방법과 요건(시행규칙 제43조)
 - 합작사업의 요건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
 -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이상 확보한 경우
 - 감면율 : 해당 관세액 면세(시행규칙 제43조)

나. '10년도 관세감면 물량 및 대상

○ 물량

(단위 : 톤)

구 분	합 계	명태	오징어	홍어	기타어종
계	188,001,000	174,744,000	2,787,000	810,000	9,660,000

- 대상업체 : 5개국 18개사 33척
 - 러시아 15개사 20척, 아르헨티나 3개사 7척, 칠레 1개사 3척, 멕시코 1개사 2척, 캐나다 1개사 1척

다. '10년도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계획

□ 배정기준

- 전년 관세감면 추천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어선별·어종별 최소 물량을 배정하고 잔량은 유보

(단위 : 톤)

구분	명 태	오징어	홍 어	기 타
최소 배정량	4,000	100	100	200

- 유보량에 대해서는 배정 물량을 전량 소진한 선박부터 추가로 배정하는 올림픽방식으로 추가 배정하여 합작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유도
- 관세감면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어선 화재 또는 침몰 등으로 조업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은 배정하되 조업 선박 도입시점부터 감면 추천
- 합작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차원에서 상반기중 선박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1/2을 회수하고 10월말까지 투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1/2 회수하여 추가 반입 가능 업체에 전배

《 참고 1-1 》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농어목, 고등어과 및 황새치과(9속 18종)




○ 고등어과 (Family Scombr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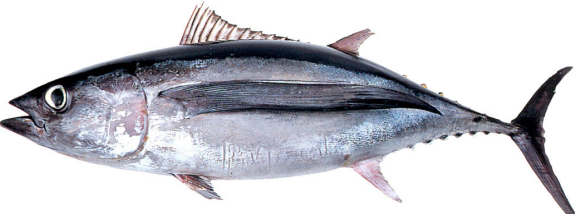

학 명	국 명	영 명
<i>Thunnus albacares</i>	황다랑어	Yellowfin tuna
<i>Thunnus thynnus</i>	참다랑어	Northern bluefin tuna
<i>Thunnus obesus</i>	눈다랑어	Bigeye tuna
<i>Thunnus alalunga</i>	날개다랑어	Albacore
<i>Thunnus maccoyii</i>	남부참다랑어	Southern bluefin tuna
<i>Thunnus tonggol</i>	백다랑어	Longtail tuna
<i>Katsuwonus pelamis</i>	가다랑어	Skipjack tuna
<i>Euthynnus affinis</i>	점다랑어	Kawakawa
<i>Auxis thazard</i>	물치다래	Frigate tuna
<i>Auxis rochei</i>	몽치다래	Bullet tuna
<i>Scomberomorus commerso</i>	동갈삼치	Narrow-barred Spanish mackerel
<i>Scomberomorus guttatus</i>	점삼치	Indo-Pacific king mackerel

○ 황새치과 (Family Xiphiidae)

학 명	국 명	영 명
<i>Makaira mazara</i>	녹새치	Indo-Pacific blue marlin
<i>Makaira indica</i>	흑새치	Black marlin
<i>Tetrapturus audax</i>	청새치	Striped marlin
<i>Tetrapturus albidus</i>	백새치	White marlin
<i>Istiophorus platypterus</i>	돛새치	Indo-Pacific sailfish
<i>Xiphias gladius</i>	황새치	Swordfish

○ 주요 다랑어류의 형태 및 특징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징 및 용도
 <p>◆ 눈다랑어(메바찌, Bigeye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수온 13~29℃, 수심 0~250m의 표층 근처 또는 중층 수역에서 생활 ○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 체장 236cm, 체중 197 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 ○ 가격 : 냉동40kg이상 800~2,000엔/kg 25kg이상 500~1,000엔/kg, 15kg이상 300~45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40kg이하 2,000~10,000엔/kg
 <p>◆ 황다랑어(기하다, Yellow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서식수온은 18~31℃로 다른 종에 비해 비교적 넓은 수온대에 적응 ○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체장 208cm, 체중 176.4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20~30% 부수어획(통조림) ○ 가격 : 냉동25kg이상 450~700엔/kg, 15kg이상 300~40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700~2,000엔/kg
 <p>◆ 남방참다랑어(미나미마구로, Sou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층 원양성, 대양성으로, 남태평양의 30°S 남부에 분포 ○ 5~20℃ 사이의 저온에 서식 ○ 먹이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등을 기회적으로 포식 ○ 최대 체장 200cm, 체중 200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 가격 : 냉동40kg이상 1,500~3,500엔/kg 10~40kg 800~1,500엔/kg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성 및 용도
 <p>◆ 참다랑어(혼마구로, Nor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온대, 아한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태평양(일본 북부 아오모리)과 대서양(지중해)에 사는 2개 그룹으로 구별 ○ 해수면 바로 아래(아표층)에서 유영 ○ 먹이는 주로 군집 소형 어류(멸치, 꽁치, 청어 등),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 체장 3m, 체중 560kg(북대서양) ○ 과거 연승선에서 일부 어획(횃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CAT의 어기 제한(3~5월중순)등 조업규제로 '98년부터 조업중단 ○ 가격 : 냉동 1,500~3,000엔/kg 신냉 5,000~20,000엔/kg
 <p>◆ 날개 다랑어(돔보, Albac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북위 45~50°, 남위 30~40°)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두 계군으로 크게 나누어 짐 ○ 표층 근처 ~ 중층(380m ~ 600m)에 서식 ○ 최대 체장 127cm, 체중 40kg ○ 연승선의 부수 어획종(저가 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통조림) ○ 가격 : 냉동 2,000~2,900\$/톤(가공용) 신냉 200~300엔/kg
 <p>◆ 가다랑어(가쓰오, Skipjack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대표적 부어성 어종으로 서식 수온은 15~30°C이며,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특히 수온 전선대에 많이 서식 ○ 먹이는 주로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등 ○ 최대 체장은 108cm ○ 선망선의 주요 채포종, 연승선의 부수어획종(통조림캔 및 가쓰오) ○ 가격 : 700~1,100\$/톤

《 참고 1-2 》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단위 :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 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소요 예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 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꽂 치	3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꽂 치	4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꽂 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원양,근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 승	47해구 공해	메 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북태평양 미드웨이	참 치	9
'07.8	상업어선 2척	트 롤	중부베링	명 태	6
'09.12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류	6.5
'09.9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9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이빨고기	7

《 참고 1-3 》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 조업상황

○ 2010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및 입어료

(단위 : 달러 / 톤당)

어종별	입어료(\$/톤)		조업 쿼터(톤)	
	'09 합의	'10 합의	'09 합의	'10 합의
합 계			55,473	60,565
명 태	315	325	39,000	40,000
대 구	362.5	365	2,694	4,450
청 어	100	100	736	700
가오리	134	134	800	800
가자미	269	269	300	500
꽁 치	99	101	7,393	7,500
오징어	90	93.5	4,500	6,500
복 어	80	81.5	50	115

○ 2009년 러시아수역 정부간 어획쿼터 소진실적

(단위 : 톤)

구 분	수 역	업 종	조업척수	쿼터	소진량
계		4개업종		55,473	51,784
명 태	북서베링	중층트롤	7	39,000	38,996
대 구				119	118
청 어				736	104
대 구	북서베링	저 연 승	2	2,575	2,574
가오리				800	799
가자미				300	0
꽁 치	남 쿠 릴	봉 수 망	16	7,393	5,237
오징어	연 해 주	채 낚 기	50	4,500	3,946
복 어				50	10

《 참고 1-4 》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품 명	기본 관세 (%)	조 정 관 세 (%)																중감 (A-B)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		2010 (B)
		11 품목	14 품목	20 품목 (상/하)	27 품목 (상/하)	23 품목	14 품목	14 품목	14 품목	12 품목	12 품목	12 품목	11 품목	10 품목	9 품목	9 품목	9 품목		9 품목
활벨장어 0301-92-9000	10	-	-	-	-	50	30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27% 또는 (1,879원/kg)	27% 또는 (1,879원/kg)	27% 또는 (1,879원/kg)	-
활 돔 0301-99-4000	10	100	100	100	100	100	80	70% 또는 (5,122원/kg)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00원/kg)	55% 또는 (4,024원/kg)	50% 또는 (3,658원/kg)	45% 또는 (3,292원/kg)	45% 또는 (3,292원/kg)	40% 또는 (2,781원/kg)	36% 또는 (2,670원/kg)	34% 또는 (2,292원/kg)	31% 또는 (2,272원/kg)	Δ3 +종량세 20원 감
활 농 어 0301-99-9050	10	100	100	100	100	100	80	70	65	60	55	50	45	40	38	38	34	31	Δ3
활 민 어 0301-99-9095	10	-	-	-	-	-	-	-	-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4 (참조기, 부세 제외)	31 (참조기, 부세 제외)	Δ3
냉동명태 0303-79-1000	10	-	-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
냉동곰치 0303-79-8000	10	-	-	/30	-	50	50 (학공치 제외)	5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36 (학공치 제외)	34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
냉동민어 0303-79-9095	10	-	-	-	/100	100	90	80	70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63 (참조기, 부세 제외)	57 (참조기, 부세 제외)	53 (참조기, 부세 제외)	53 (참조기, 부세 제외)	50 (참조기, 부세 제외)	Δ3
새 우 젓 0306-23-3000	20	-	-	-	100	100	70	60% 또는 (396원/kg)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46% 또는 (315원/kg)	42% 또는 (287원/kg)	42% 또는 (283원/kg)	- +종량세 4원 감
냉동오징어 0307-49-1020	10	-	-	-	/30	40	40	40	40	40	35	30 (연육 제외)	27 (연육 제외)	24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

* '10년도는 할당관세 대상없음, 음영표시는 당해년도 신규적용 품목임

《 참고 1-5 》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어 류

(단위 : M/T)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꼼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90	676,445	322,176	138,493	56,705	34,339	-	5,846	12,248	8,430	3,788	94,420
'91	588,661	177,392	171,975	69,344	23,301	26,034	9,017	11,655	10,153	3,204	86,586
'92	702,094	320,858	115,295	83,818	25,203	33,708	9,127	8,738	6,513	2,884	95,950
'93	539,358	217,119	74,171	67,587	24,840	40,144	14,705	8,594	5,791	3,461	82,946
'94	704,746	303,969	145,541	64,831	30,627	31,987	19,693	10,678	9,414	8,325	79,681
'95	700,735	336,810	137,848	51,951	26,821	31,321	21,254	7,168	7,423	9,734	70,405
'96	543,835	221,219	130,153	35,324	28,641	18,681	21,392	5,680	7,789	7,471	67,485
'97	598,313	215,814	115,927	61,261	31,410	50,227	27,478	3,657	11,567	7,751	73,221
'98	606,235	230,143	143,390	73,354	33,042	13,922	20,803	3,273	9,585	3,814	74,909
'99	476,441	145,720	109,780	43,255	26,558	18,159	24,444	5,978	12,866	10,030	79,651
'0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1	568,795	199,123	137,569	58,957	31,335	20,869	22,033	4,834	3,503	8,903	81,669
'02	423,696	24,825	173,693	48,778	31,962	20,088	24,295	8,253	3,857	7,192	80,753
'0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7	448,335	20,109	214,934	54,040	22,827	16,976	16,593	5,689	2,483	4,780	89,904
'08	445,367	27,980	187,277	70,778	20,092	29,591	15,404	6,905	2,779	3,450	81,111
'09	493,857	38,996	257,481	36,823	21,921	22,001	15,990	6,812	2,383	4,459	86,991

□ 갑각류

(단위 : M/T)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계류	새우류	기타
'90	6,352	4,491	1,861	-	-	-
'91	2,262	360	1,897	5	-	-
'92	2,598	709	1,410	-	-	479
'93	4,453	3	1,380	45	-	3,025
'94	4,142	-	902	152	-	3,088
'95	2,194	-	737	746	-	711
'96	1,046	-	792	205	-	49
'97	666	251	287	114	-	14
'98	2,252	1,916	216	120	-	-
'99	1,898	52	1,769	64	-	13
'00	6,534	4,499	1,835	192	-	8
'01	5,233	1,650	1,852	30	-	1,701
'02	13,663	12,965	275	5	-	41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50	37,074	53	95	-	28
'08	35,522	35,441	8	6	14	53
'09	29,588	29,396	5	4	3	180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90	236,515	229,148	4,316	1,120	-	1,931
'91	282,610	270,686	10,749	807	-	368
'92	319,964	316,732	1,994	297	-	941
'93	197,660	194,952	1,615	498	-	595
'94	178,377	176,171	1,505	544	-	157
'95	194,395	193,124	906	346	-	19
'96	173,803	172,435	991	357	-	20
'97	230,424	227,016	3,174	54	-	180
'98	114,110	112,291	1,384	336	-	99
'99	313,070	309,195	1,445	2,311	-	119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1	165,029	163,092	1,076	92	-	769
'02	142,987	141,352	1,100	87	-	448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7,247	223,338	1,315	381	2,165	48
'08	185,293	181,780	1,310	19	1,649	535
'09	88,505	84,652	1,993	721	1,080	59

《 참고 1-6 》

원양어업 생산 추이

□ 업종별 · 연도별

(단위 : 톤)

	계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트롤	해외트롤	기 타
'60	914	914	-	-	-	-	-
'70	89,621	71,363	-	-	-	18,258	-
'80	458,209	112,673	544	1,688	258,905	63,676	20,723
'90	919,312	69,524	173,343	88,843	312,218	161,650	113,734
'95	897,324	52,586	175,464	152,935	337,632	141,154	37,553
'98	722,597	67,467	200,905	82,158	231,210	113,600	27,257
'99	791,409	48,703	142,091	263,312	147,379	156,014	33,910
'00	651,267	58,387	170,025	159,726	87,830	133,100	42,199
'01	739,057	65,526	178,072	127,411	198,541	132,261	37,246
'02	580,346	61,631	206,150	94,760	24,998	160,623	32,184
'03	544,591	48,794	190,452	80,871	23,401	161,720	39,353
'04	499,400	53,667	184,985	25,010	21,985	183,738	30,015
'05	552,096	49,619	210,777	28,144	26,726	187,929	48,901
'06	639,184	46,149	249,340	87,668	26,373	209,546	20,108
'07	712,832	45,438	254,897	118,139	20,259	245,973	28,113
'08	666,182	37,922	249,137	109,186	22,214	208,447	39,276
'09	611,950	43,907	283,380	43,342	36,524	174,380	30,417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서양 오징어의 풍흉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함

업종별로는 참치연승어업이 약 5만톤, 참치선망어업이 25만톤 내외 수준으로 중서부태평양 등에서 조업하고 있고, 북양트롤어업은 2002년부터 러시아 민간쿼타 미확보 및 어선세력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참고 1-7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단위 : 톤)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꽁치	기 타
'60	914	914	-	-	-	-
'70	89,621	71,363	-	-	-	18,258
'80	456,549	124,753	189,774	4,687	-	137,335
'90	919,312	241,110	311,703	233,331	17,762	115,406
'95	897,324	227,173	336,810	193,017	31,321	109,003
'98	722,597	267,286	230,143	112,291	13,922	98,955
'99	791,409	189,709	145,720	309,195	18,159	128,626
'00	651,267	225,795	86,066	177,843	25,029	136,534
'01	739,057	239,443	199,123	163,092	20,869	116,530
'02	580,346	267,462	24,825	141,352	20,088	126,619
'03	544,591	239,102	21,890	121,945	31,219	130,435
'04	499,400	238,624	19,997	69,999	22,625	148,155
'05	552,096	258,062	26,004	81,172	40,509	146,349
'06	639,249	295,440	26,269	170,211	12,009	135,320
'07	712,832	300,268	20,109	223,338	16,976	152,141
'08	666,182	286,889	27,980	181,780	29,591	139,942
'09	611,950	326,649	38,996	84,652	22,001	139,652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어종별로는 참치류가 약 30만톤으로 꾸준히 어획되고 있고, 명태류는 러시아 쿼타량에 따라, 오징어류는 포클랜드 수역의 어황에 따라 어획량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임

《 참고 1-8 》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천톤, 백만\$)

생산 및 수출		'02	'03	'04	'05	'06	'07	'08	'09	
수산물 총생산	생산량	2,477	2,487	2,519	2,714	3,032	3,271	3,363	3,182	
	수출	물량	430	425	406	412	376	536	613	652
		금액	1,160	1,129	1,279	1,193	1,089	1,226	1,445	1,511
< 원양 >	생산량	580	545	499	552	639	711	666	612	
	수출	물량	233	226	191	217	258	280	258	312
		금액	414	365	395	380	410	471	506	540
o 참 치	생산량	268	239	239	259	295	300	287	327	
	수출	물량	143	121	101	110	167	103	109	175
		금액	278	231	261	232	282	240	332	355
-참치연승 (횃감용)	생산량	62	49	54	49	46	45	38	44	
	수출	물량	51	37	40	32	29	20	26	25
		금액	201	169	208	160	150	125	199	211
-참치선망 (가공용)	생산량	206	190	185	210	249	255	249	283	
	수출	물량	92	84	61	78	138	83	83	150
		금액	77	62	53	72	132	115	133	144

- o '09년 원양어업 생산량(612천톤)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9% 차지
 - 원양수출(540백만\$)은 수산물 수출액(1,511백만\$)의 36% 차지
- o '09년 참치 생산량(327천톤)은 원양어업 생산량중 53% 차지
 - 참치수출(355백만\$)은 원양수산물 수출액(540백만\$)의 66% 차지

《 참고 1-9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천\$)

	계	참치류	새우류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70	38,008	35,694	-	-	-	2,314
'80	351,865	196,581	16,027	-	103,782	35,475
'90	516,880	329,357	9,921	14,315	45,427	117,860
'95	539,513	298,382	5,272	45,961	29,817	160,081
'98	529,540	318,934	1,813	24,655	44,357	139,781
'99	429,325	292,124	605	16,189	40,229	80,178
'00	538,972	350,723	2,991	39,340	54,501	91,417
'01	389,688	273,165	3,521	28,474	42,526	42,002
'02	414,478	278,377	1,353	23,237	59,390	52,121
'03	365,422	231,500	866	39,304	73,256	20,496
'04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05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06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07	471,041	239,895	10,490	66,371	112,873	41,412
'08	505,689	332,080	6,245	51,556	109,281	6,527
'09	539,688	355,428	12,291	44,574	124,528	2,867

원양어획물 수출에서는 참치류가 1990년 이후 매년 약 3억불 정도가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면서 어황 및 환율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어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오징어류도 포클랜드 어장의 생산량에 따라 수출금액의 변동요인이 됨

《 참고 1-10 》

원양업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60	'70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업체수	1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06	95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업 진출 이래 1970년 36개사로 매년 계속 증가를 보인 후 1995년 185개사를 정점으로 현재 95개사로서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 업종별 추이

	계(척)	참치연승	참치선망	북양트롤	새우트롤	해외트롤	오징어 채낚기	기 타
'60	3	3	-	-	-	-	-	-
'70	278	246	-	27	5	-	-	-
'80	750	439	2	39	112	90	13	55
'90	810	276	39	44	68	135	88	160
'95	637	226	30	36	32	157	124	32
'98	545	203	26	38	8	146	99	25
'99	550	202	26	34	3	158	105	22
'00	535	197	26	33	8	155	92	24
'01	507	193	27	30	2	147	85	23
'02	482	193	26	23	1	142	75	22
'03	464	190	27	11	1	142	71	22
'04	433	182	28	8	1	138	50	26
'05	410	177	28	7	1	123	51	23
'06	393	169	28	7	1	118	50	20
'07	387	165	28	6	-	116	49	23
'08	380	158	29	6	-	114	49	24
'09	362	153	29	5	-	101	31	43

1957년 참치연승어선 1척이 인도양에 처음 진출한 이래 원양어선 세력이 매년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810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9년 현재 362척으로 원양어업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톤급별 추이

(단위 : 톤)

	계	100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1000	1001이상
'81	770	74	36	140	218	245	57
'93	628	49	44	55	172	252	56
'95	637	36	39	56	189	270	47
'96	607	23	40	57	187	256	44
'97	602	24	39	55	191	250	43
'98	545	12	35	53	168	236	41
'99	550	5	44	50	165	243	43
'00	535	4	45	46	160	237	43
'01	507	6	38	44	138	241	40
'02	482	5	34	42	134	230	37
'03	464	5	32	46	126	230	25
'04	433	6	31	43	122	207	24
'05	410	6	25	42	118	195	24
'06	393	5	25	41	111	187	24
'07	387	4	24	42	110	184	23
'08	380	4	25	41	109	177	24
'09	362	2	22	37	105	173	23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어업 진출 이후 척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1-11 》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톤급	계	100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2001	3001	4001	5001
			이하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3000	~4000	~5000	5001 톤 이상
합	계	362	2	22	37	105	138	11	8	8	3	5	14	5	1	1	2
참치연승		153	-	-	1	66	86	-	-	-	-	-	-	-	-	-	-
참치선망		29	-	1	-	-	-	-	3	8	1	3	10	3	-	-	-
북양트롤		5	-	-	-	1	-	-	-	-	-	-	1	1	-	-	2
해외트롤		101	1	20	33	24	11	1	2	-	1	2	3	1	1	1	-
오징어 채낚기		31	-	-	-	4	19	6	2	-	-	-	-	-	-	-	-
풍봉수 치망		17	-	-	3	-	12	1	-	-	1	-	-	-	-	-	-
기타		26	1	1	-	10	10	3	1	-	-	-	-	-	-	-	-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 어업 진출이후 척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1-12 》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계	362	4	4	5	39	131	47	132
참치연승	153	-	2	2	28	105	10	6
참치선망	29	4	1	-	1	3	16	4
북양트롤	5	-	-	-	-	1	-	4
오징어채낚기 (오징어·외줄겸업)	31 (1)	-	-	-	7	6	2	16 (1)
꽁치붕수망 (꽁치·오징어겸업)	17 (16)	-	-	-	1 (1)	2 (2)	2 (2)	12 (11)
트롤	101	-	1	2	1	9	16	72
태평양	34	-	-	-	-	6	12	16
대서양	57	-	1	2	1	3	4	46
인도양	10	-	-	-	-	-	-	10
저연승 (통발·저연승겸업)	3 (10)	-	-	-	2	-	-	1 (6)
모선식외줄	12	-	-	-	1	-	-	11
원양통발	1	-	-	1	-	-	-	-

원양어선은 2009년말 현재 362척으로서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참치연승·참치선망은 79%, 해위트롤어선의 96%이상이 21년 이상 노후 선박임

《 참고 1-13 》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단위 : 척)

	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비 고
계	362	200	128	34	
참 치 연 승	153	113	16	24	
참 치 선 망	29	28	1	-	
오 징 어 채 낚 기	31(1)	-	30(1)	-	(원양외출낚시겸업)
꿩 치 봉 수 망	17(16)	17(16)	-	-	(오징어채낚기겸업)
북 양 트 롤	5	5	-	-	
해 외 트 롤	101	34	57	10	
기 타	26	3	23	-	
· 통 발	10	-	10	-	
· 저 연 승	3	2	1	-	
· 모 선 식 외출낚시	12	-	12	-	
· 원양통발	1	1	-	-	

원양어선은 전체 362척 중에서 참치어선이 182척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트롤어선이 101척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음

해역별로 보면, 태평양수역에 200척, 대서양수역에 128척, 인도양수역에 34척이 진출하고 있음

《 참고 1-14 》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70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평 균 보 유 척 수	7.7	9.1	9.1	5.5	5.2	3.4	3.7	3.8	4.0	3.7	3.6	3.6	3.7	3.6	3.5	3.6	3.8
업 체 수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06	95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1개 회사당 약 8~9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1개 회사당 약 3~4척으로 감소하였음

□ 업체별 선박 보유 척수

	계	1척	2척	3~5척	6~10척	11~20척	21척이상
업 체 수	95	40	19	21	8	5	2
구 성 비 (%)	100	42.1	20.0	22.1	8.4	5.3	2.1

2009년 현재 원양업체는 총 95개사로서 그 중 1~2척을 보유한 영세업체는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트roller업 등 기타업종이며, 11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 업종임

《 참고 1-15 》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3	827	52	775
1988	1,911	292	1,619
1990	1,513	368	1,145
1995	1,722	843	879
1996	1,635	1,080	555
1997	1,493	1,045	448
1998	1,369	587	782
1999	1,521	1,179	342
2000	1,505	1,411	94
2001	1,274	1,648	△ 374
2002	1,160	1,884	△ 724
2003	1,129	1,961	△ 832
2004	1,279	2,261	△ 1,018
2005	1,193	2,384	△ 1,191
2006	1,089	2,769	△ 1,680
2007	1,226	3,056	△ 1,830
2008	1,455	3,097	△ 1,642
2009	1,511	2,895	△ 1,384

《 참고 1-16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 및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필요
-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내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
- 동 사업을 통한 무역기지를 활성화시켜 수산물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개요

- 단지내에서 원료공급/제품생산/포장/선적 등 일관처리체계 구축
- 사업기간/사업비 : 2009~2012
- 총사업비 : 1,390억원(국고 70% 973억원)
- 사업규모 : 부지 64,110m², 건축물 82,996m²
- 유치시설 : APT형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수출입전용부두 등

□ 주요 추진일정

- 기본 계획 실시 : 2009년
- 입찰참가업체 기본설계 및 공사착공 : 2009~2010년
- 공사추진 및 입주업체 선정 : 2011년
- 공사준공 및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운영 : 2012년

□ 기대효과

- 연간 생산유발효과 3,091억, 2,728명의 고용유발효과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활성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참고 1-17 》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관세감면 추천 업체)

합작 진출국	업 체 명		진출 일시	투자사항(천\$)		조업선박(톤수)
	한국업체	합작법인		자본금	우리측(%)	
러시아 (13개사)	극동수산	Alitet	'01. 7.21	1	0.5(50)	Oriental Discover(4,407)
	대립수산	Ecarma-Sakhalin	'01. 8.20	30	15(50)	Ekarma-7(3,735) Citrus(3,206)
	성경수산	Mikcor	'02. 8.10	35.6	17.8(50)	Carolina-33(979) Nevskaya Dubrovka(3,932)
	동 남	Polluks	'02. 9. 3	0.7	0.3(49)	Yugo-Vostock(3,099)
						No.1 Yugo-Vostock(3,097)
						No.3 Yugo-Vostock(474)
						No.5 Yugo-Vostock(443) 1 Primavera(2,015)
	한성기업	Ussuri	'02.12. 6	1	0.5(50)	Proliv Starka(3,918) Usuri(3,728)
	신라교역	Ayan	'02.12. 9	1	0.5(50)	Proliv Longa(1,337) Mys Navarin(2,208)
	상일교역	Dalwest	'02.12.23	40	20(50)	Germes(4,629)
	오양수산	Tralkom	'03. 1.27	0.334	0.167(50)	Zaliv Zabayaka(4,986)
	인성실업	Atika	'03. 2.19	2	1(50)	Master(3,514)
	사조산업	Yantar	'03. 4. 2	0.640	0.320(50)	Yantar-1(2,146)
조나단피셔리	Intraros	'04. 8.27	2	1(50)	Berezina(4,407)	
명성피셔리	Vosmonia	'03. 7.11	8	3.92(51)	Selikhino(738)	
청빙수산	Nordic-Ice	'07. 8. 6	3.88	1.94(50)	Mikhail Staritsyn(4,407)	
알제틴	보양사	Esperanza del Mar S. A.	'91.2.5	347	347(100)	Esperanza Dos(569) Esperanza Uno(758)
	동남	Sur Este Argen S.A.	'96.10.9	60	60(100)	501 Sur Este(512) 502 Sur Este(495)
	사조산업	Mar Argentino S.A.	'91.12.13	100	99.9(99)	Dasa 508(395) Dasa 757(383)
						Estrella 5(499)
						Estrella 6(499) Estrella 8(408)
우루과이	정안수산	Estellmar S.A	'98.11.17	234.4	164.1(70)	제56오룡호(444)
멕시코	에이스수산	KIMA CORPORATION SA DE CV	'09.11.26	279	186.7(67)	ANTONIA ALEXA
						Mar De Ross(24.97) TEARAROA RAKEI(24.75톤) RIO MAULE II(32.52톤)
칠레	원경수산	PESQUERA BALZAK S.A.	'94.3.30	180	162(90)	
필리핀	필코수산	필토영주수산	'97.6.14	48	48(100)	남해 227(160)

《 참고 1-18 》

2009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1. 기본방향

가. 우선 지원대상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
- 신규로 출어하는 업체

나. 자금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 신어장 개발 및 수출증대 등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다. 대출대상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선박을 투입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자 또는 해외양식어업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2. 자금의 규모 및 지원조건

가. 자금의 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 176억원('09.1월 176억원→'09.12월 102억원)
- 수협 신용자금 : 1,304억원('09.1월 1,304억원→'09.12월 1,378억원)
 - ※ '09년중 매분기말 균등하게 상환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74억원은 수협자금으로 대체

나. 자금운용계획

- 원양출어자금 : 1,430억원
-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운영자금 : 50억원
단,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운영자금 신청이 없을 때에는 원양출어자금으로 전용지원 가능

다.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단,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
 - 금리변동으로 대출기간 연장취급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채용자 추천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환으로 상환 및 대출처리 가능
-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 : 3.0%

3. 지원기준

가. 지원율

업체 소요액별	지 원 율	업체 소요액별	지 원 율
50억 미만	40%	150-300억 미만	50%
50-100억 미만	45%	300-500억 미만	55%
100-150억 미만	50%	500억 이상	60%

나. 지원한도액

- 용자신청한 선박의 지원한도액은 선박별 소요액에 업체별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
-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운영자금 중
 - 어선어업은 원양출어자금 한도액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에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
 - 해외양식어업은 영어자금 소요액조사 항목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에 업체별 지원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

- ※ 융자신청시 소요액을 영어자금소요액조사 항목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추천기관은 동 내용을 검토한 후 융자기관에 융자추천한다. 다만, 소요액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율

- 수출액이 연간 매출액대비 20%이상인 업체 또는 신어장개발사업용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율에 25%까지 추가지원 가능
 - 단, 원양영어자금 지원율과 합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 자금추천 및 배정 등

- 체계적인 자금추천 및 배정으로 유희자금 최소화
- 자금추천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양 어업인에게 지원
- 수협중앙회장은 원양 어업인과 원양 어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동 어업인에게 지원될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에 전대하여야 함
 - 이 경우, 수협중앙회의 수수료는 0.2%이며,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0.8%임

5. 기타사항

- 자금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 정하는 별도 요령에 따른다.

《 참고 1-19 》

한국원양산업협회회원사 현황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주)경태	崔宇淳	本 (051)292-2081	本 (051)292-2080	부산 사하구 신평동 554 동일냉장내 3층	604-839
Kyungtae Co.,Ltd.		支	支		
(株)골든레이크	李炳乾 李基伯	本 (051)246-9020	本 (051)246-902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4호	600-712
Goldenlake Co.,Ltd.		支	支		
(株)觀成	李承俊	本 (051)242-5428	本 (051)242-6994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번지 동양빌딩 300호	600-022
Kwansung Co.,Ltd.		支	支		
極東水産(株)	劉基彦	本 (02)3402-0919/20	本 (02)3402-0966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네상스빌딩 3층	138-857
Keukdong Fisheries Co.,Ltd.		支 (051)415-5123	支 (051)415-0123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1번지 한성빌딩 2층	606-011
金榮水産	金榮日	本 (051)442-2680	本 (051)465-9513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21 성경빌딩 3층	601-839
Kumyoung Fisheries Co.		支	支		
金雄水産(株)	金學律	本 (051)248-0321	本 (051)248-030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5호	600-712
Kumwoong Fisheries Co.,Ltd.		支	支		
金平水産(株)	金學律	本 (051)244-8583	本 (051)248-030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11호	600-712
Kumpyeong Fisheries Co.,Ltd.		支	支		
那羅漁業(株)	崔鈞世	本 (051)441-6255/6	本 (051)441-6257	부산 동구 초량동 1203-10 오피스텔 프레지던트 1009호	601-729
Nara Fisheries Co.,Ltd.		支	支		
(株)南北水産	崔溶泰	本 (051)242-1521	本 (051)243-4211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5-5 삼 성빌딩 602호	600-023
Nambuk Fisheries Co.,Ltd.		支	支		
南海貿易商社	崔世柱	本 (051)243-9797	本 (051)255-4453	부산 서구 충무동1가 23 태평빌딩 A동 331호	602-011
Namhae Trading Corporation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大隆水産(株) Daeryung Fisheries Co.,Ltd	盧仁煥	本 (02)401-7155/6	本 (02)401-7157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7 거북아빌딩 612호	138-710
		支 (051)244-7262/3	支 (051)255-913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6호	600-045
大林水産(株) Daerim Corporation	李苙雨	本 (02)3470-6000	本 (02)523-8900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82-2 대림빌딩	137-821
		支 (051)250-2000	支 (051)242-0110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2-13	602-801
大熊水産(株) Daewoong Fisheries Co.,Ltd.	鄭奉俊	本 (051)255-0158	本 (051)255-0775	부산 중구 남포동5가 신동아상가 405-2호	600-712
		支	支		
大海水産(株) Daehae Fisheries Co.,Ltd.	王敦明	本 (051)253-0778/9	本 (051)241-7242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4-3	602-011
		支	支		
大現農水産(株) Daehyun Agriculture & Fisheries Co.,Ltd.	王基周	本 (02)564-2300/4	本 (02)564-23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8 부옥빌딩 4층	135-081
		支 (051)255-7705	支 (051)255-7772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605호	600-046
大沘水産(株) Daehyun Fisheries Co.,Ltd.	金少衡	本 (02)518-3164/5	本 (02)518-3166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511호	135-871
		支 (051)257-2457	支 (051)257-2459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번지 신동아빌딩 607호	600-712
德宇水産(株) Dukwoo Fisheries Co.,Ltd.	張經男	本 (02)522-1021	本 (02)522-10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907호	137-070
		支 (051)253-0527/8	支 (051)253-0529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05호	600-712
(株)東南 Dongnam Co.,Ltd.	尹明吉	本 (051)250-7030/2	本 (051)250-7026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602-030
		支	支		
(株)東邦水産 Dongbang Fisheries Co.,Ltd	尹學守	本 (051)246-9350/1	本 (051)243-4532	부산 중구 동광동1가 2번지 조흥은행 6층	600-021
		支	支		
冬柏水産(株) Dongbaeg Fisheries Co., Ltd.	全錫鎭	本 (051)242-1171/2	本 (051)247-5863	부산 서구 남부민동 643 충무쇼핑 201호	602-801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東部水産(株)	崔溶泰	本	(051)243-3811	本	(051)243-4211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5-5 삼성빌딩 603호	600-023
Dongbu Fisheries Co.,Ltd.		支		支			
東洋水産(株)	車相九	本	(051)412-5401	本	(051)412-2623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15	606-021
Dongyang Fisheries Co.,Ltd.		支			支		
東遠産業(株)	朴富仁	本	(02)589-3076	本	(02)589-3289 /4397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17층	137-717
Dongwon Industries Co.,Ltd.		支	(051)600-3314		支	(051)600-3377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3층
東源水産(株)	宋璋埴	本	(02)528-8000	本	(02)564-130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7층	135-080
Dongwon Fisheries Co.,Ltd.		支	(051)201-0055		支	(051)206-2715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34
東熙産業	鄭英浩	本	(051)465-2140	本	(051)465-2142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3-1 노블 리안II 오피스텔 1414호	600-814
Donghee Industrial Co.		支			支		
(株) 라사교역	金点培	本	(051)245-1894	本	(051)245-1897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7-1호	600-712
Rasa Trading Co.,Ltd.		支			支		
(株)寶洋社	金一湖	本	(051)469-9432	本	(051)462-7524	부산 동구 초량1동 1211-7 DK빌딩 5층 가나마린 내	601-839
Boyang Ltd.		支			支		
賦洋漁業(株)	鄭斗烈	本	(051)242-1032	本	(051)243-7565	부산 서구 충무동1가 23 태평수산빌딩 A동 338호	602-011
Booyang Fisheries Co.,Ltd.		支			支		
思潮産業(株)	朴吉洙	本	(02)3277-1600	本	(02)313-807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120-707
Sajo Industries Co.,Ltd.		支	(051)246-5371		支	(051)244-5773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2-13
思潮씨에스(株)	金正洙	本	(02)312-3797	本	(02)312-379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5층	120-707
Sajo CS Co.,Ltd.		支	(051)253-3600		支	(051)253-9029	부산 서구 암남동 721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三榮水産	洪日涉	本	(051)202-7637	本	(051)202-7638	부산 사하구 하단동 589-8 삼영빌딩 9층	604-850
Samyoung Fisheries Co.,Ltd.		支		支			
相一交易(株)	丁筆文	本	(051)462-8049	本	(051)462-8001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0-21 삼중빌딩 602호	600-817
Sangil Trading Co.,Ltd.		支		支			
相志水産(株)	張志銑	本	(051)255-7307	本	(051)255-7288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상가 414-2호	600-712
Sangji Fisheries Co.,Ltd.		支		支			
(株)西慶	朴 德	本	(051)255-8561/2	本	(051)256-8562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8호	600-045
Seokyoung Corporation		支		支			
瑞林水産(株)	河乙壽	本	(051)248-9515	本	(051)248-8487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5번지 흥아빌딩 502호	600-041
Seolim Fisheries Co.,Ltd.		支		支			
宣民水産(株)	閔一基	本	(051)245-3526/8	本	(051)245-3546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805호	600-046
Sunmin Fisheries Co., Ltd.		支		支			
星庚水産(株)	朴熙燮	本	(02)2183-0033	本	(02)2183-00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1601호	135-918
Seongkyung Fisheries Co.,Ltd.		支	(051)465-9510	支	(051)465-9513	부산 동구 초량1동 1212-21 성경빌딩 3층	601-839
世進水産(株)	李長春	本	(051)255-7364	本	(051)241-7600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04호	600-045
Sejin Fishery Co.,Ltd.		支		支			
昭眞海運(株)	李容田	本	(051)468-8620	本	(051)468-8622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1 소진빌딩 6층	600-814
Sojin Shipping Co., Ltd.		支		支			
新羅交易(株)	裴三喆	本	(02)3434-9900	本	(02)417-9360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7 신라빌딩	138-190
Silla Co.,Ltd.		外 1人 支	(051)663-3200	支	(051)663-3100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64-1	600-015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아그네스수産(株)	許玉姬	本 (02)732-6241/5	本 (02)732-3998	서울 중로구 도림동 60 도림빌딩 706호	110-051
AGNES Fisheries co.,Ltd.	朴喜雄	支 (051)244-3351/2	支 (051)246-3710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604호	600-712
엘림수産(株)	權淳敦	本 (051)248-1428	本 (051)241-1428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52 성진(주) 805-1호	602-804
Elim Fisheries Co.,Ltd.		支	支		
五洋水産(株)	李明星	本 (02)721-6500/9	本 (02)732-530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76-3	100-101
Oyang Corporation		支 (051)241-2701/2	支 (051)243-3745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	602-020
仁成食品(株)	朴哲民	本 (02)790-8877	本 (02)792-3098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140-210
Insung Foods Co.,Ltd.		支	支		
仁成實業(株)	朴仁成	本 (02)749-0291/2	本 (02)749-4949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140-210
Insung Corporation	姜鍾遠	支 (051)253-0666	支 (051)253-0305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7층	602-030
(株)인터불고	安永權	本 (02)413-3481	本 (02)413-3581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5 인터불고빌딩 8층	138-180
Inter-Burgo Co.,Ltd.		支 (051)253-6038/9	支 (051)253-6040	부산 서구 암남동 716 (주)냉장인터불고 제2공장 2층	602-030
(株)齊洋인터네쇼날	權五潤	本 (02)538-2255	本 (02)565-887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012호	135-711
Jeyang International Co.,Ltd.		支 (051)254-1417	支 (051)247-1802	부산 서구 총무동1가 34-4 성해빌딩 406호	602-011
(株)檜進交易	南文星	本 (051)255-9356/8	本 (051)254-576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602-020
Changjin Trading Co.,Ltd.		支	支		
(株)靑根水産	盧賢瓊	本 (051)265-2642/3	本 (051)265-2664	부산 사하구 장림동 510 (주)성보냉장 2층	604-846
Chungeun Fisheries Co.,Ltd.		支	支		
코삭交易(株)	申載完	本 (051)241-6050	本 (051)241-7557	부산 중구 동광동 2-4 동양빌딩 506호	600-022
Kosac Trading Co.,Ltd.		支	支		

會 員 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本	支	本	支		
泰興피쉬어리(株) Taeheung Fishery co., Ltd.	朴盛用	本	(051)245-1710	本	(051)248-8487	부산 중구 남포동 1가 35 홍아빌딩 502호	600-041
		支		支			
(株)統營産業 Tongyoung Industries Co.,Ltd.	張昌翼	本	(051)291-5101	本	(051)291-9343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63-20	604-071
		支		支			
豊林水産(株) Poonglim Fishery Co.,Ltd.	林利根	本	(051)245-5621/2	本	(051)242-5102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2 신동아빌딩 410호	600-712
		支		支			
하나수산 Hana Fisheries Co.	崔溶泰	本	(051)246-6981	本	(051)243-4211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4 LG 마린타워 420호	602-023
		支		支			
韓星企業(株) Hansung Enterprise Co.,Ltd.	林佑根	本	(051)410-7100	本	(051)410-7101/2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71 한성빌딩	606-011
	朴 明	支	(02)3400-5000	支	(02)3400-5111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 네상스빌딩 2층	138-857
(株)海 拿 Haena International Co.,Ltd.	金榮根	本	(051)244-6656	本	(051)244-6632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1206호	600-046
		支		支			
海成水産 Haesung Fisheries Co.	崔世柱	本	(051)243-9918	本	(051)243-9919	부산 서구 암남동 255-1 송도탐스빌아파트 2303호	602-030
		支		支			

□ 特別會員社

特別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敬洋水産(株)	朴吉柱	本	(051)256-0712/3	本	(051)256-0714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빌딩 5층 507호	602-030
Kyungyang Fisheries Co., Ltd.	高完洙	支		支			
그랜드水産(株)	金榮範	本	(051)465-1923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Grand Fishery Co., Ltd.		支		支			
글로벌交易(株)	李仙鎬	本	(051)464-7081	本	(051)462-5126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교직원공제회관 707호	601-010
Global Trading Co., Ltd.		支		支			
金明水産(株)	金明煥	本	(051)257-3035	本	(051)257-3038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층 610호	600-712
Kumyeong Fisheries Co., Ltd.		支		支			
金龍水産(株)	金龍吉	本	(051)243-3840	本	(051)243-3841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29 회 창물산별관 501호	602-020
Kumyo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成水産(株)	金榮範	本	(051)442-1731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Daesu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洋水産(株)	金榮範	本	(051)465-1924	本	(051)465-1925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Daeyang Fisheries Co., Ltd.		支		支			
大昌漁業(株)	蔡寬一	本	(051)464-9596	本	(051)464-9443	부산 중구 중앙동4가 36-17 동 아제일빌딩 303호	600-815
Daechang Fisheries Co., Ltd.		支		支			
德進通商(株)	李坤洙	本	(051)246-1041/2	本	(051)246-1052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 삼호빌딩 1006호	600-022
DeokJin Trading Co., Ltd.		支		支			
DNS水産	李龍大	本	(051)468-1211	本	(051)465-6646	부산 동구 초량3동1147- 14 국제오피스텔1503호	601-715
DNS Fisheries Company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미래수산	金明志	本	(051)242-2513/4	本	(051)242-2505	부산 서구 남부민동 108-3	602-020
Mirae Marine Co., Ltd.		支		支			
(株)바다사랑	金光植	本	(051)255-8035/7	本	(051)255-8038	부산 서구 남부민3동 654 LG 마린타워 301호	602-803
BADASARANG Co., Ltd.		支		支			
(株)바라도	丁仁榮	本	(033)661-5688	本	(033)661-225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166-1우신아파트 105동 402호	210-761
BARADO Co., Ltd.		支		支			
奉江産業(株)	李守源	本	(051)247-9172	本	(051)246-4198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9	602-800
Bongkang Industrial Co., Ltd.		支		支			
(株)三信水産	李炳海	本	(051)245-8210	本	(051)242-5734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 전주식당 2층	602-801
Samshin Fisheries Co., Ltd.		支		支			
瑞德漁業(株)	사이푸수웨이	本	(051)256-6851/2	本	(051)256-685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820-1 영동비치타워 709호	604-825
Seoduck Fishery Co., Ltd.	(夏福水)	支		支			
(株)瑞東인터네셔널	李 貴	本	(02)780-6510	本	(02)780-65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603호	150-871
Seodong International Co., Ltd.		支	(051)254-6012	支	(051)254-7877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5호	600-712
西海水産(株)	南相泰	本	(051)247-0522	本	(051)257-279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오양 수산빌딩 202-1호	602-020
Seohae Fisheries Co., Ltd.		支		支			
鮮宇實業(株)	鄭時澤	本	(031)946-3967	本	(031)946-396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올리 624-5	413-832
Sunwoo Corporation		支		支			
新地水産(株)	崔津碩	本	(051)816-6400	本	(051)816-6401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889-9 유성넥스빌 1208호	614-868
Shinji Fisheries Co., Ltd.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株)씨월드크프레이션	朴赫眞	本	(051)257-0447	本	(051)257-0448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37 우신냉장 203호	602-803
Sea World Corporation		支		支			
(株)에스.엔.에이치	徐義顯	本	(051)202-9501	本	(051)202-7638	부산 사하구 하단1동 589-8 삼영빌딩 9층	604-850
S&H Co., Ltd.		支		支			
(株)예람교역	金致永	本	(051)242-0391	本	(051)242-0392	부산 서구 암남동 721 사조물류센타 1508호	602-030
Yeram Co., Ltd.		支		支			
웨스트웨이漁業(株)	金義培	本	(051)710-9877	本	(051)441-3791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600-717
West Bay Fishery Co., Ltd.		支		支			
裕新水産(株)	宋鎮鎬	本	(051)241-5655	本	(051)241-5677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617호	602-833
Yushin Fishery Co., Ltd.		支		支			
(株)유앤씨	金光植 金政窪	本	(051)710-8035	本	(051)710-8038	부산 사하구 감천동 763-20 703호	604-071
U & Sea Co., Ltd.		支		支			
(株)인터투나	崔恩周	本	(051)243-0221	本	(051)243-0231	부산 중구 남포동6가 25-1 302호	600-700
INTER TUNA		支		支			
正安水産(株)	裴鐘浩	本	(051)253-3424/5	本	(051)253-3426	부산 서구 암남동 714 보성냉장 202호	602-030
Jeongahn Fishery Co., Ltd.		支		支			
조나단피서리(株)	金洛坤	本	(051)442-5665	本	(051)442-5885	부산 동구 초량동 1204-12 한창빌딩 602호	601-010
Jonathan Fisheries Co., Ltd.		支		支			
炷岩産業(株)	李守甲	本	(051)413-0600	本	(051)414-7181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64 대창빌딩 6층	606-011
Juahn Industries Co., Ltd.		支		支			

特別 會員社	代表者	TEL NO. (本社/支社)		FAX NO. (本社/支社)		住 所 (本社/支社)	郵便番號
鎮輔水産(株)	金容九	本	(051)242-2530	本	(051)247-9278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빌딩 907호	602-833
Jinbo Fisheries Co., Ltd.		支		支			
카리스水産(株)	康泰烈	本	(051)710-8026/7	本	(051)710-8028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0-1 K.M빌딩 504호	602-801
Caris Fisheries Co., Ltd.		支		支			
KSP교역	金仁守	本	(02)2077-1548	本	(02)2077-1547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용성비즈텔 1601호	140-871
KSP Fishtrading Co., Ltd.		支		支			
탑水産(株)	安田光雄	本	(051)208-6961	本	(051)208-6960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7-12	604-070
Top Fisheries Co., Ltd.		支		支			
(株)泰榮交易	李京一	本	(051)231-2260/1	本	(051)231-2259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602-020
Taeyoung Trading Co., Ltd.		支		支			
(株)투리스	李基伯	本	(051)254-6905	本	(051)246-9024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4-1호	600-712
Toolees Co., Ltd.		支		支			
(株)팬타스	鄭有珉	本	(051)243-3800	本	(051)243-5900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701호	600-046
PANTAS CORPORATION		支		支			
(株)海王物産	辛錫奎	本	(051)248-0409	本	(051)245-4342	부산 서구 총무동1가 39-45 창성빌딩 806호	602-011
Haiwang Products Co., Ltd.		支		支			
弘島水産	姜景哲	本	(051)412-1098	本	(051)414-7172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77	606-021
Hongdo Fisheries Co.		支		支			

국제기구과

1. 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75
2.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78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80

《참고》

《2- 1》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논의경과 및 주요내용	82
《2- 2》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83
《2- 3》 OECD 수산위원회 개요	84
《2- 4》 FAO 수산위원회 개요	85
《2- 5》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86
《2-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7
《2- 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89
《2- 8》 '10년도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90
《2- 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92
《2-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106
《2-11》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	108

가. 현 황

- 공해조업 규제 및 조업국의 합리적 자원 이용의 의무 강화 추세
 - 공해상 경계왕래성(대구, 명태 등) 및 고도회유성 어족(참치 등)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공해어업협정 채택('95.8) 및 발효('01.12)
 - UN, FAO 등에서의 각종 국제수산 규범 강화
 - 저층어업 규제 및 승선검색,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국제수산규범 강화 중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대서양 참다랑어 및 상어종에 대한 무역 규제 강화 시도
 -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연승어업시 발생하는 상어, 바다거북, 바닷새의 혼획(bycatch)에 대한 규제 강화
- 국제수산기구 및 양자협력을 통한 국내정책 발전 및 국제협력 강화
 - FAO 수산위원회, OECD 수산위원회, APFIC(아시아태평양 수산위), APEC 수산실무그룹, ASEM회의를 통해 수산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국내 정책 발전에 활용
 - 기후변화, 양식, 자원회복, 인증제, 유류보조금, 생태계기반 접근 등 수산전반에 걸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의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 해양생태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나. 추진실적

- 국제수산물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 참여 및 강화추세에 대한 대응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 협상에 적극 참여
 - 불법어선에 대한 입항 거부, 검색 및 항구 사용 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협정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 UN총회 수산물결의안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와 관련하여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 반영
-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
 - 국제수산물기구 회의 유치
 - OECD 기후변화와 수산 워크숍, FAO 공해상 저층어업 워크숍, APFIC(아시아태평양 수산위) 지역자문포럼 및 총회, ASEM 수산회의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수산물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이익 보호 및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국제수산물기구 및 양자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산정책·기술 발전 도모

라. '10년 추진계획

- 국제수산물규범 논의 적극 참여 및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조치 강구
 - FAO에서 논의 중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협정 비준 검토
 -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에 적극 참여 및 국내 이행 강화
 - FAO 공해상 저층어업 워크숍 개최('10.5.)를 통해 전 세계적 저층어업 관리 논의에 기여, 옵서버 승선 및 업계설명회를 통해 국내이행 강화

- 책임있는 수산 위한 상어(IPOA-Shark), 바다새(IPOA-Seabirds) 및 어획능력관리(IPOA-Capacity) 국가행동계획(NPOA) 수립
 - CITES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 대서양 참다랑어 등 등재 부결 노력
 - OECD 수산위원회에서의 유류보조금 논의 대응
- 국제수산기구 및 양자협력을 통한 국내정책 발전 및 국제위상 강화
- FAO, OECD, APFIC 등 국제수산관련 제반 노력에 적극 협력
 - OECD 수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와 수산'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 국내 개최('10.6) 및 국내 정책에 반영
 - OECD 수산위원회의 현 부의장 직위(부경대 이상고 교수) 수행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
 - APFIC(아시아태평양 수산위) 지역자문포럼 및 총회 개최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언권 강화 및 국내 정책 발전에 기여
 - 제21차 APEC 수산실무그룹회의(6.21~26) 및 해양장관회의(10.8~12) 제105·106차 OECD 수산위원회(4.19~21, 10.25~28), FAO 교역소위(4.26~30) 참석
 - 한미 수산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한 양국간 기술·정책 협력 강화
 - 사업 10주년 기념, 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10.2)
 - 정책분야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정부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 추진
 - 사업 평가 도입 및 투명성 강화, 환류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주력

국제 II -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가. 현 황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공해를 포함한 원양어업관리의 주체로 기능
 - 유엔공해어업협정의 비준('08. 2월)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가입을 하여야만 동 기구 관리수역에서 조업가능
 - 우리나라는 10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3개 기구가입 추진중, 1개 신설기구 협상 참여중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관리수역에서 어획량('08): 323천톤(원양생산량 665천톤의 49%)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원양어업규제 강화추세
 - 자원고갈에 따른 어획능력관리 강화
 -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등 각종 어업관리제도 강화
 - 해산, 산호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저층어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저층어업관리를 위한 협약 협상중 : 북태평양, 남태평양

나. 추진실적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협상을 통해 어획쿼타 확보('10)

	총 계	WCPFC	IATTC	ICCAT	CCSBT	NAFO
쿼터량(톤)	34,778	17,159	11,947	3,472*	859	1,341

* ICCAT('09.11)회의에서 '10년도에 한해 눈다랑어 800톤 추가 할당받음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참석 활동('09) : 48회

○ 우리나라 개최 : 5회

-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정부간회의(2월, 부산)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부수어획 작업반회의(8월, 부산)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제14차 과학위원회(9월, 부산)
- 아·태수산위원회 집행이사회(9월, 서울)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제15차 연례회의(10월, 제주)

○ 국제회의 참석 : 43회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적극 대응으로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관련 국제회의 대응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민간 전문가의 적극 활용 등

○ 우리 관심의제 뿐만 아니라 공통의제에 대하여도 기여함으로써 국위선양

□ 국제회의 국내유치를 통한 수산외교 강화 및 지역경제 기여

○ 매년 1개 이상의 국제수산회의 유치

라. '10 추진계획

□ 북태평양어업신설기구(1월, 제주), 인도양참치위원회(3월, 부산) 등 7개 국제회의 개최 등 협상대응력 향상

- 쿼터 설정, 조업규제 최소화 등 우리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
- 신설중인 기구의 사무국 유치 및 양자간 어업협력 방안 모색

□ 여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정부입장 반영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49회

가. 현 황

- 주요연안국들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자국의 자원 관리를 강화 추세
 - 연안개발도상국은 자국수역에 입어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요구
-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나. 추진실적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추진
 - 감척어선 무상지원('02년) : 5개국 27척(약 81억원 지원 효과)
 - 나우루 스쿨버스 지원('05년) : 버스 및 학용품, 버스 정비 등
 - 주요 연안국 물자공여 사업('06년 이후)
 - 예산 규모 : ('06) 246 → ('07) 350 → ('08) 400 → ('09) 400백만원
 - 지원 대상 : 우리어선 입어국 중 협력이 필요한 국가
 - 지원 물품 :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비상발전기, 무선통신기 등
- 연안국 수산관련 주요인사 초청사업
 - 기니 수산장관 초청 등('05)
 - 우루과이 항만청장, 솔로몬 수산장관 초청 등('06)
 - 알제리 수산어로자원부장관 초청 및 수산협력MOU 체결('07)
 - 우루과이 농축수산부장관 초청 및 수산협력 MOU 체결('08)
-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
 - 어업협정체결(13개국) : 러시아, 일본, 중국, 솔로몬 등
 - 수산협력약정 체결(5개국) : 노르웨이, 베트남,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루과이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어선의 안정적 입어 유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예산 반영계획
 - ('07) 350백만원 → ('08) 400 → ('13) 3,000
 - 고위인사 및 전문가 초청·교류를 확대 및 이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국제무대에서의 우호세력 육성
 - 중동 및 중남미 국가와의 수산협력을 위한 협정(약정) 체결 추진

라. '10 추진계획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 지원규모 : 500백만원
 - 지원대상 국가 : 태평양 도서국 및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3개국 및 PNA 사무국)
 - 지원물품 : 세부 품목 및 수량은 수원국과 협의하여 결정
 - * 세부 품목(안): 차량, 사무용품, 선원학교 기자재, 해양경찰 제복 등
- 주요 수산자원 부국 등과의 수산자원외교 강화
 - 참치자원 확보를 위해 PNA 8개국과의 협의체 구성
 - 제1차 수산고위급 회의 개최 → 공동협력 이슈(선원학교, 가공공장 등) 개발
 - 가나 등 아프리카 연안국 및 브라질과 수산협력 MOU 체결
 - 불령 폴리네시아 입어재개를 위한 한-불 입어회담 대응방안 마련
- 양·다자간 수산협력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수산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사업의 발굴·추진
 - 연안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물자지원 사업 외에 선원교육, 양식기술 전수 등 고용창출 및 수산식량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 * 선원교육 지원 타당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0.4~12월 예정)

《 참고 2-1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논의경과 및 주요내용

가. 구속력 있는 협정의 등장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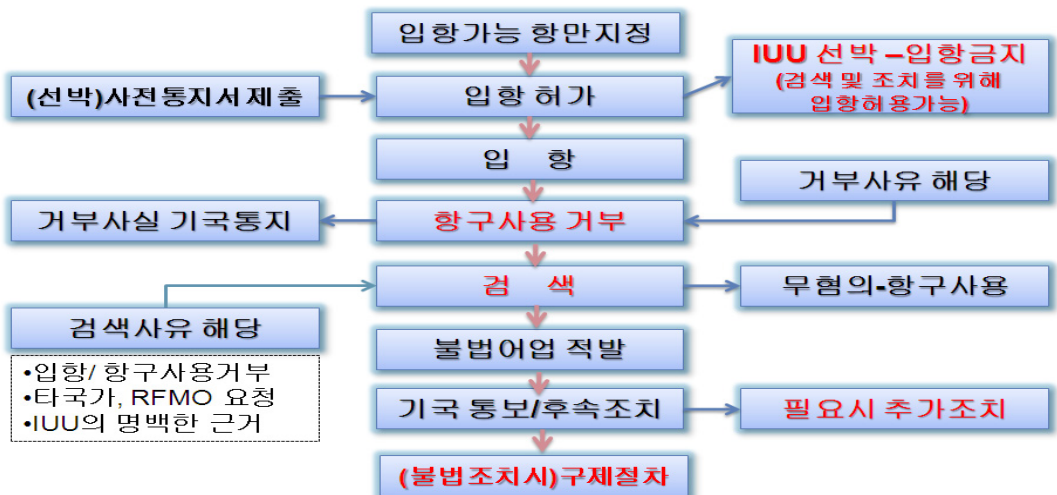
- 그 간 불법어업(IUU)을 근절하기 위한 FAO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음에 따른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이행이 저조
- 제27차 FAO 수산위('07)에서 노르웨이가 항구국 조치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 채택

나. 논의경과

- 전문가 회의('07.9), 제1차('08.6), 제2차('09.1) 및 제3차('09.5)를 개최하여 협정(안) 합의 시도
- FAO 현장상 협정으로 합의되어 '09.11 FAO 총회에서 인준, 향후 1년간 서명을 위해 개방

다. 주요내용 : 불법어선에 대한 입항 금지, 검색, 항구사용 거부

<항구국 조치 흐름도>



《 참고 2-2 》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가. 개요

- 상기 2개의 국제행동계획(IPOA)은 '99년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자발적 규범임
- 각국은 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바닷새 및 상어보호 관련 국내행동계획(NPOA; 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하여 국내법에 수용하여야 함
 -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EABIRD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 * 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HARK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나. 주요 내용

- IPOA-SHARKS : 상어의 보존과 관리, 장기간 지속적 이용 보장 모든 국가의 상어 관리 참여, 예방적 접근 등
- IPOA-SEABIRDS : 연승어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 노력, 포획완화조치, 국제협력, 국내이행 조치 마련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2010 상반기 : 국내행동 계획 초안 마련 및 관련부서, 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
- 2010 하반기 : FAO 제출 및 홍보

《 참고 2-3 》

OECD 수산위원회 개요

가. 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

- OECD Committee for Fisheries (COFI)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세계 주요선진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

나. 설립연혁

- 1961. 09. 30. OECD 설립과 동시 분과 위원회로 설립

※ 우리나라는 1994. 10. 27 수산위원회 옵서버로 최초 참가한 이래 '96년 OECD 가입 후 동시에 가입

다. 회원국

- 28개국 : 30개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2개국 제외

라. 주요기능

-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 각 회원국의 수산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외국과의 협정체결현황 등 제출

- 국제 수산물교역자유화에 대한 분석틀 제공 등 연구지원

- 수산자원관리체제에 대한 분석

- 수산분야 통계·지표 작성

※ 동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FAO 등 국제수산계에 이를 적극 권고함으로써 세계수산의 새로운 질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

라. 우리나라 활동사항

- 우리 나라의 수산정책동향을 매 2년마다 OECD에 보고

- 각종 수산회의 참석, 국제수산 규범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참고 2-4 》

FAO 수산위원회 개요

가. 기구개요

- 정식명칭 : FAO COFI(Committee on Fisheries)
- 설립일 : '65.12(제13차 FAO 총회에서 설립 결정)
- 본부/회원국 : 이탈리아 로마/약190개국
- 목적 :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식량 안보에 기여
- 회의성격 : 최근 2년간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수산관련 고위 정책담당자간 회의(2년마다 개최)

나. 주요기능

- FAO의 수산 및 양식분야 사업 평가
- 전 세계 수산업의 현황 파악 및 대응책 강구
- FAO 사무총장 및 UN 총회의 위임사항 수행
- 산하에 수산물 무역 및 양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논의

다. 최근 논의동향

- 불법어업,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전세계 수산 현안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협정 또는 자발적 지침을 만드는 등 국제수산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

《 참고 2-5 》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가. 개 요

-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을 목표로 1991년 SOM에 의해 창설
 - ※ SOM(Senior's Officers' Meeting) :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협의기관으로 APEC 산하 4개의 위원회와 실무그룹 등의 논의사항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들에게 보고·건의하고, 정상·각료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함

나. 설립목적

-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과 서식지 보전
- 수산자원관리 문제 해결
- 수산물 품질 및 안전 강화
- 수산분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다. 활동내역

- '02년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서울해양선언' 후속 이행 조치
 - 해양수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해양자원관리 문제에 관한 논의 및 관리법 개선
 - 수산식품 품질과 안전을 포함한 어획 후 과정 개선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
- '05년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 발리행동계획' 후속 이행 조치
 - 해양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해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 참고 2-6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1. 협약개요

가. 목 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나. 채택 및 발효경위

- 1972.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결정
- 1973. 3월 워싱턴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 개최, 협약채택
- 1975. 7월 발 효 (81개국)

다. 가입현황

- '08. 4월 현재 172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93. 7. 9 협약에 가입하여 '93. 10. 7일 협약 발효

라. CITES 구성

- 당사국총회 : 2년마다 개최, 전체 회원국이 모여 투표에 의해 협약 및 부속서를 개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과 결의문을 채택함
- 상임위원회 : 6대주(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대표로 구성, 협약의 이행, 사무국 예산관리 및 총회위임 사항
- 동·식물위원회 :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6대주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에서 Observer로 참여
-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기술적 지원, 교육훈련세미나 구성, 협약의 이행 상황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연구, 연례 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 및 각 위원회의 개최준비, 협약의 이행에 관한 권한 등의 업무를 수행
- TRAFFIC, UNEP-WCMC, IUCN
 - CITES 각 위원회에 Observer로 참여중인 대표적인 환경단체

2. 협약내용

가. 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구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부속서 분류 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 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 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 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 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 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 래는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
주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염인삼 등	바다코끼리(카나다), 북방살모사 (인도) 등

3. 부속서주요 수산생물 등재 현황

가. 주요수산생물 등재(우리나라에 분포하거나 양식하는 종만 한정함)

수산생물명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우리나라 관련 종
고래류	21종	전종	-	- 향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밍크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흑등고래(9종) 부속서 I
상어류	-	3종 (고래상어, 돌묵상어, 백상아리)	-	- 백상아리 식용으로 일부 수입 - 모로·칭·악·꼬리·노랑상어 등이 원양어선에서 부수어획되고 있음
철갑상어류	2종 (단비, 발틱)	30종	-	- 양식종(시베리아, 스텔렛), 부속서 II
어류	7종	33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실고기목 (해마류)	-	<i>Hippocampus</i>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이매패류	26종	5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산호류	-	푸른산호과, 관산호과, 각산호목, 돌산호목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히드라충류	-	의공산호과, 의산호과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 참고 2-7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현황

구분	기구명	회원국	주요현안
참치관리 기구 (5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일본 등 16개국	다랑어 어획능력 감축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EU 등 48개국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눈다랑어 등 쿼터재분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일본 등 5개국	전자 어획증명제도, 쿼터설정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IOTC)	EU 등 26개국	국별어획쿼타 설정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WCPFC)	중국 등 25개국	어획능력관리, 옵서버, IUU
비참치 관리기구 (5개)	북서대서양수산물위원회 (NAFO)	캐나다 등 14개국	미조업, 협약개정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호주 등 24개국	옵서버, IUU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 (NPAFC)	일본 등 5개국	미조업, 연어관련 과학협력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전관리협약(CCBSP)	일본 등 6개국	미조업, 시험조업문제
	국제포경위원회(IWC)	일본 등 88개국	미조업, 포경재개 논의
가입검토 필요기구 (3개)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EC, 나미비아 등 5개국	가입추진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미 발효	가입여부
	남태평양수산물관리기구 (SPRFMO)	호주 등 25개국	설립협약안 채택, 비준추진중
신설중인 지역기구 (1개)	북태평양어업기구(NPO)	미국 등 5개국	설립협약안 협상

《 참고 2-8 》

‘10년도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참석 계획

월	회 의 명	기간	장소	참석	주요 논의사항
1	제8차 북태평양수산물기구 설립 회의	1.17-22	제주	차관외3	협약안 및 잠정조치 논의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기간이행위원회	2.22-26	스페인 (마드리드)	6급 외1	참다랑어 이행조치 논의
3	제14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3.1-5	부산	차관외4	쿼터설정 및 보존조치 논의
	국제포경위원회(IWC) 소규모 작업반 및 회기간회의	3.2-5	미국 (플로리다)	국장외2	소규모 연안포경 허용 논의
	제9차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비공식 당사국 회의	3.16-17	미국(뉴욕)	5급 외1	유엔공해어업협정 이행진전사항과 보완사항 논의
	제15차 CITES 당사국 총회	3.13-25	카타르(도하)	6급 외2	북방참다랑어 등 부속서 재논의
	선망선 항구국검색제도 개발(WCPFC)	3.23-24	일본(동경)	5급 외1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선의 항구국 검색제도
	대아프리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3.21-4.1	가나 등 4개국	차관외2	아프리카 연안국과의 농림수산협력 협의
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차 어업관리전략회의	4.14-16	일본(동경)	과장외1	남방참다랑어 어업관리전략협의
	OECD 지속가능한 양식업 워크숍	4.15-16	프랑스 (파리)	5급외1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방향 논의
	제105차 OECD 수산위원회	4.19-21	프랑스 (파리)	과장외2	유류 보조금, 기후변화, 양식 연구 사업 등 논의
	제12차 FAO 교역 소위원회	4.26-30	아르헨티나	주재관	책임있는 수산물 교역 관련 논의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이행평가 조정위원회	4.20-21	러시아 (사할린)	5급	연어포획금지 보존조치 논의
	한-알제리 경험 T/F	4.27-28	서울	과장외2	한알제리 수산분야 협력 논의
5	FAO 저층 워크숍	5.10-12	부산	실장외3	저층어업관련 FAO지침 이행방안논의
	제2차 유엔공해어업협정 재검토 회의	5.24-28	미국(뉴욕)	5급 외1	공해어업협정이행상황 권고
	참치합동기구과학회의 및 MCS관련 워크숍	5.31-6.5	스페인 (바로셀로나)	과장외2	5대 참치기구 이행동향 등 논의
	한-오만 경제협력회의	5월 중	오만	5급 외1	한-오만 수산분야 협력 논의
6	OECD 기후변화 워크숍	6.10-11	부산	장관외3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 정책적 이슈 대응
	한-브라질 수산협력 회의	6.10-11	부산	장관외2	한-브라질 수산양식협력 MOU체결
	제5차 FAO 양식 소위원회	6.14-18	태국(방콕)	5급외1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방향 논의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6.15-25	모로코 (아가디르)	실장외5	불법포획보고 및 쿼터논의
	제21차 APEC 수산실무그룹 회의	6.21-26	페루(리마)	6급 외1	수산관련 전반적 논의

월	회 의 명	기간	장소	참석	주요 논의사항
	참치합동기구 부수어획관리 워크숍	6.23-26	호주	과장외2	부수어획관리방안 논의
	참치합동기구 어획능력 감축 워크숍	6.29-7.1	(브리즈번)	5급 외1	어획능력 감축 논의
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CCAMLR) WG-EMM(생태계관리워킹그룹)회의	7월중	호주	5급 외1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관리 방안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 제9차 공동실무회의	7.12-16	여수	과장외2	2011년 사업확정 및 과제 발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차 장래에 관한 작업반 회의	7.26-30	브라질 (브라질리아)	6급 외1	협약 개정 및 보존조치 논의
8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6차 과학위원회	8.9-20	통가	5급 외1	참치자원 평가 등 관리방안 협의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준비회의	8월중	뉴질랜드	국장외1	남태평양수산물기구 설립 협약 논의
	제9차 북태평양수산물기구 설립 회의	8월중	러시아	과장외1	협약안 및 잠정조치 논의
9	제31차 아·태수산물위원회(APFIC) 총회 및 지역자문포럼	9.1-8	제주	장관외3	수산물 관련 전반 논의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제6차 북방위원회	9.7-10	일본 (후쿠오카)	5급 외1	태평양참다랑어 자원관리 방안 논의
	제65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제1차 비공식 회의	9.14-17	미국(뉴욕)	5급 외1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 결의안 초안 논의
	제32차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연례회의	9.20-24	캐나다	5급 외1	우리나라 쿼터 전배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9.23-10.1	미국(라홀라)	국장외1	눈다랑어 등 국별할당량 논의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제6차 기술이행위원회	9.30-10.5	미크로네시아	과장 외2	보존관리조치 이행사항 논의
10	제3차 APEC 해양장관회의	10.8-12	페루(리마)	실장외2	수산물 관련 전반 논의
	CCSBT 5차 이행위 및 17차 연례회의	10.9-14	대만	과장외2	남방참다랑어 자원관리방안 협의
	CCSBT 17차 연례회의 최종의결	10.15	일본 (나리타)	과장외2	남방참다랑어 자원관리방안
	제7차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연례회의	10.11-15	나미비아	국장외1	동 기구 가입
	제106차 OECD 수산위원회, 수산자원회복전문가 회의	10.25-28	프랑스 (파리)	과장외2	기후변화, 양식 연구 사업 등 논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제29차 연례회의	10.25-11.5	호주 (호바트)	국장외2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관리 방안
11	제18차 NPAFC 연례회의	11.1-5	부산	실장외3	불법감시 및 기술협력
	제65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제2차 비공식 회의	11.15-23	미국(뉴욕)	5급외2	유엔총회에 상정할 수산 결의안 초안 확정
	제17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특별회의	11.17-27	프랑스(파리)	과장외3	눈다랑어, 황새치 쿼터설정
12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제7차 연례회의	12.6-10	미크로네시아	실장외2	자원보존관리조치 논의
	한-PNA 수산고위급 회의	미정	서울	장관외3	한-PNA간 수산협력 협의
	한-프랑스 어업협정관련 회의	미정	미정	실장외2	폴리네시아 입어재개 논의

《 참고 2-9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개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04. 6. 19.(04. 11. 25)
 - 목 적 :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사무국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 회원국 :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등 25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313,000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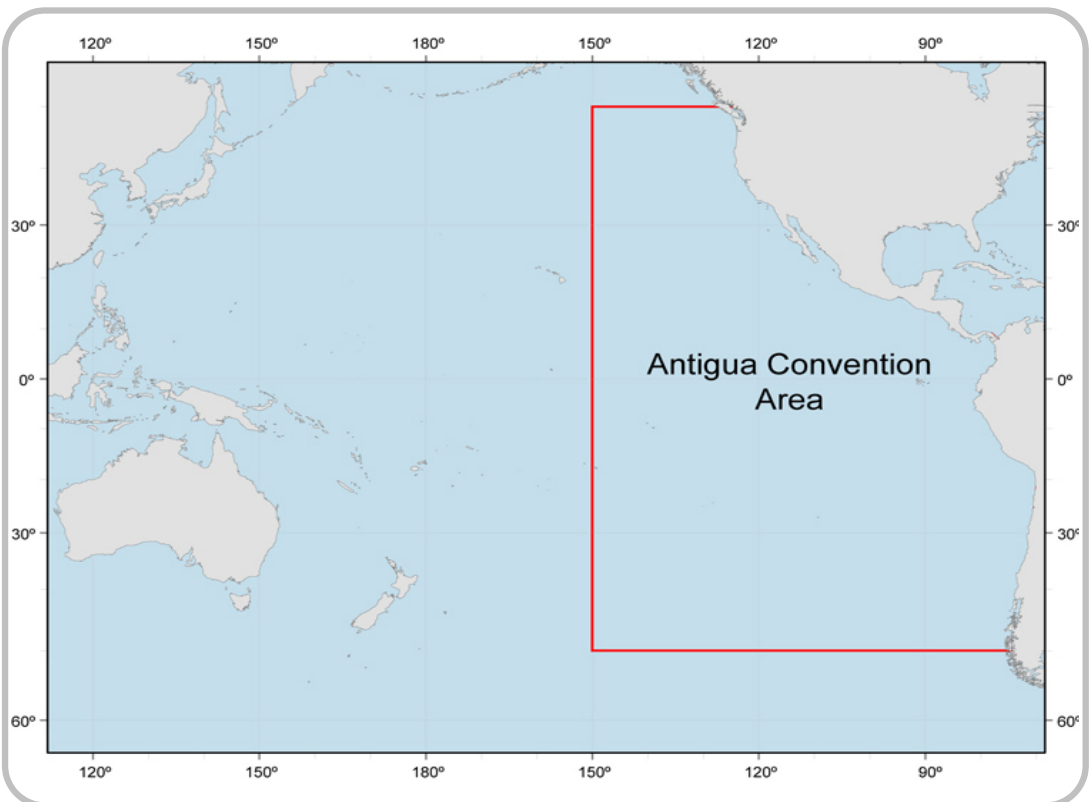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50. 3. 3.('05. 12. 13)
 - 목 적 : 동부태평양 수역 참치자원관리 및 돌고래 관리기능 병행
 - 사무국 : 미국 LA - La Jolla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등 16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5,485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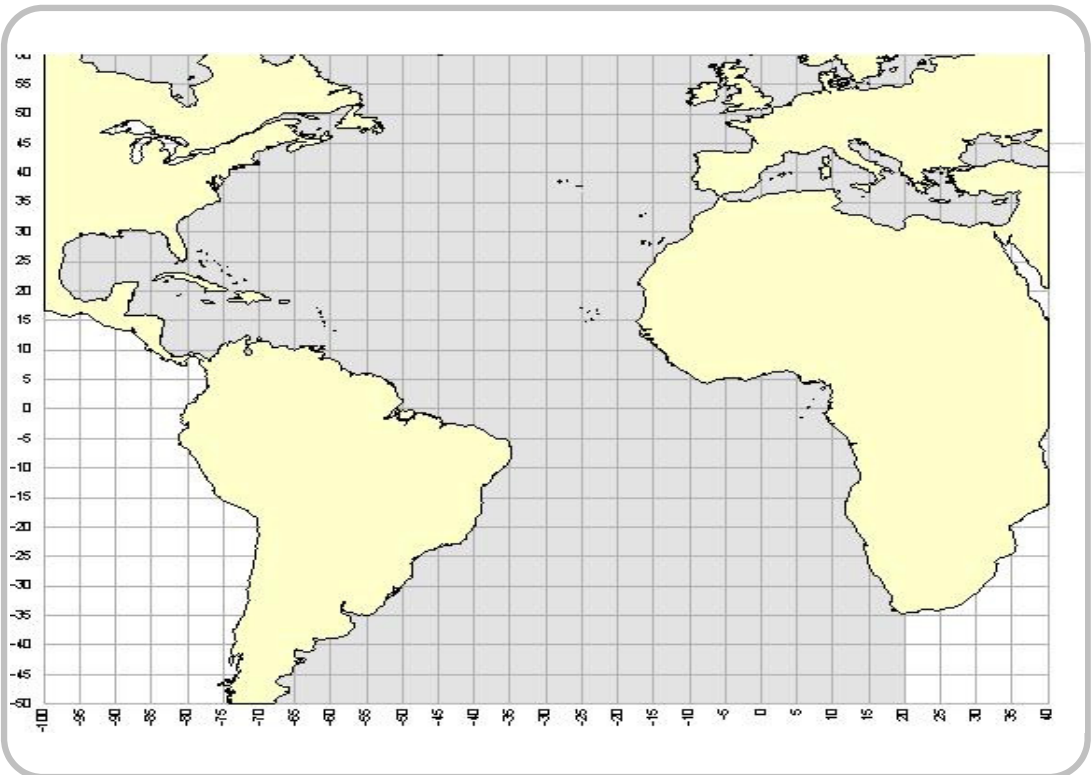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69. 3 ('70. 8)
- 목 적 :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스페인 마드리드
- 회원국 : 미국, 일본, 중국, EC 등 48개국

※ 2009년도 어획실적 : 2,472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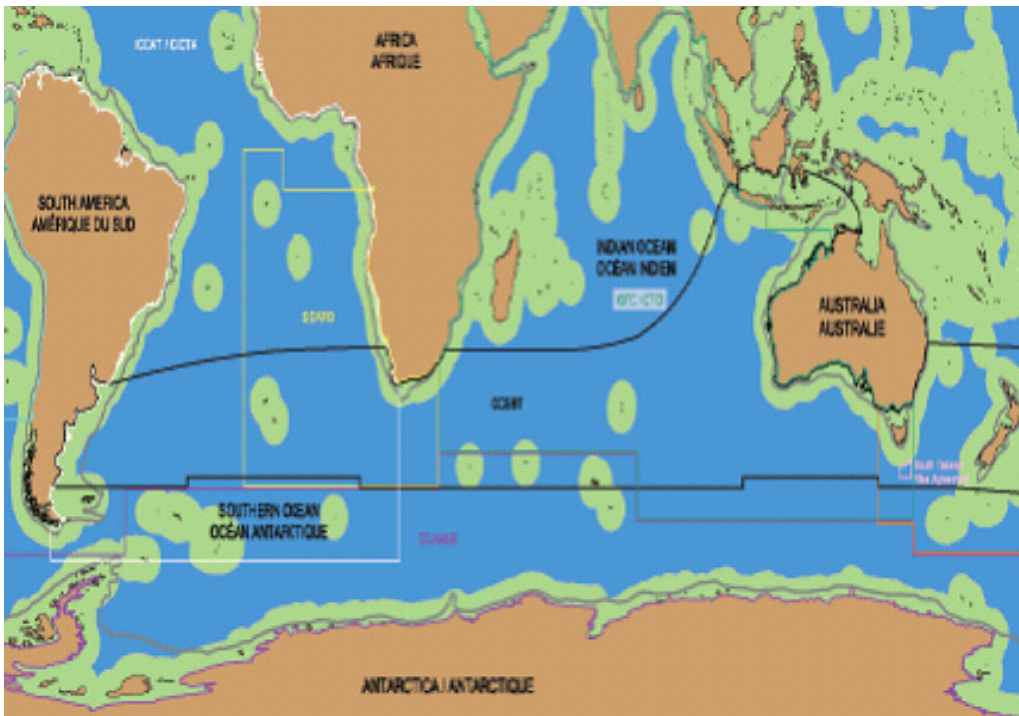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4. 5. ('01. 10. 17.)
- 목 적 :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호주 캔버라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및 대만(어업실체)
※ 2009년도 어획실적 : 976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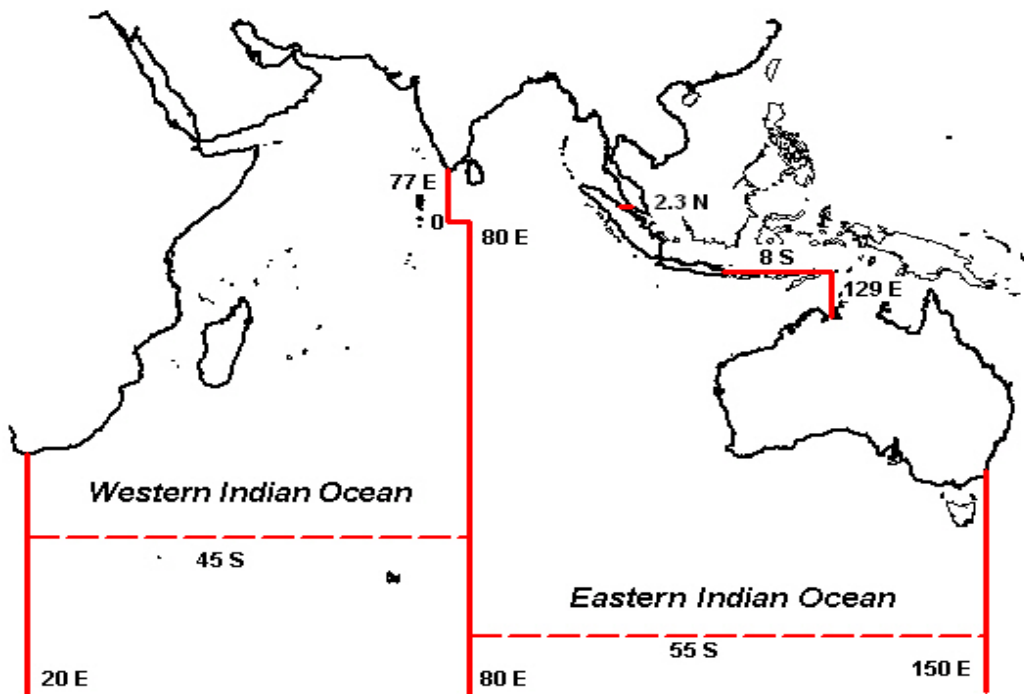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6. 3. 27('96. 3)
 - 목 적 :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세이셸 빅토리아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EC 등 27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2,977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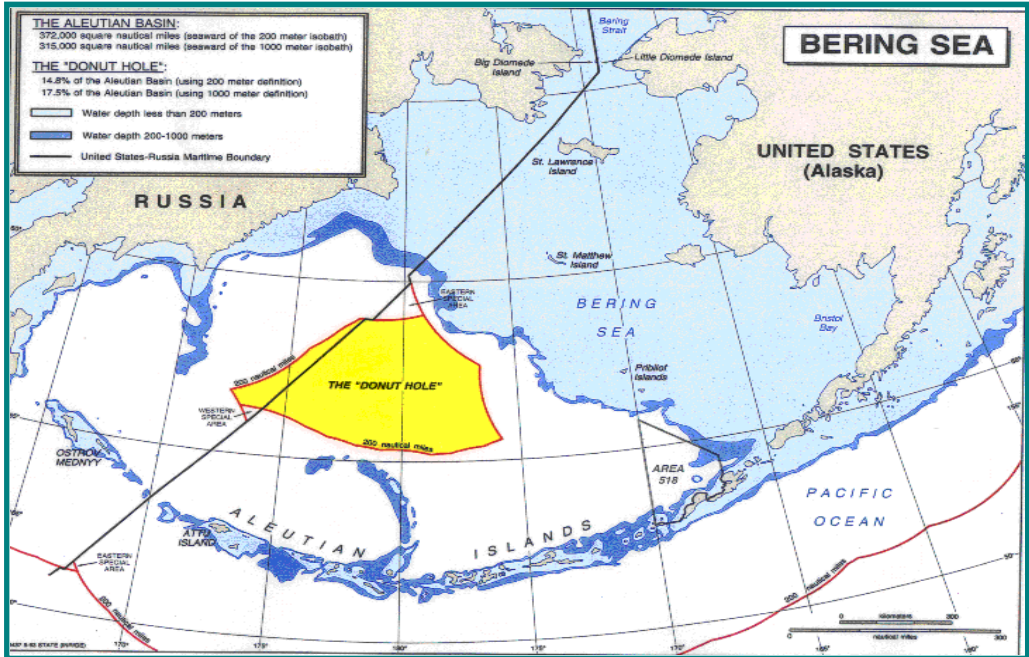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 (CBSPC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 in the Central Bering Sea)

협약 개요

- 협약발효(비준일) : '95. 12. 8('96. 1. 4)
 - 목 적 :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도모 및 정보교환
 - 당사국 :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폴란드 6개국
- ※ 1993년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조업중단 중

협약 수역도



국제포경위원회 (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46. 12. 2.('78. 12. 29)
- 목 적 : 고래의 적절한 보존관리 및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 사무국 : 영국 캠브리지
- 회원국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88개국

조업 현황

- '86년도부터 포획금지(부속서)
 - 우리나라는 IWC 결정에 따라 '86년도 포경어업전면 금지
- 과학조사포경은 국가의 고유권한사항(협약 제8조)
 - ※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조사포경 미실시

금지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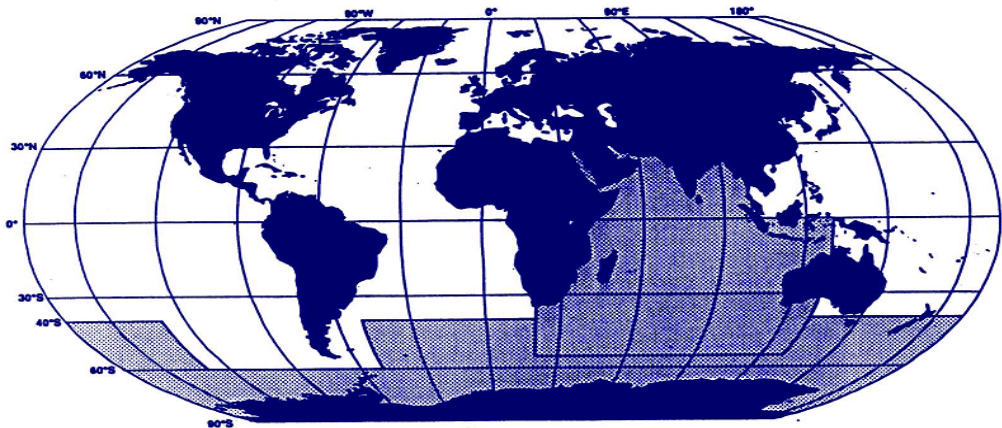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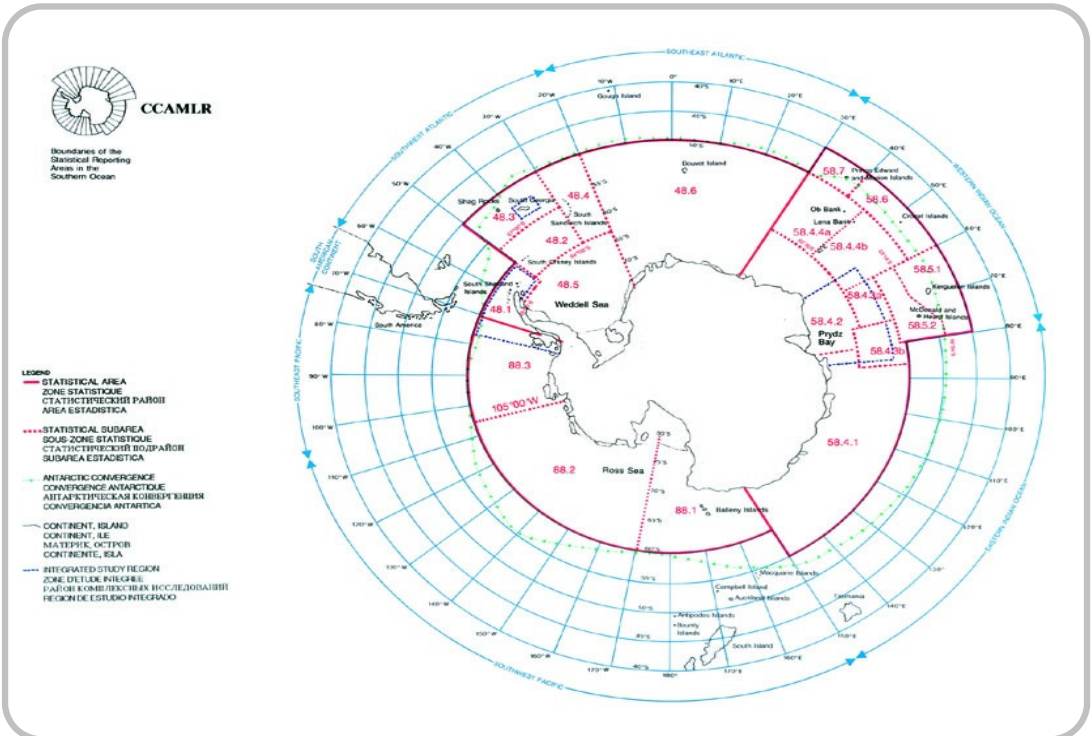
Figure. Boundaries of the Southern Ocean and Indian Ocean Sanctuaries.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80. 5('85. 4. 28)
 - 목 적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
 - 사무국 : 호주 호바트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지, EC 등 24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30,236톤(이빨고기 840톤, 기타 크릴새우)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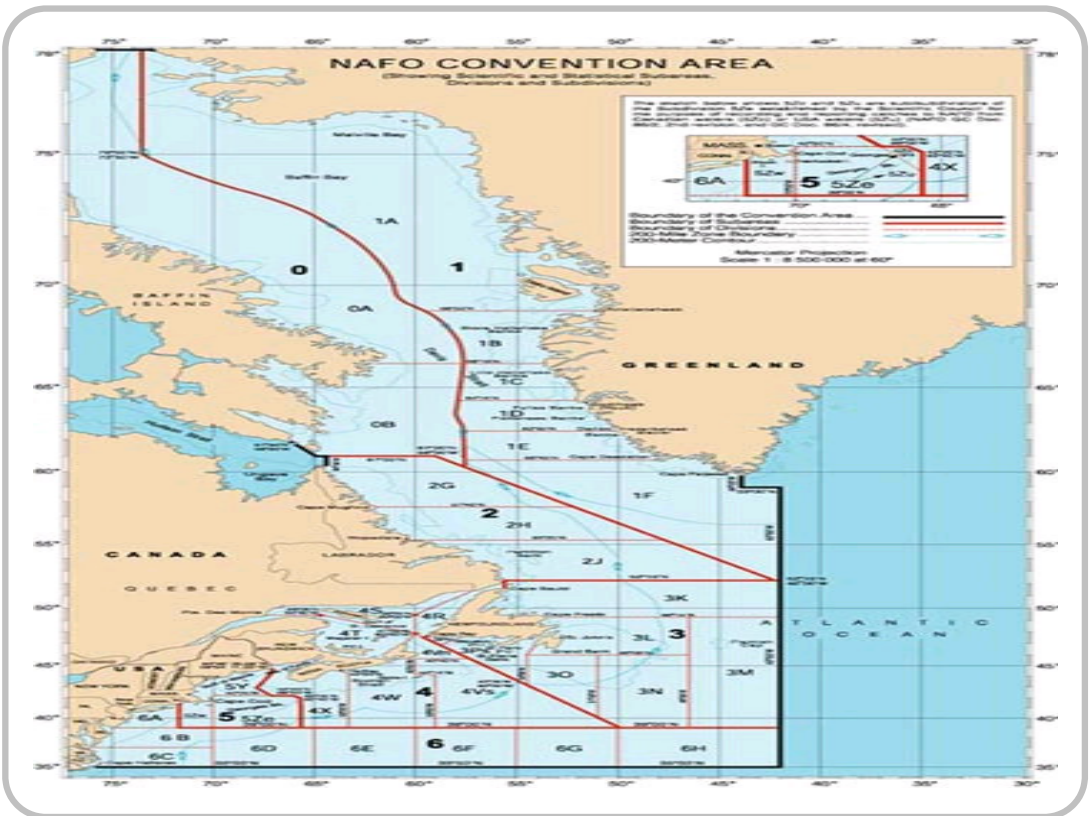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78. 10('93. 12)
 - 목 적 :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합리적 보존과 최적이용 촉진
 - 사무국 : 캐나다 다트마우스
 - 회원국 : 캐나다, EC, 한국, 일본, 미국, 쿠바, 러시아 등 14개국
- ※ '09년도 우리나라 쿼타 : 1,341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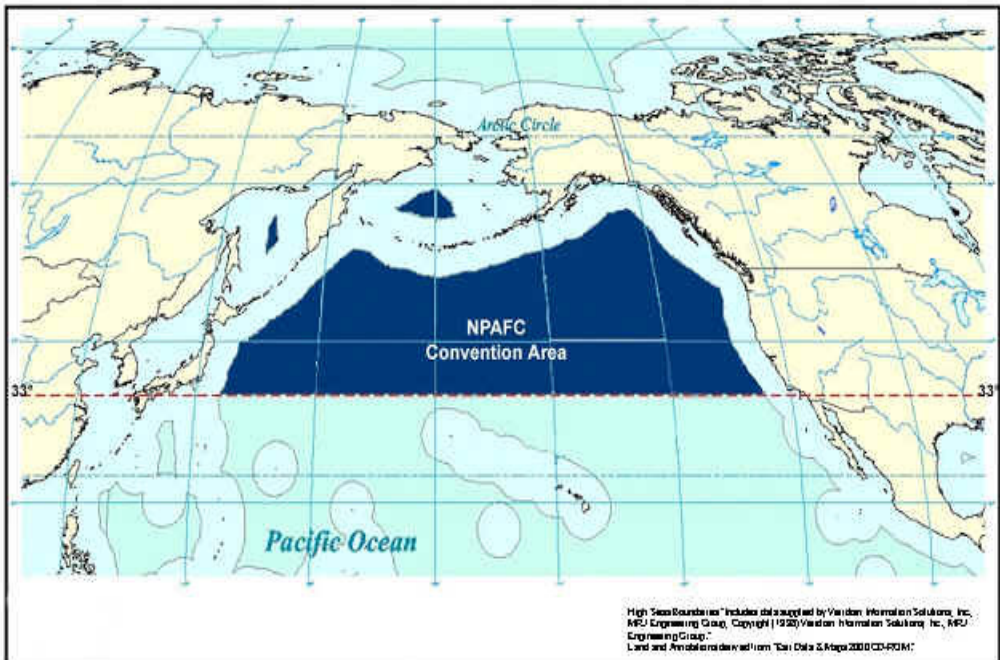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3. 2('03. 5)
 - 목 적 :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적용대상 : 연어 6종 및 송어 1종
 - 사무국 : 캐나다 밴쿠버
 - 회원국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 협약수역에서는 연어조업이 전면금지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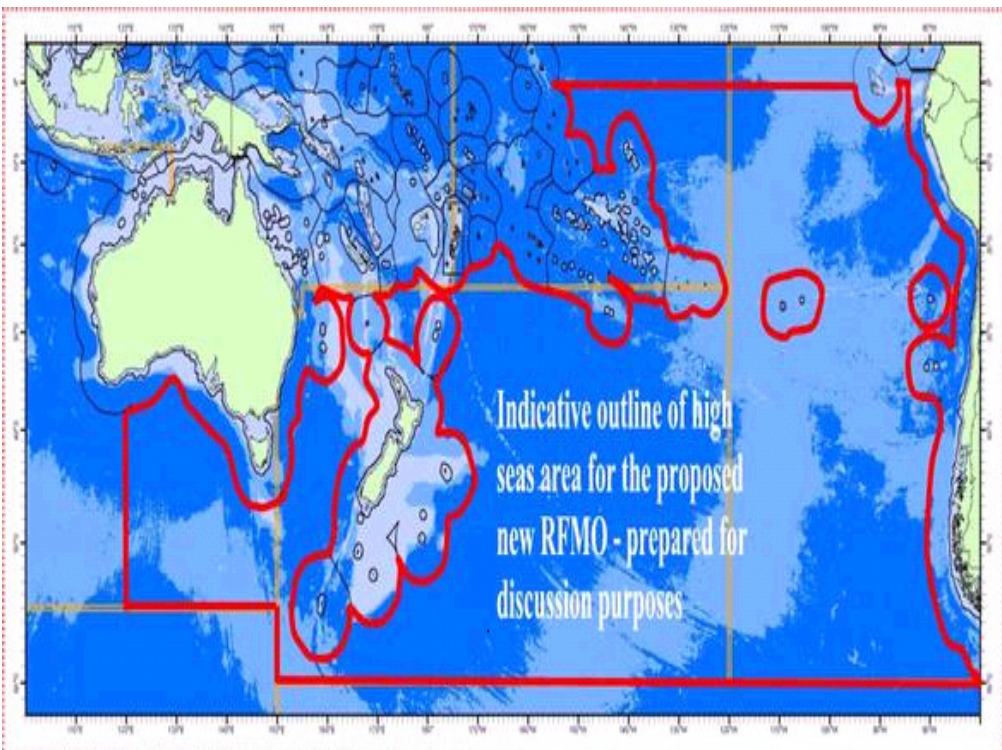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설립중) (SPRFMO :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기구 개요

- 관리대상 : 전갱이, 오렌지러피 등 비참치어종
 - 임시 사무국 : 뉴질랜드 웰링턴
 - 설립 협상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EC 등 약 25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전갱이 14,000여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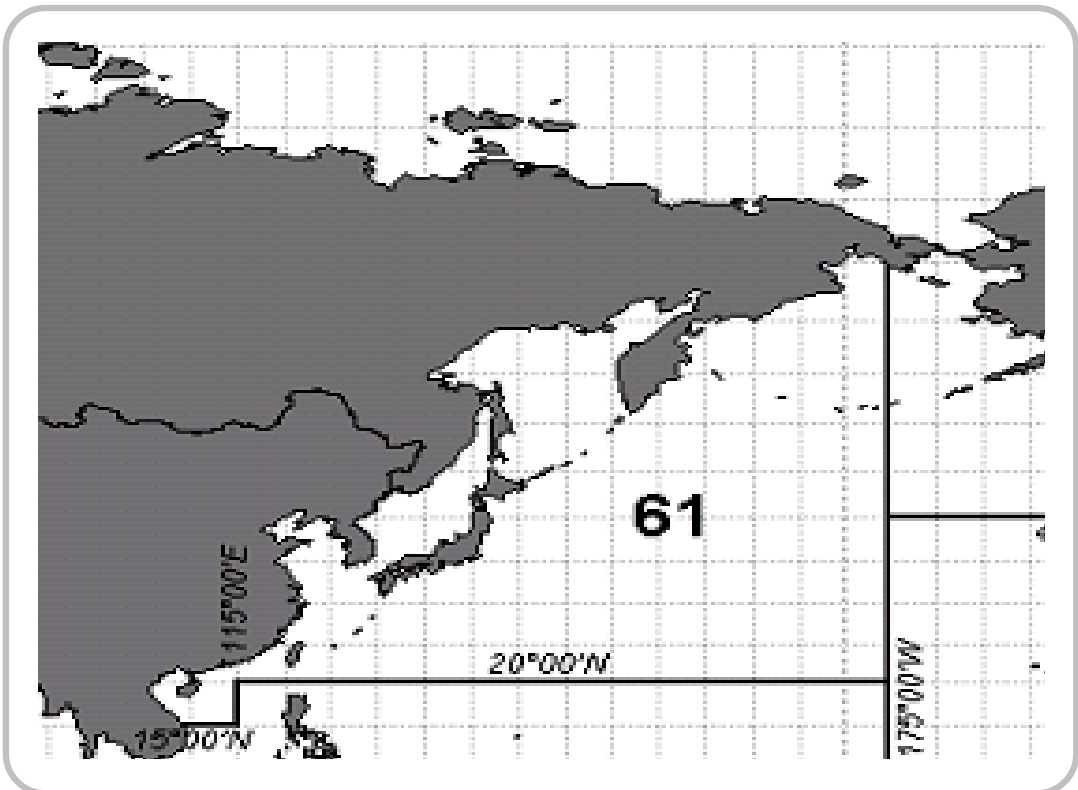


북태평양어업관리기구(설립중) (NPFO : North Pacific Fisheries Organization)

기구 개요

- 관리대상수역 : 제61해구 및 북태평양 공해수역(협상중)
 - 관리대상 : 저층어업을 포함한 기타 어업(협상중)
 - 임시 사무국 : 일본
 - 설립 협상국 :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5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287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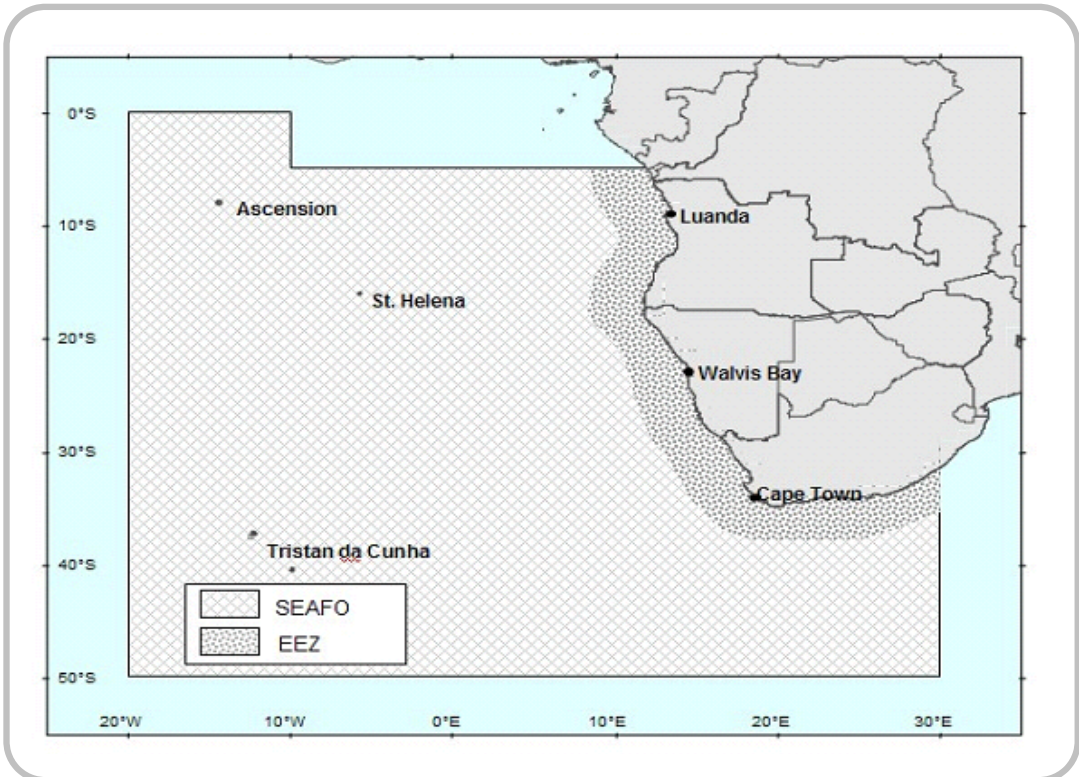


남동대서양수산기구(가입추진중) (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기구 개요

- 설립일(협약발효일) : '01. 4. ('04. 4)
 - 목 적 :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
 - 적용대상 :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어류 (참치제외)
 - 사무국 : 나미비아 왈비스 베이
 - 회원국 : EC, 나미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등 5개국
- ※ 2009년도 어획실적 : 이빨고기 65톤(연승선 1척)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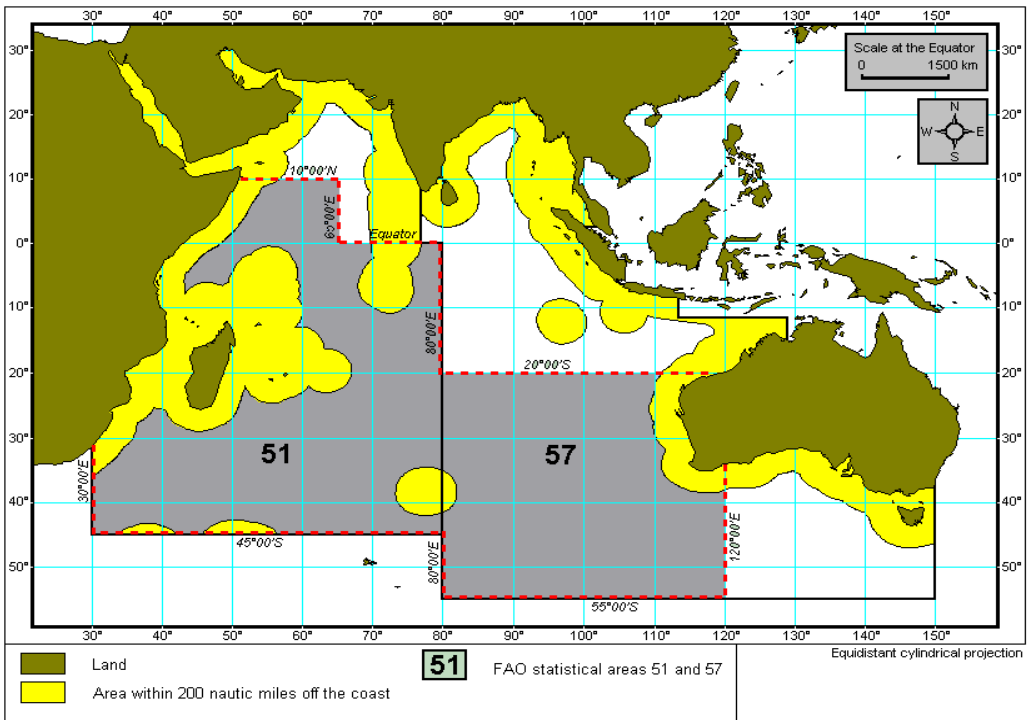


남인도양수산업협정(가입검토중) (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협정 개요

- 협정채택 : 2006. 7. 7. (미발효)
- 목 적 : 협정수역의 다랑어류 외 어업자원관리
- 사무국 : 현재 IOTC(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대행
- 서명국 : EC, 호주, 뉴지, 프랑스, 세이셸 및 주요 연안국 10개국

협정 수역도



FAO, III-2001

《 참고 2-10 》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 입어국 (2009)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2009년 조업실적	2010년 입어조건	협정 주요내용
러시아 (정부)	'91.9.16 ('91.10.22)	명 태: 5척/28,186톤 오징어: 38척/2,780톤 공 차: 15척/4,528톤 대 구: 2척/2,688톤 가오리: 2척/800톤 가자미: 2척/300톤 청 어: 5척/45톤 복 어: 38척/2.4톤	명 태: 20,500톤 오징어: 4,500톤 대 구: 2,650톤 공 차: 5,000톤 가오리: 800톤 가자미: 300톤 청어: 250톤 복 어: 50톤	-양국수역내 상호입어 허용, 한·러 어업위원회 설치 -수산연구협력등 9개 수산협력실시 -어로, 양식, 가공등에서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조율 -수산가공공장, 조선소 투자 논의 -불법교역방지협정(안) 협상 진행
일 본 (정부)	'98.11.28 ('99.1.22)	우리어산 602척/14,419톤 일본어산 133척/ 2,684톤	우리어산 940척/60,000톤 일본어산 940척/60,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중간수역설정, 기국주의 조업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3년간 유효, 6월전 통고시 종료
중 국 (정부)	'00.8.3 ('01.6.30)	우리어산 167척/ 4,219톤 중국어산 1,794척/5,571톤	우리어산 1,600척/68,000톤 중국어산 1,800척/70,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잠정조치수역·과도수역 설정, 기국주의에 의한 조업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5년간 유효, 1년전 통고시 종료
투발루 (민간)	'80.6.18 ('80.6.18)	참치연승: 45척/3,468톤 참치선망: 27척/23,483톤	참치연승: 40척 참치선망: 28척	-투발루수역내 어로행위 허용 -어업합작 장려 및 최혜국대우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솔로몬 (민간)	'80.12.12 ('80.12.12)	참치연승: 32척/2,917톤 참치선망: 27척/33,181톤	참치연승: 6척 참치선망: 28척	-솔로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키리 바시 (민간)	'80.12.18 ('80.12.18)	참치연승: 92척/12,019톤 참치선망: 27척/88,363톤	참치연승: 96척 참치선망: 28척	-키리바시 200해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족자원보존 및 최적이용 목적 증진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파푸아 뉴기니 (민간)	'92.1.25 ('92.4.15)	참치선망: 27척/41,437톤	참치선망: 28척	-파푸아뉴기니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합작사업 장려 및 최혜국대우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 입어중단 및 미입어국(2009)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과년도 조업실적	입어중단(미입어)사유	협정 주요내용
쿡 (민간)	'80.8.25 ('80.8.25)	<1998년> 참치연승: 6척/107톤	1990년대 후반 사모아 기지선의 완전철수로, 원격지가 됨에 따라 입 어중단	-쿡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해양생물자원 관리·보존·이용 협력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3개월전 통고시 종료
불란서 (정부)	'80.9.19 ('80.12.19)	<2000년> 참치연승: 78척/2,437톤	협상결렬로 입어중단 (척수·입어로 입장차 이) 이후, 우리 독항 선이 주로 키리바시 (어황이 가장 좋음) 위주로 조업	-불령수역 협정적용범위 설정 -입어로 사전지불 조건, 협정수역내 조업허가 -선박의 나포, 선원체포시 통보의무 -3개월전 통고시 종료
이 란 (정부)	'77.5.11 ('78.4.1)	<1992년> 트롤: 3척	이란혁명 이후 입어중단	-어로, 수산분야 상호협력강화 -전문가, 훈련생, 수산과학기술협력 -수산물 가공등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호 주 (정부)	'83.11.23 ('83.11.24)	<1985년> 오징어채낚기: 8척	포클랜드 호어장 발견으 로 입어중단	-호주 200해리수역내 입어허용 -선박, 선원 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과학적 조사에 협력, 통계·생물학적 자료제공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모리타 니아 (정부)	'84.1.7 ('84.1.7)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모리타니아 200해리 경제수역내 조업허용 -어로장비, 선박수리 등 합작사업 장려 -어선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및 나포시 통보 조치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에쿠아 도르 (정부)	'84.5.22 ('84.9.19)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상호 타방어선 조업, 편의제공 -합작사업등 자본협력 장려 -양국어선의 타방국 항구이용 허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 참고 2-11 》

연안국과의 인사 교류 주요 현황('05-'09)

일시	행사명	주요 인사명	주요내용	
'09	9.4-5	한-PNA 수산협력회의	PNA 의장 및 8개국 대표	▪ 한-PNA 수산협력방안 논의
	10.26	실장 면담	솔로몬 수산장관 외 4명	▪ 솔로몬 현지 어항건설 관련 협의 및 우리측 장기입어 당부
'08	9.2	우루과이 대통령 방한	농축수산부장관	▪ 한-우루과이 수산협력 MOU 체결 및 수산협력방안 논의
'07	10.21-26	알제리 수산어로 자원부 장관 방한	알제리 수산어로 자원부 장관외 3명	▪ 수산협력약정(MOU) 체결 및 수산현장 시찰
	10.9	차관보면담	솔로몬 수산부 장관 면담	▪ 양국간 협력 및 여수박람회지원
	7.4	장관면담	주한노르웨이 대사	▪ 양식박람회 및 제5차 한-놀 수산협력회의 장관 초청
	4.16	장관면담	주한노르웨이 대사	▪ 노르웨이 왕세자부부 방한 관련 협조 요청
'06	11.13-17	알제리 경제사절단 방한	알제리 수산자원부 대외협력담당관	▪ 수산협력약정(MOU) 문안 및 알제리 장관 초청건 협의 ▪ 현장시찰(부산항, 과학원 등)
	09.27	장관면담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 외 6명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09.23-27	차관면담	우루과이 항만청장	▪ 차관 만찬 ▪ 부산청장 및 부산항만공사장 면담 외 부산시찰
	09.14	차관보면담	솔로몬 장관	▪ 차관 오찬 ▪ 장기입어약정 체결 당부
	07.21	차관보면담	베트남 수산차관 외 16명	▪ 차관보 오찬 ▪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협의
'05	12.07	장관면담	기니 수산장관 외 7명	▪ 양국 장관간 합의의사록 작성
	09.21	주한대사 설명회	중남미 15국 주한대사 참석	▪ 우리 해양수산 정책 설명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방안 협의
	05.20	장관면담	멕시코농업부장관 외 2명	▪ 양국간 어업협력 증진방안 및 양국 FTA 체결 관련 의견 교환

어업교섭과

1. 남북관계정상화대비 수산협력 방안 마련	111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113
3.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115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117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118

《참고》

《3- 1》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121
《3- 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122
《3- 3》 한·일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23
《3- 4》 한·중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24
《3- 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125
《3- 6》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126
《3- 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128
《3- 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129
《3- 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130
《3-10》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132
《3-11》 수산진흥종합대책	133
《3-12》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134
《3-13》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135
《3-1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	136
《3-15》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138

《3-16》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139
《3-17》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140
《3-18》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141
《3-19》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142
《3-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43

가. 현 황

-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중국어선들의 짝쓸이 조업 및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들 불만 고조

* 동해 중국어선 조업현황 : ('05) 939 →('06) 582 →('07) 497 →('08) 325 →('09) 0

* 서해 불법어선 나포현황 : ('05) 584 →('06) 522 →('07) 494 →('08) 432 →('09) 381

-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의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교역액 :('04) 70백만\$ →('05) 83 →('06) 101 →('07) 125 →('08) 142 →('09) 155

* 교역량 :('04) 43천톤 →('05) 51 →('06) 54 →('07) 58 →('08) 66 →('09) 79

나. 그간 추진실적

- 2007정상선언(10.4), 남북총리회담(11.16), 남북경제공동위(12.6),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12.15)에서 수산협력사업 추진합의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추진

- 우리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08년부터 추진

- 수산물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적극 추진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합의

- 남북 당국간 기 합의사항 이행준비를 위한 시험연구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유지

- 남북수산협력 시범사업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회, 워크숍, 포럼, 어업인 간담회 등 개최

다. '10년 중점 추진 방향

-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07년 남북간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중 호혜적인 사업으로 『동해북측수역 입어 추진』 준비
 - 新 수산정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해북측수역 입어 추진」 방안 마련('10. 4월)
 - * 정책 포럼(09.11월), 관계기관 협의 및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09. 5, 12월)
 - * 동해북측수역 입어사업의 합의서(안)에 대한 연구수행(10.1월 KMI)
 -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협의를 추진(여건 마련시)
 - 조업활동 및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동해어로합의서(조업조건, 입어절차규칙 등) 체결 추진
 - 동해 북측수역 입어사업을 통하여 제3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및 남북간 공동자원관리 협력기반 구축
- 남북 수산물 교역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 북측과 수산물 교역을 하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통관 절차 등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

가. 현황

-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이후 일본 EEZ내 지속적인 조업을 통해 한정된 우리 어장에서의 경쟁조업 완화 기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우리측이 어획량 1.5배, 조업척수 2.8배로 일측에 비해 의존도 다소 높음
 - 연평균 조업척수('99~'09) : 한국 766척 / 일본 279척
 - 연평균 어획량('99~'09) : 한국 24,871톤 / 일본 17,154톤
 - 일측은 자원상태 악화(동해중간수역 자원 포함),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조업분쟁 등을 이유로 우리 주력업종에 대한 입어규모 축소 및 조업조건 강화 요구
 - 특히,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축소, 연승·선망·중형기저 등의 주 조업수역(130도 30분 동측수역) 금지 확대 등 조업조건 대폭 강화
- ※ 일측은 입어협상과 연계하여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 및 발효('99.1)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익년도 상대국 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결정

다. '10년 중점 추진 방향

□ 2010년 어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 할당량 소진율 제고 및 조업질서 정착을 통한 양국 신뢰관계 유지
 - 할당량/입어척수 : 60,000톤/ 900척(전년 60,000톤/940척)
 - 소진율 제고를 위한 현지 지도강화 및 전배제도 활용 적극 유도
 -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조업지도 강화

□ 한·일어업협상 대비 현지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마련

- 어획할당량 운영실태 파악, 입어규모(어획량, 척수)희망 조사
 - 갈치연승 등 조업분쟁 및 주력업종에 대한 입어규모 적정화
- 합의사항 이행 및 어업인 교육실시·지도
 - GPS시범실시에 따른 현장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GPS실시요령 개선
 - 한국어선에 의한 폐기어구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대응방안 마련
- 2011년도 한·일 입어협상 기본계획 수립
 -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및 단계별 어업교섭 추진계획 등

□ 한·일어업협상 추진

- 과장급 실무회담 및 국장급 소위원회 개최
-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자협의회 개최

가. 현황

- 중국어선의 우리EEZ내 조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업규제 강화 및 자원관리 강화 필요
 - 한·중 협정이후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의 입어규모 감축으로 우리EEZ내 자원관리 및 어업질서 구축
 - 조업척수(협정전) : 12,192척 → ('01) 2,796척 → ('09) 1,750척
 - 할당량(협정전) : 440,758톤 → ('01) 164,400톤 → ('09) 67,500톤
 - 우리 EEZ의 어종별 자원수준에 맞는 어업활동을 위해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추진
-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및 우리 EEZ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미미
 - 잠정조치수역의 한·중 공동자원조사를 위한 협의 추진
 - 집단화·흉포화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중국어선의 나포실적 : ('07) 494 → ('08) 432 → ('09) 381척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 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한·중 어업협정체결('00.8) 및 발효('01.6)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익년도 상대국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결정

다. '10년 중점 추진 방향

- 정상적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 협의·합의 추진
 -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불법어업 정보교환,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설정, GPS 항적기록 보존 제도의 점진적 도입 추진
- 2010년도 합의사항 이행
 - 상대국 수역내 상호입어규모
 - 우리어선 : 1,600척/66,000톤 (전년 1,600척/68,000톤)
 - 중국어선 : 1,750척/67,500톤 (전년 1,800척/70,000톤)
 - 우리 EEZ의 자원관리를 위한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 2010년 시범 실시중인 선망(고등어) 어획할당제 외에 기타 업종(어종)에 대한 어획할당제 확대 추진
 - 잠정조치수역 관리 강화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독자적인 자원조사 실시 및 2010년부터 상호 전문가 파견 등
- 2011년도 입어협상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
 - 2011년도 입어협상 대비 업계 협의회 및 현지 어업인 의견 수렴
 - 2011년도 한·중 어업협상 기본계획 수립
 - 주요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및 단계별 어업교섭 추진계획 등
 - 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5월), 국장급 준비회담 개최(7월, 9월) 및 어공위 개최(9월)

가. 현 황

- 한·일 간 민간협력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나, 한·중 간 민간협력은 중국측의 무관심, 회의 기피 등으로 성과 미흡
- 중국어선의 우리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조업, 동해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잠정조치수역의 조업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어업인들 불만 고조

나. 추진실적

- 한·중·일 양국 및 3국 어선간 자율적 조업질서유지 도모를 위해 양국간 민간약정 체결 및 3국간 협의회 정례화 합의
 - ※ 한·일 ('03.5), 한·중('04.11), 한·중·일('05.6)
- 한·일 양국어선간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보호 방안 도출('01)
 -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암게 채포금지, 붉은대게 공조조업, 어장 청소 실시 등

다. '10년 중점 추진 방향

- 한·중·일 양국 및 3국간 민간협회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한일간 일측의 동해중간수역에서의 자원보호방안 조속실현 요구에 대해 대응전략 마련 및 지속적 협의추진
 - 한·중 어선간 조업분쟁 사례수집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우리측 주도의 한·중 민간협회의 활성화 도모
 - 한·중·일 3국 어선의 공동조업수역에서의 조업질서유지 및 자원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측 주도로 협의 적극추진

가. 현 황

- '06. 6월 한·미 FTA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의 실무협상 등을 거쳐 '07.4월 협상 타결 및 '07.6월 협정문 서명
 - 수산물의 경우 '97년 수입 자유화되어 대부분의 품목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시 수익저하 우려
 - ※ 15년간 4,215억원(연 281억원) 생산 감소 예상
- 한미 FTA를 수산업 자생력 회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07.11) 추진**

나. 추진실적

- 『수산업 · 어촌 종합대책』 수립('04.1)
 - 생산구조개편 등 7대 과제에 10년간('04~'13) 총 12.4조원 투융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
 - FTA에 따른 어업인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등 지원 근거 마련
-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10.3)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매 5년 법정대책
- 한미 FTA 협상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수립 추진
 - 국내보완대책 수립 발표 및 우리 부 자체 브리핑('07.6)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 · 발표('07.9)

□ FTA 관련 특별법 등 개정 추진

- 어업협정특별법 시행령 개정 · 공포('07.10)
- FTA지원특별법(안) 마련('07.7), 법제처 심사('07.9) 및 국회제출('08.10.23)

□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 발표('07.11.6)

- 총 10년간('08~'17) 7,262억원(보조 6,735, 융자 537억원) 수준 지원

□ 2007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 참가 · 홍보('07.11/코엑스)

- VIP(11. 30 무역의 날 행사 후), 총리(개막식) 참석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지침 마련('08.12)

-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 ※ 연구용역 추진('07. 12. 17~'08. 11. 13/전남대, 군산대)
 - ※ 동 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 FTA이행지원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추가 보안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단체·협회 등 의견수렴('09.1~)

- 기존대책 설명 및 추가 보완대책 논의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개방화에 대응 구체적 지원대책의 신속한 마련으로 어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대 정부 신뢰 회복

- 직접적 피해지원(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등

라. '10 추진계획

□ FTA 지원 특별법 · 시행령 등 제 · 개정

- FTA 지원 특별법 공포 추진('10) 및 시행령(안) 마련('10)

□ 국회 비준대비 추가 보완대책 검토('10)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기존사업 추가 대책포함(1,035억)
- 기존대책 사업 재정지원 증액(4개사업 250억)
 - 순환여과식양식시설(당초 35억 → 변경 70억)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당초 40억 → 변경 94억)
 - 환경친화적 부표지급(당초 60억 → 변경 173억)
 - 연근해어업 체질개선 연구(당초 27억 → 변경 75억)

□ 현재 추진 및 예상되는 FTA 대비 지원대책 준비

- 기존 협상(칠레, 미국) 대책을 통해 축적된 경험 및 사례를 활용하여 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비책 마련
 - 기 제시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방안 기초자료 확보
- 중국 등 피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국가와의 협상 진행시 T/F 팀을 구성
 - ※ FTA 추진 현황
 - 협상 타결된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 협상 진행중인 FTA :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 협상 예상되는 FTA : 중국, GCC(걸프협력회의),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 참고 3-1 》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단위 : kg, 천달러)

품 목 (Items)	2005		2006		2007		2008년		2009년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총 계	50,994,434	82,172	53,743,984	99,564	57,099,568	123,190	63,692,175	137,050	75,903,322	151,851
명태	49,280	62	58,212	116	4,172	6	-	-	10,826	12
넙치	878	9	4,504	30	13,650	109	31,780	273	9,434	78
가자미	13,000	16	5,790	8	-	-	-	-	-	-
대구	75,998	100	10,986	16	-	-	17,570	19	18,873	45
뱀장어	-	-	-	-	-	-	1,000	2	-	-
기타어류	54,923	193	69,941	279	359,771	495	482,275	1,172	564,400	1,090
새우	307,822	1,881	701,996	4,462	1,724,567	13,677	3,108,087	18,628	3,316,438	20,964
꽃게	5,909	64	30,000	528	65,284	409	11,033	46	-	-
기타게	144,734	594	238,055	1,583	598,404	4,916	775,732	3,925	742,581	4,160
오징어	37,900	54	33,758	252	10,000	9	-	-	28,000	39
문어	2,139,573	5,450	2,614,048	7,747	1,811,870	6,661	1,907,792	6,956	2,220,644	7,885
낙지	118,960	202	121,607	216	151,704	354	146,444	361	51,485	145
굴	155,022	226	603,413	897	425,438	564	204,736	377	217,274	385
피조개	127,940	283	173,112	414	495,445	1,334	749,975	2,038	586,150	1,720
기타조개	32,193,552	31,161	32,618,492	35,136	33,863,184	39,455	34,757,203	41,953	42,617,434	52,514
기타연체동물	9,895,634	11,637	9,388,312	12,445	8,969,045	11,924	12,572,761	15,465	15,721,938	18,071
뿔	-	-	-	-	-	-	13,921	237	1,775	39
미역	-	-	-	-	15,819	17	828,712	717	1,678,954	1,629
한천	1,825	7	-	-	1,200	38	-	-	-	-
기타해조류	3,250	13	14,579	16	13,500	19	10,400	16	-	-
어육	12,800	34	10,000	32	-	-	11,895	36	-	-
명란	4,343	6	-	-	-	-	-	-	-	-
기타어란	-	-	1,420	4	-	-	-	-	-	-
기타수산물통조림	10,779	64	20,440	59	1,620	19	59,898	216	37,902	129
새우젓	-	-	-	-	120	1	-	-	-	-
기타염장수산물	251,280	475	198,025	382	182,138	349	-	-	43,060	127
건조수산물	2,204,226	17,781	1,986,347	16,901	2,281,489	19,496	1,949,488	18,638	2,125,914	21,245
기타수산가공품	2,915,506	8,957	4,404,880	15,133	5,661,195	19,939	5,188,004	21,378	4,179,983	16,249
수산부산물	19,875	45	14,420	70	12,992	32	13,500	81	6,000	31
기타수산물	249,425	2,858	421,647	2,838	436,961	3,367	849,969	4,516	1,724,257	5,294

* 자료 : 통일부 남북교역

《 참고 3-2 》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단위:Kg, 천달러)

품 목 (Items)	2005		2006		2007		2008년		2009년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총 계	373,586	1,238	625,797	995	557,464	1,364	2,619,158	4,686	2,612,736	3,144
갈치	4,400	13	-	-	-	-	-	-	-	-
명태	58,510	46	-	-	-	-	-	-	515	1
넙치	-	-	-	-	-	-	2,500	25	-	-
가자미	-	-	-	-	42	-	-	-	-	-
대구	2,790	3	-	-	37	-	1,399	10	-	-
기타어류	29,496	21	10,979	9	14,583	77	28,346	61	3,300	5
새우	8,500	63	797	3	-	-	18,064	132	9,460	17
기타게	1,571	7	5,272	44	7,807	39	1,389	16	1,810	21
오징어	17,679	32	4,528	16	107	2	745	4	-	-
문어	-	-	15,815	51	70,200	169	82,850	558	2,186	5
낙지	-	-	40	-	-	-	40,800	56	1,660	4
굴	1,040	4	-	-	33,000	46	-	-	402	1
피조개	1,260	3	-	-	-	-	-	-	6,040	42
기타조개	13,040	20	244,876	209	145,756	164	155,340	273	71,891	94
기타연체동물	73,160	45	210,280	167	61,570	60	31,658	64	29,415	30
김	969	2	1,134	4	2,899	18	5,263	47	378	4
톳	-	-	-	-	-	-	25,267	279	13,455	229
미역	761	2	30,677	242	-	-	1,555,722	879	2,047,668	984
기타해조류	1,221	3	1,611	4	17,367	44	2,410	107	8,579	61
어육	-	-	360	-	-	-	12,528	5	-	-
한천	-	-	-	-	-	-	-	-	-	-
어류통조림	1,086	3	1,486	4	1,790	8	20	-	200	-
기타수산물통조림	1,008	3	111	1	1,554	12	975	5	-	-
기타염장수산물	124	-	-	-	-	-	-	-	13,300	24
건조수산물	52,087	344	12,810	56	23,200	182	8,280	41	52,195	397
기타수산가공품	98,082	602	67,926	169	160,161	452	591,931	1,948	314,485	1,085
수산부산물	-	-	-	-	7,275	20	12,500	76	3,000	6
기타수산물	6,802	22	17,095	15	10,115	71	41,152	101	32,797	135

* 자료 : 통일부 남북교역

《 참고 3-3 》

한·일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일 본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1999	1,704	674	39.6	149,218	27,335	18.3	1,601	517	32.3	93,773	22,117	23.6
2000	1,639	863	52.7	125,197	31,422	24.1	1,601	535	33.4	93,773	7,293	7.8
2001	1,464	952	65.0	99,773	23,839	23.9	1,459	479	32.8	93,773	16,193	17.3
2002	1,395	992	71.1	89,773	28,879	32.2	1,395	354	25.4	89,773	19,669	21.9
2003	1,232	875	71.0	80,000	28,104	35.1	1,232	193	15.7	80,000	13,158	16.4
2004	1,098	758	69.0	70,000	20,669	29.5	1,098	271	24.7	70,000	25,032	35.8
2005	1,086	731	67.3	67,000	20,306	30.3	1,086	183	16.9	67,000	9,640	14.4
2006	1,050	749	71.3	63,500	24,125	38.0	1,050	148	14.1	63,500	9,517	15.0
2007	1,025	675	65.9	60,500	23,819	39.4	1,025	137	13.4	60,500	24,335	40.2
2008	1,000	602	60.2	60,000	14,419	24.0	1,000	133	13.3	60,000	26,684	44.5
2009	940	560	59.6	60,000	30,667	51.1	940	118	12.6	60,000	15,066	25.1
합계	13,633	8,431	61.8	924,961	273,584	29.6	13,487	3,068	22.7	832,092	188,704	22.7

- ☞ 한국어선 10개 업종(2010년 어기) : 풍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대형기저, 중형기저, 선망, 연승, 외줄낚시,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원양오징어
- ☞ 일본어선 10개 업종(2010년 어기) :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 총합저인망, 오징어채낚기, 연승, 예인조어업, 가다랭이일본조, 일본조어업, 청새치돌봄어업, 고정식자망

《 참고 3-4 》

한·중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01. 6. ~ '02	1,402	403	28.7	90,000	3,993	4.4	2,796	939	33.6	164,400	45,837	27.9
'03	1,402	329	23.5	60,000	3,777	6.3	2,531	1,532	60.5	93,000	37,980	40.8
'04	1,402	380	27.1	60,000	3,564	5.9	2,250	1,310	58.2	83,000	17,340	20.9
'05	1,600	383	23.9	68,000	5,580	8.2	2,100	1,586	75.5	77,500	27,879	36.0
'06	1,600	232	14.5	68,000	2,622	3.9	1,975	1,729	87.5	72,900	30,385	41.7
'07	1,600	198	12.4	68,000	2,821	4.1	1,917	1,843	96.1	71,930	51,015	70.9
'08	1,600	167	10.4	68,000	4,219	6.2	1,859	1,794	96.5	71,000	55,571	78.3
'09	1,600	179	11.2	68,000	3,431	5.1	1,800	1,748	97.1	70,000	54,335	77.6
합계	12,206	2,271	18.6	550,000	30,007	5.5	17,228	12,481	72.4	703,730	320,342	45.5

《 참고 3-5 》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 **우리어선**

(2009년기준/단위: 척/톤)

업종	2009		2010		입어규모 변화	
	척수	할당량	척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00	68,000	1,600	66,000	-	△2,000
저인망류	187(18)	9,165	187(18)	7,165	-	△2,000
선망	173	12,000	173	12,000	-	-
자망류	167	4,742	167	4,742	-	-
안강망	87	2,180	87	2,180	-	-
낙시류	881(250)	33,624	881(250)	33,624	(24)	-
통발류	105(17)	6,289	105(17)	6,289	-	-
운반선	13	-	13	-	-	-

* ()는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어선. 운반선은 합계에 미포함

□ **중국어선**

<입어규모>

(단위: 척/톤)

업종	2009		2010		입어규모 변화	
	척수	할당량	척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800	70,000	1,750	67,500	△50	△2,500
타망	904	45,359	870	43,357	△34	△2,002
- 쌍타망	878	44,139	850	42,497	△28	△1,642
- 단타망	26	1,220	20	860	△6	△360
위망	92	11,826	92	11,646	-	△180
유망	749	8,674	733	8,356	△16	△318
우조	55	4,141	55	4,141	-	-
운반선	66	-	64	-	△2	-

《 참고 3-6 》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2009.12.31)

□ 총 단속건수(위반유형별 분류)

	합계	나 포											훈방		
		계 (나포)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내 영해)	EEZ위반										기 타	
				소계	특정금 지 구역침 범	무허 가 (특정 해역)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계	망목 위반 (어 구위 반)	조업 수역	조업 방법	조업일 지관련 어창용 적도미 비치	입역 통보			조기 입역
○'99	80	80	60 (-)	20	20	-	-	-	-	-	-	-	-	-	
○'00	62	62	34 (-)	28	28	-	-	-	-	-	-	-	-	-	
○'01	174	174	34 (-)	140	27	62 (11)	51	9	6	-	18	14	4	-	-
1~6월	49	49	30 (-)	19	19	-	-	-	-	-	-	-	-	-	-
7~12월	125	125	4 (-)	121	8	62 (11)	51	9	6	-	18	14	4	-	-
○'02	175	175	30 (5)	145	10	108 (7)	27	19	5	2	1	-	-	-	-
○'03	240	240	32 (29)	208	86	88 (9)	34	14	9	2	4	1	-	4	-
○'04	443	437	47 (47)	390	49	101 (13)	240	8	5	-	217	-	-	10	6
○'05	669	584	41 (38)	543	47	146 (18)	350	8	4	-	310	-	-	28	85
○'06	549	522	23 (21)	499	38	133 (12)	328	6	5	3	246	21	-	47	27
○'07	508	494	26 (23)	468	47	70 (31)	351	7	-	20	260	41	2	21	14
○'08	446	432	12 (9)	420	32	76 (8)	312	36	2	2	233	1	-	38	14
○'09	388	381	27 (18)	354	34	91 (9)	229	21	7	0	154	18	0	29	7
○ 협정 이후	3,543	3,390	242 (190)	3,148	351	875 (118)	1,922	128	43	29	1,443	96	6	177	153

□ 업종별 위반사항

	계	기 전 자인망	유자망	선망	통발	연승	트롤	안강망	형망	윤반선	조 망
○ '99	80	72	6	-	-	-	2	-	-	-	-
○ '00	62	49	6	4	1	-	1	1	-	-	-
○ '01	174	118	51	-	2	1	-	1	-	1	-
-1.1 ~6.29	49	41	8	-	-	-	-	-	-	-	-
-6.30~12.31	125	77	43	-	2	1	-	1	-	1	-
○ '02	175	148	23	-	4	-	-	-	-	-	-
○ '03	240	188	24	-	12	-	-	-	15	1	-
○ '04	443 (6)	207	204 (5)	2	9	1	-	1	4	14 (1)	1
○ '05	669 (85)	282 (31)	328 (46)	14 (2)	14	1	-	4	2	23 (6)	1
○ '06	549 (27)	352 (16)	176 (11)	3	7	1		2		8	
○ '07	508 (14)	385 (12)	113 (2)	2 (-)	2 (-)				1	5	
○ '08	446 (14)	363 (10)	75 (0)	3 (4)				1 (0)		4 (0)	
○ '09	388 (7)	287 (7)	84 (0)	1 (0)	1 (0)					15 (0)	

※ ()는 훈방척수임

□ 월별 단속현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	80	7	-	5	8	7	8	-	-	4	19	18	4
'00	62	2	1	7	3	21	5	-	-	4	1	18	-
'01	174	-	2	16	16	11	4	3	1	13	37	40	31
'02	175	13	14	30	20	15	4	1	14	3	17	22	22
'03	240	15	19	29	4	22	27	5	13	26	22	35	23
'04	443 (6)	8	10	71 (2)	67 (2)	34 (1)	8	3	3	24	95 (1)	84	36
'05	669 (85)	31	7	43	65	53	6	4	15	65	206 (10)	147 (55)	27 (20)
'06	549 (27)	20 (7)	54 (8)	64 (1)	50 (-)	45 (5)	13 (-)	4 (-)	16 (-)	54 (3)	113 (1)	49 (-)	67 (2)
'07	508 (14)	28 (-)	47 (2)	107 (4)	56 (2)	22 (-)	16 (-)	0 (-)	27 (-)	20 (-)	83 (3)	69 (3)	33 (-)
'08	446 (14)	32 (1)	23 (0)	48 (2)	33 (0)	18 (0)	2 (1)	2 (0)	4 (0)	25 (0)	67 (0)	109 (6)	83 (4)
'09	388 (7)	8 (0)	34 (1)	41 (1)	37 (0)	36 (0)	1 (0)	2 (0)	2 (0)	14 (0)	73 (1)	63 (1)	77 (3)

《 참고 3-7 》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2010년기준/단위 : 척, 톤)

업종 어종	계	꽂 치 봉수망	오징어 채낚기	대 형 기 저	중 형 기 저	선 망	연 승	외 줄 낚 시	복 어 채낚기	갈 치 채낚기	원 양 오징어	
총합 당량	'09	60,000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10	60,000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허가 척수	'09	940	22(5)	378	29(5)	20	165	237	35	45	8	1
	'10	900	22(5)	353	29(5)	20	165	222	35	45	8	1
꽂 치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전갱이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고등어류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정어리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8,750	금지	6,8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8,750	금지	6,8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1,1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10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1,1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10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참돔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갈치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기타	13,965	금지	1,680	452	1,797	5,415	3,461	270	828	57	5	
	13,965	금지	1,680	452	1,797	5,415	3,461	270	828	57	5	

(주) 꽂치봉수망의()는 부속선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대형기선저인망의()는 대형트롤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 참고 3-8 》

한국어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2010년기준/단위 : 척, 톤)

어종	업종	계	대중형	이서저	총합저	오징어	연승	예인조	가다랭	일본조	청새치	고정식
			선망어업	인망어업	인망어업	채낚기	어업	어업	이일본조	어업	돌붕어업	자망어업
총합 당량	'09	60,000	50,410	3,849	333	1,894	667	2,065	700	11	1	70
	'10	60,000	50,410	3,849	333	1,894	667	2,065	700	11	1	70
허가 척수	'09	940	162(130)	26(7)	54	140	103	410	29	7	1	8
	'10	900	162(130)	26(7)	54	133	95	385	29	7	1	8
전갱이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고등어류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정어리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참돔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갈치		50	목적채포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50	목적채포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붕장어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5,818	8,096	3,529	263	494	602	2,060	700	9	1	64
		15,818	8,096	3,529	263	494	602	2,060	700	9	1	64

(주) 대중형 선망()는 등선 67(탐색선 8척포함)척, 운반선 63척의 합계로 총척수에 포함
이서저인망의()는 트롤선 5척 및 운반선 2척의 합계척수로 총척수에 포함

《 참고 3-9 》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위반시기별

(단위 : 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9	30	27	15	20	19	21	14	10	11	23	13	16
'99	20	4	2	-	2	-	1	3	2	1	1	1	3
'00	22	2	2	1	1	-	2	2	2	2	5	1	2
'01	24	2	5	1	2	2	2	3	-	1	2	2	2
'02	32	3	6	2	3	5	2	2	1	2	3	1	2
'03	27	6	-	1	2	3	3	1	2	1	4	2	2
'04	19	3	4	2	-	-	4	1	-	-	2	2	1
'05	15	2	3	3	3	1	-	1	-	-	1	-	1
'06	10	2	1	-	-	2	1	1	1	1	-	-	1
'07	15	-	-	4	2	4	3	-	-	-	1	1	-
'08	18	4	2	1	4	1	2	-	-	2	1	-	1
'09.어기	17	2	2	-	1	1	1	-	2	1	3	3	1

※ '09년 어기는 '09.3.1~'10.2.28까지의 기간임

□ 업종별

(단위 : 척)

	계	소형 기저	연승	채낚기	통발	자망	중형 기저	대형 기저	선망	트롤	기타
계	219	21	87	46	27	9	6	7	10	2	4
'99	20	6	5	3	1	4	-	1	-	-	-
'00	22	2	3	6	5	1	3	1	1	-	-
'01	24	6	7	4	2	1	-	-	3	1	-
'02	32	2	9	10 (복어1)	2	1	2	-	3	-	3
'03	27	4	10 (외출1)	5	3	-	-	1	3	-	1
'04	19	1	10	4	-	1	1	1	-	1	-
'05	15	-	5	2	8 (홍게1)	-	-	-	-	-	-
'06	10	-	4 (외출1)	4	-	1	-	1	-	-	-
'07	15	-	7 (복합2)	1	5	-	-	2	-	-	-
'08	18	-	14	3	1	-	-	-	-	-	-
'09.어기	17	-	13	4	-	-	-	-	-	-	-

□ 위반사항별

(단위 : 척)

	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기 타
			금지구역	조업구역	어구위반	허가증미소지 및 조업일지부실기재 어창용적도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어획물 위 반	
계	219	47	23	18	10	96	7	-	18
'99	20	12	4	2	-	1	-	-	1
'00	22	4	7	2	3	2	-	-	4
'01	24	5	3	3	4	5	1	-	3
'02	32	4	1	2	-	23	1	-	1
'03	27	5 (영해1)	1	2	1	10	4	-	4
'04	19	3	2 (영해1)	1	-	11	-	-	2
'05	15	8 (영해2)	1	2	-	3	-	-	1
'06	10	1	1	1	-	7	-	-	-
'07	15	4 (영해4)	1	-	-	8	-	-	2
'08	18	1	2 (영해1)	1	-	14	-	-	-
'09.어기	17	-	-	2	2	12	1	-	-

◆ 일본어선 나포(협정이후) : 총15척('99년 4, '00년 1, '01년 3, '02년 : 1, '04 : 6)

□ 시·도별

(단위 : 척)

	계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강원	경북	전남
계	219	70	36	4	71	22	12	4
'99	20	9	8	-	2	1	-	-
'00	22	8	4	4	2	2	2	-
'01	24	11	4	-	4	4	1	-
'02	32	11	3	-	8	8	1	1
'03	27	10	3	-	10	2	1	1
'04	19	6	-	-	7	3	2	1
'05	15	1	8	-	5	-	1	-
'06	10	2	1	-	3	1	2	1
'07	15	3	5	-	6	-	1	-
'08	18	4	-	-	13	-	1	-
'09.어기	17	5	-	-	11	1	-	-

《 참고 3-10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 추진배경

-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10년간 119조원 투입) 발표와 병행한 수산분야 대책 ※ 법적근거 없음

□ 주요내용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및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실현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주요 정책과제

- 자율관리어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제 개선
- 위생관리강화 등 소비자지향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직접지불제 도입 등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 인력육성, 연구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다기능 어항개발 등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등

□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

-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 12.4조원
- 예산내역별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4	2005~2009						'10~'13	'04~'13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9,656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58,963	124,441
생산기반 조성	4,426	23,494	4,394	4,681	4,684	4,721	5,014	24,716	52,636
유통개선	1,153	7,537	1,307	1,575	1,538	1,670	1,447	6,825	15,515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369	2,180	433	444	418	438	447	2,429	4,978
부담경감 및소득보전	3,066	18,308	3,340	3,223	3,539	3,848	4,358	19,382	40,756
해양환경	617	3,199	655	603	623	650	668	3,864	7,680
수급안정 기타	25	1,104	47	60	179	285	533	1,747	2,876

《 참고 3-11 》

수산진흥종합대책(2010)

□ 추진배경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99 최초 수립)
- 수립근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

□ 주요내용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정부 규제·지원 ⇒ 어업인 자율·자립
 - 자원관리 획일적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 변화관리 소극적·방어형 ⇒ 적극적·공세형
- 중점추진과제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 수산진흥종합대책 투융자계획

- 5년간('10~'14) 총 투융자 규모 7조 1,233억원

(단위: 억원)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71,223	13,880	13,878	14,383	14,403	14,679

《 참고 3-12 》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07.4.2 타결)

□ 수산물 관세 양허안

- 수산물 관세 양허단계는 즉시,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으로 합의
- 경쟁력 유지가 가능 품목은 단계별(즉시, 3년, 5년, 10년) 이행기간 확보, 주요 민감품목은 12~15년의 유예기간 확보

* 냉동명태 : 15년(10년 현행+5년 감축, TRQ), 냉동민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넙치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 고등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 관세특례제도

- 조정관세는 관세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행관세로 인정하기로 합의
- 기존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도 존치하기로 합의

□ 수출용 활넙치 체장규제(22인치 이상 요구) 해제

- 수출용 활넙치가 양식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및 Tag 부착방식으로 체장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

□ 미국 어장 진출 및 어업투자 지분 확대

- 정례적으로 합동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개최하여 동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수협의 금융서비스 협정문 적용제외

-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사업은 FTA가 아닌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

* 단, 금융감독기관 지급여력기준은 준수하고 협정 발효일부터 3년간 유예

《 참고 3-13 》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07.6.28 발표)

-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병행
 - 향후 10년간(‘08~’17) 7,262억원 재정지원

□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실시

- 소득보전직불(지원기간 : 7년, 231억) : 사후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폐업지원(지원기간 : 5년, 534억)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

□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지원 병행(6,497억)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 10년, 541억) :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
 - 명태·민어(원양), 고등어·오징어(연근해), 넙치·볼락·뱀장어(양식)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유통설비 및 시설 현대화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5,956억)
 - 조건불리 지역,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등 수산보전제 신규 도입
 -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어업인 참여의 자율관리 확대, 신 성장 동력 육성 및 어촌 소득 기반 확충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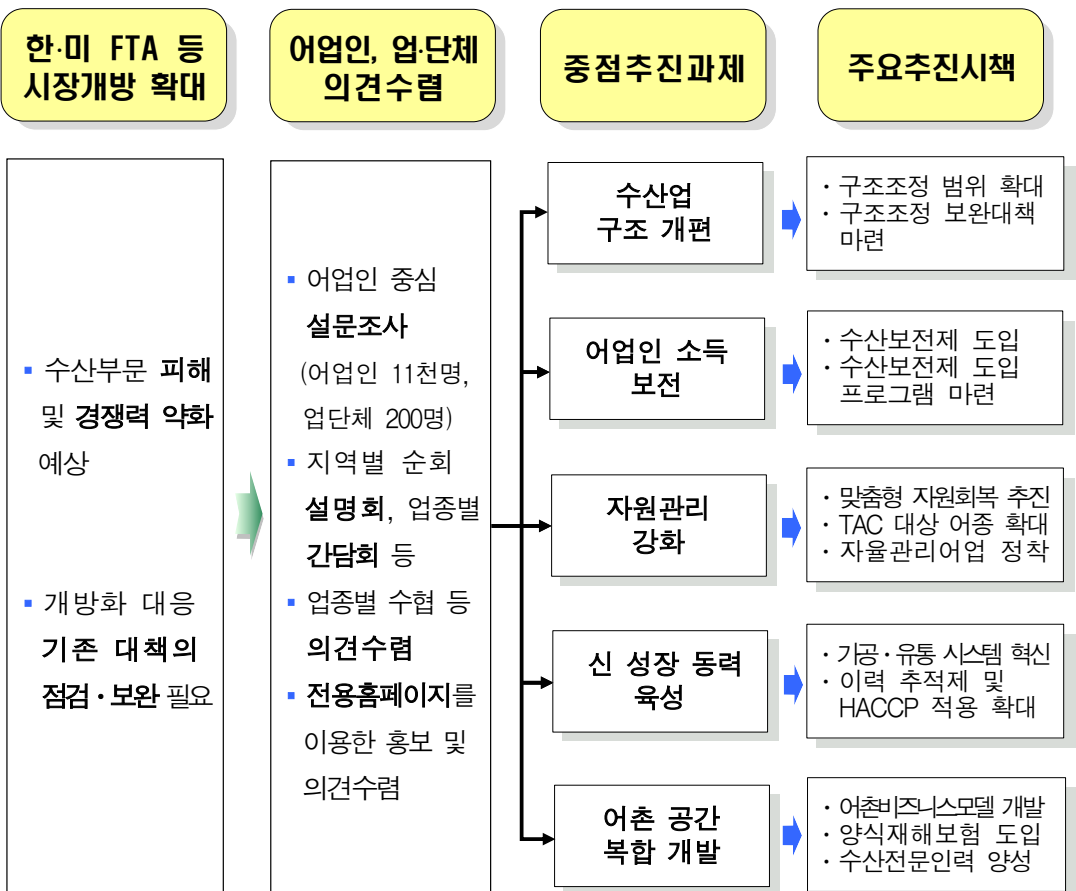
- 한미 FTA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08~’13년 투융자분은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투융자 규모 확대

《 참고 3-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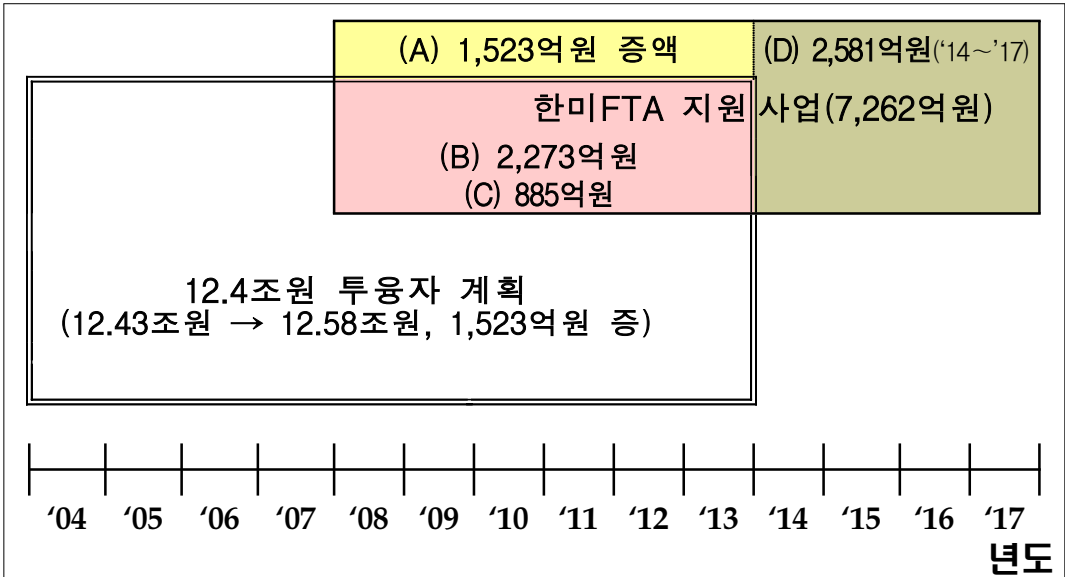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2007)

- 한·미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개방친화형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반영하여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수정·보완
 - 기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2004)」 편제를 개편하고 수산보전제 등 신규사업 14개를 발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폐지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수정 보완 방향



- '08~'13간 한·미 FTA 대책에 따른 총 소요는 4,681억원, 당초 투융자 대비 순증액은 2,408억원(2,273 → 4,681억원)
 - 순증액 2,408억원은 12.4조원 투융자 계획 자체 조정을 통해 88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523억원은 추가 확보하는 모습
- 12.4조원 투융자 계획은 투자실적 평가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한·미 FTA 대책소요 추가반영 등을 통해 12.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0.2조원 수준 증액



- * (A) 1,52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 증액 규모
- * (B) 2,27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 FTA 대책사업 규모
- * (C) 885억원 : '08~'13간 기존 12.4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 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 (D) 2,581억원 : 12.4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 (A)+(B)+(C)+(D) : 7,262억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 참고 3-15 》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04~'07			'08~'13			합계('04~'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41,812	41,812	-	82,522	84,045	1,523	124,334	125,857	1,523
수산업 구조개편	4,713	4,713	-	8,854	8,472	△382	13,567	13,185	△382
어업인 소득보전	10,685	10,685	-	15,534	18,615	3,081	26,219	29,300	3,081
자원관리 강화	8,480	8,480	-	19,832	17,414	△2,418	28,312	25,894	△2,418
신성장동력 육성	7,457	7,457	-	15,071	16,641	1,570	22,528	24,098	1,570
어촌공간 복합 개발	10,477	10,477	-	23,231	21,597	△1,634	33,708	32,074	△1,634
FTA 직접 피해지원	-	-	-	-	1,306	1,306	-	1,306	1,306

《 참고 3-16 》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계	726,226
보조 용자	672,526
	53,700
1. 수산발전기금	130,600
< 신규사업 >	130,600
□ 소득보전직불(보조)	23,100
□ 폐업지원(보조)	53,400
□ 품목별 경쟁력강화	54,100
- 관리회사제도 도입(용자)	20,2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24,000
- 활어운반선건조(용자)	6,000
-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용자)	3,500
- 활어 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지원(보조)	400
2. 기존회계	595,626
일반회계	245,094
농특회계	317,590
균특회계	7,866
기금일반	25,076
< 신규사업 >	266,98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일반, 보조)	221,779
□ 수산보전제	27,000
-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농특, 보조)	6,000
- 조건불리 지역보전제(농특, 보조)	21,000
□ 기타	18,206
- 수산업건설팅지원(농특, 보조)	2,54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농특, 보조)	10,000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균특, 보조)	2,966
-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위한 핵심전략연구(일반, 보조)	2,700
< 기존사업 증액 >	328,641
□ 총어획량 제도 운영(일반, 보조)	20,615
□ 수산물가공물류센터건립(농특, 보조)	9,000
□ 생분해성어구시험사업(농특, 보조)	28,60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농특, 보조)	135,100
□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기금, 보조)	25,076
□ 기타	110,250
-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건립(균특, 보조)	4,900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농특, 보조)	105,350

《 참고 3-17 》

도입 가능 수산 보전제

자원관리형 및 구조개선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휴어	휴어를 원하는 어업인에게 휴어기간 동안 소득 감소분 지원	휴어 및 휴어 조건을 합의한 어장의 어업인	휴어약정 체결 어장정화	'10년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예정)
고령 어가 은퇴	경쟁력 없는 어가의 은퇴경로 마련 및 노후생활 안정화	고령의 일정기간 이상 양식어업 종사자	은퇴를 조건으로 어업권 포기	'11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친환경 부표	친환경 부표사용할 경우 일반 부표 사용 가격 차이를 보조	친환경부표 사용 어업인	친환경 부표 사용	'09년	어장관리법
어장 휴식	휴식년 동안 감소 어업소득 일정분 지원	휴식 조건을 합의한 어장의 어업인	어장정화	'10년	어장관리법

다원적 기능형 수산 보전제

종류	추진방향	대상	어업인 의무	시행 연도	근거 규정
조건 불리 지역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여 탈어업을 방지하고 어촌사회를 유지	도서지역 어업인	마을 공동기금 조성 어장청소	'10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재해 예방	자연재해 사전예방으로 어업경영 안전 도모	일정거리 이상 피항 어선	재난구호	'10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우선도입 수산보전제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수산개발과)

○ 도입 필요성

- 조건불리지역의 어가소득 보전을 통한 지역·산업간 소득격차 해소로 어업인의 급속한 지역이탈 방지

○ 추진방향

- 8km 이상인 435개 도서 461개 어촌계 2만 7천어가를 대상으로 지급

○ 추진기간

- 도상연습계획(안) 마련 및 평가: '10년 중
- 세부시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11년
- 본사업 실시 : '12부터

□ 친환경부표 지급 수산보전제 (자원환경과)

○ 도입 필요성

- 저밀도 스티로폼 부자는 파도, 태풍 등으로 쉽게 손괴되어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대체 필요

○ 추진방향

-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는 양식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 지원

○ 추진기간

- 본사업 실시 : '09~

《 참고 3-19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산업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업에 안정적·체계적인 자금지원

□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시행령 제21조의2의제3호)
 - 수산업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내 타 사업과 혼용을 방지
 - * 수산업발전기금 : 한·일 어업협정 체결('99.1)로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제정('99.9)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추진현황

- '99. 12. 7 : 시행령 제정(이후 '07. 6. 29까지 총 8회 개정)
- '07. 2월 : 개정시안 마련
- '07. 3. 2~3. 15 : 관계부처 1차 협의
- '07. 7. 5~7. 27 : 관계부처 2차 협의
- '07. 7. 20~27 : 부패영향평가
- '07. 8. 3~8. 23 : 입법예고(관보)
- '07. 8. 24~9. 17 : 법제처 심사
- '07. 9. 20~9. 21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07. 10. 4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이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참고 3-2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농산물·수산물의 정의 신설

- 농산물·수산물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법 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정의 필요
-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

-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
- 지원사업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 추가
- 피해산정 기준·방식과 보조·융자사업 지원의 기준·절차·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여건변화에 따른 지원요건 등의 준비를 통하여 농어업 경쟁력 상승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가격의 하락기준”에서 “생산액의 감소기준”으로 변경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허용 지원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국제무역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개별적이 아닌 전체 체결국가를 기초로 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
- ※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

IV. 수산 통계

1. 어업별 생산량(총괄)	147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148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150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154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155
6. 수산물 수입 현황	156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159
8.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현황	160
9. 주요 품목별 일본 수출 현황	161
10. 업종별 어선현황	162
11. 수산종묘 방류량	162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163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163

1. 어업별 생산량 (총괄)

(단위 : 천톤, 억원)

	합 계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1	2,906	27,827	1,227	16,278	775	5,155	874	5,219	30	1,175
'92	3,201	29,965	1,207	17,366	935	6,024	1,025	5,326	34	1,249
'93	3,336	34,233	1,526	22,835	1,038	5,690	741	4,513	30	1,195
'94	3,477	39,395	1,486	25,206	1,072	7,206	887	5,569	31	1,414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96	3,248	39,963	1,624	27,351	875	6,433	719	4,926	30	1,253
'97	3,244	40,906	1,367	24,834	1,015	9,218	829	5,469	32	1,385
'98	2,835	43,884	1,308	22,936	777	9,503	723	10,009	27	1,436
'99	2,911	43,204	1,336	22,800	765	8,319	791	10,944	18	1,142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1	2,665	42,529	1,252	24,683	656	7,172	739	9,641	18	1,033
'02	2,476	42,052	1,096	24,870	782	7,945	580	8,094	19	1,143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1	27	2,231
'08	3,363	63,708	1,286	32,296	1,382	15,225	665	13,435	29	2,752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단위:MT/천원

시도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부산광역시	어 류	308,401	452,146,909
부산광역시	갑 각 류	1,078	3,192,776
부산광역시	패 류	10,107	32,391,440
부산광역시	연체동물	58,054	74,107,442
부산광역시	기타수산동물	1,498	4,937,269
부산광역시	해 조 류	45,363	23,131,264
대구광역시	어 류	486	2,520,226
인천광역시	어 류	9,744	39,706,782
인천광역시	갑 각 류	11,569	107,655,373
인천광역시	패 류	6,884	13,408,598
인천광역시	연체동물	2,036	17,588,645
인천광역시	기타수산동물	16	149,191
인천광역시	해 조 류	619	500,558
광주광역시	어 류	3	13,000
광주광역시	기타수산동물	0	2,250
대전광역시	어 류	12	84,430
울산광역시	어 류	9,470	33,390,588
울산광역시	갑 각 류	358	3,434,406
울산광역시	패 류	685	2,794,468
울산광역시	연체동물	4,578	11,261,228
울산광역시	기타수산동물	77	330,240
울산광역시	해 조 류	10,959	4,445,848
경 기 도	어 류	6,333	44,655,092
경 기 도	갑 각 류	2,232	21,520,878
경 기 도	패 류	6,494	10,415,450
경 기 도	연체동물	543	9,103,470
경 기 도	기타수산동물	0	255,539
경 기 도	해 조 류	9,302	6,085,251
강 원 도	어 류	20,287	77,713,996
강 원 도	갑 각 류	13,591	25,615,277
강 원 도	패 류	1,013	5,576,966
강 원 도	연체동물	26,319	74,044,076
강 원 도	기타수산동물	1,736	5,275,034
강 원 도	해 조 류	130	105,532
충청 북도	어 류	2,225	17,599,225
충청 북도	갑 각 류	10	176,197
충청 북도	패 류	218	1,920,345
충청 북도	기타수산동물	18	517,210

단위:MT/천원

시도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충청남도	어 류	35,281	104,262,437
충청남도	갑 각 류	7,680	70,098,393
충청남도	패 류	21,165	50,087,034
충청남도	연체동물	4,632	35,341,264
충청남도	기타수산동물	344	3,143,597
충청남도	해 조 류	19,354	13,036,355
전라북도	어 류	25,794	97,357,430
전라북도	갑 각 류	4,367	28,646,153
전라북도	패 류	16,962	30,555,996
전라북도	연체동물	1,700	10,496,634
전라북도	기타수산동물	179	2,253,332
전라북도	해 조 류	34,218	20,936,099
전라남도	어 류	167,942	669,378,761
전라남도	갑 각 류	27,103	113,480,893
전라남도	패 류	58,264	238,728,745
전라남도	연체동물	12,330	154,261,453
전라남도	기타수산동물	534	4,641,734
전라남도	해 조 류	794,068	264,650,006
경상북도	어 류	59,436	142,248,460
경상북도	갑 각 류	18,414	64,093,511
경상북도	패 류	1,216	6,203,091
경상북도	연체동물	95,009	157,501,521
경상북도	기타수산동물	2,320	6,260,530
경상북도	해 조 류	1,191	1,356,735
경상남도	어 류	263,108	742,066,095
경상남도	갑 각 류	3,442	17,978,551
경상남도	패 류	303,211	152,512,619
경상남도	연체동물	9,112	45,527,874
경상남도	기타수산동물	14,046	30,933,259
경상남도	해 조 류	11,446	9,449,928
제 주 도	어 류	94,175	566,821,620
제 주 도	갑 각 류	858	1,863,007
제 주 도	패 류	2,972	17,124,960
제 주 도	연체동물	1,990	8,608,897
제 주 도	기타수산동물	2,535	11,326,863
제 주 도	해 조 류	8,240	6,566,911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수출현황

○ 품목별

(단위 : 톤, 천\$,%)

구 분	'07		'08		'09		'09/'0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36,009	1,225,832	613,823	1,454,635	652,214	1,511,230	106.3	103.9
활 어	5,281	62,965	5,961	64,516	6,686	71,624	112.2	111.0
신선·냉장	18,896	111,870	27,139	151,525	30,744	174,345	113.3	115.1
냉 동	419,623	741,135	462,341	873,682	499,151	897,662	107.9	102.7
기 타	92,209	309,862	118,382	364,912	115,633	367,599	97.7	100.7

○ 국가별

(단위 : 천\$, %)

구 분	'06	'07	'08	'09	'09/'08
합 계	1,088,948	1,225,832	1,454,635	1,511,230	103.9
일 본	659,523	572,908	687,471	734,134	106.8
중 국	75,414	156,565	193,461	145,711	75.3
태 국	61,688	87,678	122,943	127,733	103.9
미 국	95,613	98,876	114,779	128,885	112.3
뉴 질 랜드	39,383	68,293	60,623	70,461	116.2
스 페 인	28,167	58,655	40,474	41,437	102.4
이 탈 리 아	11,620	25,346	25,247	23,231	92.0
베 트 남	5,194	8,812	19,320	22,407	116.0
대 만	18,453	17,540	18,734	18,208	97.2
멕시코	6,834	6,336	11,937	1,353	11.3
필 리 핀	2,624	12,594	11,874	18,957	159.7
인도네시아	6,466	9,011	11,080	13,551	122.3
홍 콩	12,514	11,331	9,546	12,963	135.8
프 랑 스	2,480	3,427	9,268	13,731	148.2
기 타	62,975	88,460	117,878	138,468	117.5

○ 어종별

(단위 : 천\$, %)

구 분	'06	'07	'08	'09	'08/'07
합 계	1,088,948	1,225,832	1,454,635	1,511,230	103.9
참 치	227,964	275,153	293,189	314,373	107.2
오 징 어	47,399	123,768	126,536	108,052	85.4
김	61,730	59,728	75,313	81,507	108.2
굴	55,508	40,145	46,260	42,247	91.3
삼 치	15,535	26,869	45,464	45,361	99.8
붕 장 어	43,009	37,938	44,168	39,382	89.2
계 살	36,210	32,275	43,484	41,986	96.6
넙 치	51,969	44,154	43,369	51,812	119.5
툫	23,773	24,525	36,379	28,904	79.5
고 등 어	7,308	14,107	30,432	38,097	125.2
전 갱 이	11,035	12,946	29,242	21,117	72.2
전 복	17,123	15,040	20,997	33,751	160.7
명 태	6,975	12,353	20,860	14,387	70.0
미 역	21,761	17,667	20,584	16,811	81.7
바 지 락	17,766	12,662	19,219	34,763	180.9
캐 비 아	44,019	13,097	16,691	24,526	146.9
새 꼬 리 민 태	9,565	13,281	16,689	13,967	83.7
이 빨 고 기	11,653	13,471	15,808	23,437	148.3
피 조 개	14,379	13,998	15,103	11,832	78.3
뚝	10,940	21,250	14,155	17,551	124.0
기 타	353,327	401,405	480,693	507,367	105.5

○ 총수출 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06	'07	'08	'09	'09/'08
총 수 출	325,465	371,489	419,083	361,200	86.2
수 산 물	1,089	1,226	1,455	1,511	103.8
구 성 비	(0.3)	(0.3)	(0.3)	(0.4)	-

□ 수입현황

○ 품목별

(단위 : 톤, 천\$, %)

구 분	'07		'08		'09		'09/'0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391,506	3,056,368	4,186,512	3,097,450	4,080,425	2,895,495	97.5	93.5
활 어	44,384	224,675	42,164	285,320	31,635	171,377	75.0	60.1
신선·냉장	142,379	408,278	103,616	313,504	99,298	284,904	95.8	90.9
냉 동	1,007,531	1,872,942	821,677	1,827,640	850,294	1,788,739	103.5	97.9
기 타	197,212	550,473	3,219,055	670,986	3,099,198	650,475	96.3	96.9

○ 국가별

(단위 : 천\$, %)

구 분	'06	'07	'08	'09	'09/'08
합 계	2,769,348	3,056,368	3,097,450	2,895,495	93.5
중 국	1,034,192	1,070,862	1,018,678	854,256	83.9
러 시 아	347,079	423,392	384,434	435,573	113.3
베 트 남	206,482	267,964	305,841	305,151	99.8
일 본	224,311	273,477	224,990	195,063	86.7
미 국	150,544	144,242	140,273	123,453	88.0
태 국	144,463	149,270	113,910	85,141	74.7
대 만	85,698	83,342	85,479	88,136	103.1
칠 레	83,513	80,050	77,269	81,407	105.4
인도네시아	35,645	55,280	76,445	67,470	88.3
홍 콩	12,194	14,854	55,186	15,867	28.8
노르웨이	41,609	61,615	53,401	69,571	130.3
카나다	50,157	52,544	46,431	47,045	101.3
페 루	36,977	37,416	46,316	40,259	86.9
말레이시아	7,061	12,994	25,663	32,871	128.1
아르헨티나	22,217	28,915	23,989	21,693	90.4
기 타	287,206	300,151	419,145	432,539	103.2

○ 어종별

(단위 : 천\$, %)

구 분	'06	'07	'08	'09	'09/'08
합 계	2,769,348	3,056,368	3,097,450	2,895,495	93.5
명 태	289,204	363,836	326,488	330,383	101.1
새 우	219,122	246,759	211,255	188,273	89.1
조 기	147,873	164,644	143,654	110,780	77.1
낙 지	82,072	125,526	128,506	118,480	92.2
참 치	60,455	93,633	115,294	111,307	96.5
갈 치	102,892	109,767	89,813	98,202	109.3
새 우 살	60,496	83,003	87,033	94,293	108.3
오 징 어	85,971	86,192	75,751	62,822	82.9
아 귀	72,062	77,425	74,740	57,597	77.1
돔	57,941	58,464	66,558	50,008	75.1
꽃 계	82,359	82,249	66,222	54,269	82.0
연 어	56,853	71,509	63,693	67,317	105.6
주 꾸 미	33,710	47,846	56,456	62,497	110.7
실 장 어	17,178	20,647	54,452	13,885	25.5
어 란	79,405	70,231	49,811	63,429	127.3
계	49,068	49,033	39,243	41,791	106.5
취 치	34,778	38,113	37,963	41,912	110.4
농 어	28,538	36,588	36,663	23,871	65.1
뽕 치	37,938	36,509	36,517	46,198	126.5
골 뱅 이	32,756	36,283	35,042	32,699	92.4
기 타	1,138,677	1,158,111	1,302,296	1,225,482	94.1

○ 총수입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06	'07	'08	'09	'09/'08
총 수 입	309,383	356,846	435,275	323,085	74.2
수 산 물	2,769	3,056	2,954	2,895	93.5
구 성 비	(0.9)	(0.9)	(0.6)	(0.9)	-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단위 : 천\$, %)

구 분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60	32,827	5,755	17.5
'70	835,185	82,324	9.9
'80	17,504,862	759,524	4.3
'90	65,015,731	1,513,094	2.3
'95	125,057,988	1,721,748	1.4
'97	136,164,204	1,492,588	1.1
'98	132,313,143	1,369,014	1.0
'99	143,685,459	1,520,534	1.1
'00	172,267,510	1,504,470	0.9
'01	150,439,144	1,273,619	0.8
'02	162,470,528	1,160,435	0.7
'03	193,817,443	1,129,385	0.6
'04	253,844,672	1,278,638	0.5
'05	284,418,743	1,193,117	0.4
'06	325,464,848	1,088,948	0.3
'07	371,489,086	1,225,832	0.3
'08	419,083,091	1,446,568	0.3
'09	361,199,736	1,511,230	0.4

수산물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까지 15억\$ 내외 수출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09년도 수산물 수출은 15억 1천만\$로 전체 수출액 3,612억\$ 중 0.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4.5%의 증가를 보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첨단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액도 수산업 여건의 악화와 국제무역질서 재편의 영향을 받아 2001년 이후 11~15억\$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음.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단위 : 천\$, %)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80	22,291,663	37,284	0.2
'85	31,135,655	83,229	0.3
'90	69,843,678	368,095	0.5
'95	135,119,933	842,808	0.6
'97	144,616,374	1,045,474	0.7
'98	93,281,754	587,481	0.6
'99	119,752,282	1,178,968	1.0
'00	160,481,018	1,410,598	0.9
'01	141,097,821	1,648,372	1.2
'02	152,126,153	1,884,417	1.2
'03	178,826,657	1,961,145	1.1
'04	224,462,687	2,261,356	1.0
'05	261,238,264	2,383,574	0.9
'06	309,382,632	2,769,348	0.9
'07	356,845,733	3,056,368	0.9
'08	435,274,737	3,097,450	0.7
'09	323,084,521	2,895,495	0.9

수산물 수입은 1999년 12억\$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도는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수입단가가 높아져 전년보다 6.5% 수입이 감소하여 약 29억\$의 수입을 기록하였음.

6. 수산물 수입 현황

□ 연도별 주요 국가별

(단위 : 천\$)

	계	중 국	러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기 타
'94	726,267	111,831	176,275	15,074	42,323	135,489	245,275
'95	842,808	128,874	209,928	14,660	46,053	143,814	299,479
'96	1,080,457	217,354	213,727	12,906	58,875	175,902	678,764
'97	1,045,474	271,543	176,108	18,306	71,650	130,163	667,770
'98	587,481	197,120	106,178	11,446	37,637	83,977	436,358
'99	1,178,968	413,270	205,033	39,549	107,206	129,816	894,874
'00	1,410,598	486,841	125,031	72,240	185,109	145,366	1,014,587
'01	1,648,372	634,449	153,756	101,486	139,129	158,520	1,187,340
'02	1,884,417	719,314	215,638	121,733	146,497	173,774	1,376,956
'03	1,961,145	713,538	299,252	129,878	148,699	152,677	517,101
'04	2,261,356	909,536	276,783	143,524	180,620	136,225	614,668
'05	2,383,574	936,351	277,216	163,642	173,140	152,555	680,670
'06	2,769,348	1,034,192	347,079	206,482	224,311	150,544	806,740
'07	3,056,368	1,070,862	423,392	267,964	273,477	144,242	876,431
'08	3,097,450	1,018,678	384,434	305,841	224,990	140,273	1,023,234
'09	2,895,495	854,256	435,537	305,151	195,063	123,453	982,035

우리나라의 2009년도 수산물 수입 대상 국가는 100여개 국가로 이중 연간 1억불이상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 중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제품별 수입

(단위 : 천\$)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염수장	밀폐용기	기타
'94	726,267	23,919	36,054	541,693	445	908	22,683	12,672	87,893
'95	842,808	28,575	48,307	592,373	659	3,076	22,652	16,506	130,660
'96	1,080,457	46,425	64,082	734,030	486	9,272	29,393	2,104	194,665
'97	1,045,474	43,231	65,431	717,062	687	10,045	29,631	1,698	177,689
'98	587,481	21,351	25,427	431,353	562	9,944	14,028	1,401	83,415
'99	1,178,968	73,327	70,795	859,932	1,495	20,681	22,308	1,276	129,154
'00	1,410,598	118,592	117,739	928,040	2,333	46,252	21,670	3,073	172,899
'01	1,648,372	132,325	149,743	1,110,844	1,961	50,694	22,607	6,128	174,070
'02	1,884,417	152,662	241,611	1,207,193	2,596	55,345	25,861	5,330	190,819
'03	1,961,145	159,029	270,779	1,239,212	2,183	43,663	26,850	8,768	210,661
'04	2,261,356	201,175	318,305	1,337,986	2,124	73,604	30,669	13,211	284,282
'05	2,383,574	176,449	330,782	1,406,323	2,761	87,579	31,002	13,925	334,753
'06	2,769,348	197,501	374,837	1,660,663	1,848	97,168	35,268	13,158	387,692
'07	3,056,368	224,675	408,278	1,872,942	3,953	92,352	32,737	18,512	402,919
'08	3,097,450	285,320	313,504	1,827,640	3,464	77,231	29,392	17,660	543,240
'09	2,895,495	171,377	284,904	1,788,739	3,451	64,275	25,563	8,442	548,744

제품별 수산물 수입은 냉동품, 냉장품, 활어, 건조품의 순이며 전체 제품별 수산물 중 냉동품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품의 수입규모는 증가추세임

□ 연도별 주요 품종별 수입

(2009년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04	'05	'06	'07	'08	'09
합 계	2,261,356	2,383,574	2,769,348	3,056,368	2,954,008	2,895,495
명 태	274,119	277,687	289,204	363,836	326,488	330,383
새 우	159,014	167,451	219,122	246,759	211,255	188,273
조 기	130,173	142,713	147,873	164,644	143,654	110,780
낙 지	63,278	67,029	82,072	125,526	128,506	118,480
참 치	34,349	48,333	60,455	93,633	115,294	111,307
갈 치	101,903	100,306	102,892	109,767	89,813	98,202
새 우 살	43,412	46,553	60,496	83,003	87,033	94,293
오 징 어	48,916	64,144	85,971	86,192	75,751	62,822
아 귀	52,504	60,101	72,062	77,425	74,740	57,597
뚝	37,700	41,666	57,941	58,464	66,558	50,008
꽃 계	89,928	67,717	82,359	82,249	66,222	54,269
연 어	27,204	36,000	56,853	71,509	63,693	67,317
주 꾸 미	23,551	28,290	33,710	47,846	56,456	62,497
실 장 어	19,126	29,282	17,178	20,647	54,452	13,885
어 란	76,887	53,749	79,405	70,231	49,811	63,429
소 금	-	-	-	-	139,830	178,199
기 타	1,079,292	1,152,553	1,321,755	1,354,637	1,347,894	1,233,754

2009년도는 새우, 조기, 낙지, 실장어 등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갈치와 새우살 품종은 전년 대비 각각 9%, 8% 증가하였음.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04		'05		'06		'07		'08		'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1,279	2,261	1,193	2,384	1,089	2,769	1,226	3,056	1,447	3,097	1,511	2,895
일 본	835	181	741	173	660	224	573	273	685	225	734	195
중 국	124	910	108	936	75	1,034	157	1,071	190	1,019	146	854
태 국	38	107	57	125	62	144	88	149	123	114	128	85
미 국	81	136	88	153	96	151	99	144	114	140	129	123
뉴질랜드	45	12	60	17	39	18	68	19	61	17	70	18
베트남	5	144	5	164	5	286	9	268	19	306	22	305

전체수입은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나 대중성 냉동 수산물 및 횡감용 활어는 국민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임

8. 주요 품종별 중국 수입 현황

(2009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04	'05	'06	'07	'08	'09
합 계	909,536	936,351	1,034,192	1,070,863	1,018,678	854,256
조 기	129,637	142,343	147,616	164,512	141,267	110,727
낙 지	53,277	56,387	68,302	104,522	109,279	103,802
아 귀	23,769	29,766	46,872	59,933	58,977	45,268
꽃 계	68,348	53,812	67,570	67,660	55,174	40,547
갈 치	56,012	53,733	49,201	49,907	47,284	64,184
새 우	45,708	48,610	67,183	60,107	36,936	32,808
새 우 살	22,172	23,827	30,464	37,232	34,741	31,744
농 어	34,049	20,632	26,883	30,358	32,882	23,374
복 어	21,006	24,997	29,068	34,482	30,066	24,980
미 꾸 라 지	13,972	11,206	18,896	24,436	29,716	32,438
뱀 장 어	25,664	10,742	11,368	3,788	21,673	2,209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장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0%를 차지하며 매년 수입이 증가하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1% 감소

2008년도 대비 갈치, 미꾸라지 등의 수입이 증가

9. 주요 품종별 일본 수출 현황

(단위 : 천\$)

	'04	'05	'06	'07	'08	'09
합 계	834,649	741,062	659,523	572,908	687,471	734,134
참 치	219,255	169,432	153,122	139,533	118,629	137,672
붕 장 어	51,271	48,178	42,137	37,174	43,174	38,489
넙 치	54,609	61,699	50,386	41,419	40,875	45,341
계 살	39,592	33,928	29,819	26,039	34,664	32,994
툃	29,863	23,217	23,278	23,327	33,906	27,739
삼 치	15,890	18,209	12,412	15,119	27,013	29,431
전 복	3,358	8,976	16,526	14,973	20,973	33,591
전 경 이	14,810	9,913	7,866	7,202	18,778	6,604
김	17,374	17,517	17,112	15,462	17,685	25,028
굴	39,842	31,136	24,901	14,144	17,441	15,764
바 지 락	21,518	15,352	13,661	7,511	16,859	31,194
피 조 개	19,396	18,885	14,352	13,368	15,042	11,782
캐 비 아	45,986	55,196	41,496	10,323	13,835	22,554
미 역	29,333	20,043	14,321	10,952	11,548	11,237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49%(2009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국가임.

2000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이상 수출해 왔으나, 중국, 동남아국가 등의 시장 잠식으로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감소 추세(2000년도 7.21% → 2005년도 4.98%)이며, 2009년도에는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약 7.3억\$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6.8% 증가
대 일본 주요 수출품종은 참치 및 붕장어가 전체 수산물 수출품목 중 19%, 5%를 차지

10. 업종별 어선현황

(단위 : 척)

구분	'06			'07		
	계	동력	무동력	계	동력	무동력
합 계	86,113	83,358	2,755	85,627	82,724	2,903
원양 어업	483	483	-	470	470	-
근해 어업	3,629	3,629	-	3,504	3,504	-
연안 어업	59,889	58,390	1,499	59,536	57,802	1,734
양식 어업	16,337	16,049	288	16,357	16,111	246
내수면 어업	4,150	3,549	601	4,010	3,467	543
기 타	1,625	1,258	367	1,750	1,370	380

11. 수산종묘 방류량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방류량	92,294	128,359	84,454	90,859
사업비	8,988	10,779	16,038	16,391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단위 : 건, ha)

	'07		'0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2,742	258,741	12,992	262,357
해 조 류	2,425	76,183	2,603	79,504
패 류	5,577	49,261	5,586	49,169
어 류	1,350	6,972	1,366	7,410
마 을 어 업	2,835	118,675	2,897	118,683
정 치 망 어 업	555	7,650	540	7,591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단위 : 건, ha)

구 분	'07		'0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804	4,800	3,764	4,647
해상종묘	878	2,930	867	2,870
육상종묘	1,253	135	1,273	136
육상양식	1,673	1,735	1,624	1,641

V. 소 관 법 령

1. 원양산업발전법	167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186
3. 원양산업발전 시행규칙	197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15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5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9
7. 신어장개발사업자금지원요령	243
8.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248
9.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255
10. 국제수산물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259
11.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263
12.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272
13.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276
14.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286
15.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295
16.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310
17.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319
18.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321
19.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327
20.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333

21.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338
2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343
23.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354
2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358
2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80
2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92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2007. 8. 3.	법률 제 8626호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9. 4.22	법률 제 9627호
일부개정	2010. 3.17	법률 제101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

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닐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轉載)·공동조업·지원·

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제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揚陸)·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

런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보조 및 용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

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626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7호,2009.4.22>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 <제1012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 정 2008. 1.31. 대통령령 제20587호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원양산업

제7조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어선의 선명·톤수·길이·너비 및 깊이
4. 기관의 마력

제8조 (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제9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화재·폐기·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12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 (보조 및 용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하려면 그 규모·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 칙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9조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의 보고에 관한 사항(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의 수리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제20조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제5장 과태료

-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축산물, 수산물"을 "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59> 까지 생략

별표1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 정 2008. 2. 4.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8. 2.29 농림수산물부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양어업

제1절 원양산업의 허가 등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세 종류까지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제5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入漁)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

제6조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7조 (양륙항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8조 (조업해역 등의 구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원양어업 폐지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지등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업수역의 여건 등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류 개시일과 계류항을 변경하여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휴업기간의 연장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양어업 개시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2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어선에 설치할 것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할 것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증명서 등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항만국검색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轉載)를 금지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적인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 (양륙량 등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일시·장소·위반사항·위반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1항에 따른 양륙량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8조 (연구어업·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

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제2절 국제협력

제29조 (명예수산관의 자격 등 <개정 2008.3.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명예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31조 (수수료)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 : 건당 4천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승인 신청 : 건당 2천원

제3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

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이의제기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408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II. 개별기준 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

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
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
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
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4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제2
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
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제3항, 제17

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3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1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4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서식1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서식2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

서식3 원양어업허가증

서식4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서식5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서식6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서식7 해외함직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서

서식8 해외함직원양어업 신고필증

서식9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

서식10 경 고 장

서식11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서식12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서식13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서식14 원양어업 휴업신고서

서식15 원양어업 휴업연장신고서

서식16 원양어업 개시신고서

서식17 항만국검색관 신분증명서(제23조제4항 관련)

서식18 원양어업 허가대장

서식19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서식20 시험어업 신청서

서식21 명예해양수산물관증(제29조제4항 관련)

서식22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방법, 감액·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잡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실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

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 삭제 <2010.3.17>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27호, 2009. 4.22>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19호, 2010. 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어업교섭과)02-500-2420~2421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7>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3.27>

제3조(어업등의 허가사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척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07.3.27]

제4조(입어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④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08.2.29>

⑤입어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입어료의 감액·면제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허가·승인의 취소요구등)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

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반선박등의 나포·억류 통보)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정도, 위반횟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

의 다음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연월일
2. 담보금의 액수
3. 담보금의 납부사유
4. 국고귀속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
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부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수산업법」 제86조"를 "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제2조 (허가신청절차)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항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개시하고자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국정부는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항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조 (공동신청) 외국인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어업활동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5조 (허가증의 교부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어업활동허가현황 및 입어료부과내역서
 2. 입어료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되, 그 내용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

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1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등을 교부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입어료납부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조 (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표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 (표시기의 게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에 의한 표시기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경제수역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선명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어획량의 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5.4>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 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수수료)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 : 3만원
2. 총톤수 100톤이상 1천톤미만의 선박 : 5만원
3.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 10만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제18조 (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3>

제19조 (어획물의 전적금지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제20조 (어획물의 직접양륙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 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선박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본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승인을 얻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행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외국인에게 직접 교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4조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25조 (행정처분상황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및 도지사(충청북도 지사를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 (행정처분상황의 기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정선명령) ①검사 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기타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②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결과보고)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

여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0조 (준용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시험·연구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허가"는 "시험·연구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부 칙 <제43호,1998.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호,1999.8.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 칙 <제277호,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9호,200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 1] 어업활동허가번호및시험·연구승인번호의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1조관련)

[별표 2] 허가어업의종류,허가선박의규모및부속선의허용기준등[제14조관련]

[별표 3] 어업활동허가또는시험·연구승인을하는경우에붙이는제한또는조건[제18조관련]

[별표 4]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제22조관련]

[서식 1] 어업허가신청서

[서식 2] 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신청서

[서식 3] 어업활동등의허가·승인신청서집계표

[서식 4] 어업활동허가현황및입어료부과내역서

[서식 5] 어업활동허가대장

[서식 6]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허가증

[서식 7]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증

[서식 8] 입어료납부내역서

[서식 9] 허가증·승인증재교부신청서

[서식 10]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서

[서식 11]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증

[서식 12] 시험·연구승인신청서

[서식 13] 시험·연구승인대장

[서식 14]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시험·연구등의승인증

[서식 15] 위반조서

[서식 16] 허가·승인사항에대한행정처분요구서

[서식 17] 행정처분통지서

[서식 18]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

[서식 19] 승선조사결과보고서

[서식 20]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

[서식 21]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정지명령서

[서식 22] 어획실적보고서

[별도 1] 어업활동허가번호판 또는 시험·연구승인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별도 2] 표시기의 규격 및 재질

원양협력관실 행정규칙

연번	구분	행정규칙명	고시(훈령) 번호	발령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비고
1	훈령	신어장개발사업자금지원요령	제90호	1998.1.14	원양정책과	
1	예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5호	2008.7.16	원양정책과	
1	고시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1997-70	1997.7.22	원양정책과	
2	고시	국제수산물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고시	2002-35	2002.5.1	원양정책과	
3	고시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2004-8	2004.1.27	국제기구과	
4	고시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2005-48	2005.7.27	원양정책과	
5	고시	관세유탄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 관리요령	2008-4	2008.4.7	원양정책과	
6	고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2008-6	2008.4.7	원양정책과	
7	고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2008-24	2008.6.10	원양정책과	
8	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2008-36	2008.7.4	어업교섭과	
9	고시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2008-38	2008.7.3	원양정책과	
10	고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008-39	2008.7.3	원양정책과	
11	고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2008-49	2008.8.5	원양정책과	
12	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2008-68	2008.8.13	원양정책과	
13	고시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 취급요령	2008-70	2008.8.18	원양정책과	
14	고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유탄물량의 협정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2008-71	2008.8.22	원양정책과	
15	고시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2009-27	2009.4.27	원양정책과	
16	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2009-50	2009.6.17	원양정책과	
17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간 어업협정	1477호		어업교섭과	
18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간 어업협정	1567호		어업교섭과	

신어장개발사업자금지원요령

제정 1995.12.30. 수산청훈령 제651호
개정 1998. 1.14. 해양수산부훈령 제9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어장·어법 및 자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어장 개발 사업"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박이 최근 수년간 조업한 사실이 없거나, 미개발된 수역에 시험적인 조업 등을 통하여 상업적인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장·어법 및 자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거나 보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신어장 개발사업을 하고자 이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이하 "원협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신어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구비 또는 보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운영 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선박의 구입 또는 개조비
 - 나. 기관의 대체,보강 수리비
 - 다. 냉동기의 대체,보강,수리비
 - 라. 어구의 구입 또는 개조비
 - 마. 기타 시설성 경비로서 원협회장이 인정하는 것
4. "융자금"이라 함은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원협회장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 신어장개발사업지원자금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확보된 재정자금과 이미 대출된 자금의 회수자금으로 한다.

제4조(용자기관) ① 이 요령에 의한 용자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수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용자조건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협회장이 신어장개발 사업지원자금을 용자하고자 할 때에는 원협회장의 세부사업 계획 확정통보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초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지원자금의 총액을 원협회장에게 통보한다.

② 원협회장은 전항의 지원자금 총액을 통보받는 즉시 이를 원양업체에 알리고, 신어장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자 선정) ① 신어장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원협회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붙임서식 1
2. 사업계획서 : 붙임서식 2
3. 기타 원협회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원협회장이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적합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회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어장 개발의 필요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자의 신용도
4. 기타 원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세부사업계획의 확정)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1개월이내에 신어장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신어장 개발에 필요한 전체적인 자금소요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

③ 원협회장은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후 다음사항을 충족한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며 시행된 사업의 사업비 소요에 대한 정산과 아울러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가. 신어장 개발계획과 사업계획과의 합치성

나.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

다. 신청된 용자금액의 지원 가능성

라. 제14조에 의해 원협회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

④ 제3항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확정에는 사업자가 수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용자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원협회장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그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세부사업계획서 첨부)하고, 수협회장 및 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 ① 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협회장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 확정 내역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역상의 신어장개발사업 지원자금(용자금)에 대하여 수협회장에게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협회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협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사업계획 확정내역상의 용자금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용자 하여야 한다.

③ 수협회장은 사업자가 여신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로 확정된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용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된 용자금액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원협회장 및 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용자금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허가정지 45일이상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2. 원양어업자가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원협회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하는 어업자 또는 선박

제10조(용자금의 회수) ① 수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용자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3.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자가 신어장개발을 포기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으로 원협회장이 용자금의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사후관리) 수협회장은 이 요령에 의한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원협회장은 사업자가 확정받은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수협회장은 이 요령에 의한 용자금의 대출 및 회수 등 집행실적이 있을 때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원협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협회장에게 사업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착수 보고를 하고 이후 매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는 15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원협회장은 즉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별도계획 수립) ① 원협회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신어장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획에는 사업자 선정신청이 경합될 경우의 선정방법 및 사업비 지원액 분배에 관한 기준 그리고 기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추진 불가시 대체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정 2008. 7.16.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5호

제1조(목적)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 이하 “선주”라 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시 적용되는 「대법원의 등기에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또는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제4조(확인서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의 입항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1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 _____		용 도	외국선박 취득 소유권 보존등기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제출처	○○지방법원
1. 신청인(선박소유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공급자(직전 소유자)			
상 호		국 적	
주 소			
3. 선박의 제원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IMO NO	
선박의종류		선 적 항	
선 질		총 톤 수	
허가(등록) 번 호		허가기간	
운항(조업) 구 역		사업의 종류	
4. 미수입 사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1부			없 음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 및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1부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 수입신고 이행 각서 1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 _____		용도	외국선박 취득 소유권 보존등기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제출처	○○ 지방법원
1. 신청인(선박소유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공급자(직전 소유자)			
상 호		국 적	
주 소			
3. 선박의 제원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IMO NO.	
선박의종류		선 적 항	
선 질		총 톤 수	
허가(등록) 변 호		허가기간	
운항(조업) 구 역		사업의 종류	
4. 미수입 사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 주의사항			
1. 위의 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으로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2.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1)

사 업 자 선 정 신 청 서

1. 사업자 :
2. 사업개요 <input type="checkbox"/> 사용선박 : <input type="checkbox"/> 개발대상 해역(어장) : <input type="checkbox"/> 대상자원 : <input type="checkbox"/> 어구.어업 : <input type="checkbox"/> 예상수익 :
3. 사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총소요경비 :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 * 사업내용 :
4. 용자신청금액 : (사업비의 %)
5. 사업기간 :
위와 같이 신어장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 19 . . .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 (인) <input type="checkbox"/> 주 소 :
원 양 어 업 협 회 장 귀 하

(별표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개요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사업자선정 신청일 현재)

5. 세부추진계획

6. 사업완료후 예상효과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

제정 1997. 7.22.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7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황다랭이의 수입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출입별도공고 별표 6에 게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황다랭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적용한다.

제3조(수입확인의 담당기관) 이 요령에 의한 수입확인의 담당기관은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장으로 한다.

제4조(확인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류 접수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
(예시 : 별지 서식 1호)

제5조(확인요령) 지소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랭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확인의 처리기간)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수입신고서의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후관리) 지소장은 수입확인 신청내용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1997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예시 : 제1호 서식)

○○○○○○← 수출국가 기관명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o 발행번호 : o 발행일 :

(No) (Date)

황다랭이 원산지증명서

(Yellowfin Tuna Product Origin Certificate)

1. 수출회사 성명 또는 상호 :

(Exporting Company Name)

주 소 :

(Address)

2. 제품형태 :

(Product Type)

3. 수 량 :

4. 어획수역 :

(Area Fished)

5. 어획어구 :

(Gear Type)

위 기재사항은 완전하고 정확함을 확인 함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mplete)

19 년 월 일

(Date)

발행기관 :

(Issuing Authority)

확인자 직위 : 성명 : (안)

(Officer Name, Position)

황다랭이 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

황다랭이수입확인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7-70호, '97. 7.22)

제2조에 의한 황다랭이 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황다랭이 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국가

1. 브라질
2. 콜롬비아
3. 코스타리카
4. 사이프러스
5. 에쿠아돌
6. 마이크로네시아
7. 혼두라스
8. 라이베리아
9. 멕시코
10. 파나마
11. 스페인
12. 바누아투
13. 베네쥬엘라
14. 벨리제

국제수산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전문개정 2000. 5.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21호
개 정 2002. 5.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2-3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국제법규 및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의 어업규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랑어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 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어종별 총어획미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용한다.

가. 개체중량이 3.2kg 미만인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나. 개체중량이 6.4kg 미만인 참다랑어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중 북위 60°및 서경 45°의 점, 북위 10°및 서경 45°의 점, 북위 10°및 서경 35°의 점, 북위 5°및 서경 35°의 점, 북위 5°및 서경 30°의 점, 적도 및 서경 30°의 점, 적도 및 서경 25°의 점, 남위 60°및 서경 25°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서 수역에서 참다랑어 어획을 위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중 지중해에서는 6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길이 24m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황새치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 대서양 수역에서는 체중 25kg, 체장 125cm이하의 소형 황새치(1-2세 어)는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총어획미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용한다.
2. 북부 대서양에서는 총어획중량의 10%까지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이를 허용한다.

제5조(트롤어업 그물코 제한)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의 트롤어업에는 그물코가 60mm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기 위원회 협약수역 연안국 수역내에서 조업시에는 해당 연안국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업위치 보고) ①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에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수신이 가능한 인공위성 선박위치추적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명, 위치, 일자와 시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상시 작동 되어야 하며 500미터이내의 오차로 어선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장비가 고장이거나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동 어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오작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최소한 24시간 마다 한번씩 제1호의 자료를 텔렉스·팩스·전화 또는 무선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 오작동시에는 최소한 2월이내에 장비를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동 어선이 항구에 입항했을 경우에는 결함장비의 수리나 대체없이 후속 항해가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과 국제협

약 및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어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3.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4.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12.10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별표의 고도회유성 어종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밖의 이빨고기. 다만, 총어획량의 5% 이상을 어획하거나 연간 50톤이상 어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제2항제1호의 협약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시 및 소해구간 이동시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빨고기 어획제한) ①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이빨고기류(Dissostichus, spp.)를 어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업선박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정한 보존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하여야 한다.
2. 조업선박이 어획한 이빨고기류를 양륙하거나 전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이빨고기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업선박은 전재 및 양륙하기 위해 작성한 어획증명서를 가장 빠른 전자적인 통신 수단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국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어획증명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조업선박은 어획한 이빨고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선박에 전재한 경우에는 작성된 어획증명서에 어획물이 전재된 선박의 선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지의 책임있는 관리 및 어획물을 수령한 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재 및 양륙한 조업선박은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업선박의 선장이 서명한 어획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어획물을

- 수령한 자에게 어획증명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조업선박은 어획증명서 원본(분할 전채 및 양륙한 경우 사본하여 사용한 어획증명서의 원본)을 조업 종료일로 부터 1월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조업선박은 허가된 어기동안 어종별 어획량, 총 조업일수와 시간, 어구수 및 부수적어획물 등 조업결과를 일정한 주기로 전자적인 수단 및 보고서 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이외의 수역에서 이빨고기류를 어획할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방참다랑어수출입확인요령

제정 2000. 6.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26호
개정 2004. 1.27.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4- 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무역정보제도의 이행을 위한 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서류"라 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에서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정확한 어획정보 확보를 위하여 채택한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재수출증명서"라 함은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정확한 어획정보 확보를 위하여 채택한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남방참다랑어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남방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출·재수출 또는 수입하는 남방참다랑어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류의 발급 및 확인) ①수출남방참다랑어에 대한 통계서류의 발급은 다음에 의한다.

1. 남방참다랑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장(이하"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통계서류 3부
 - 나. 어업허가장 사본 1부
 - 다. 선장어획확인서(전문 등 허가어선 어획물 입증서류)

라. 선하증권 (B/L) 사본 1부(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마. 송장 사본 1부

2. 검사소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서류를 발급한다.

②재수출품에 대한 재수출증명서의 발급은 다음에 의한다.

1. 국내에 반입한 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구비서류를 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한 재수출증명서 3부

나. 남방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통계서류 사본 1부

다. 선하증권 (B/L) 사본 1부

라. 송장 사본 1부

마.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및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의 국내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남방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구비서류를 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한 재수출증명서 3부

나. 남방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통계서류 사본 1부(원본 사후제출)

다. 선하증권(B/L) 사본 1부(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라. 송장 사본 1부

마. 거래계약서 사본 1부

3. 남방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제1호 나목의 통계서류 사본에 검사소장이 확인한 후 첨부하여야 한다.

4. 여러국가를 거쳐 수입된 남방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통계서류 사본 및 재수출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소장은 첨부

된 모든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5. 검사소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증명서를 발급한다.

6. 제3호 및 제4호에서의 확인은 제1항의 수출남방참다랑어 통계서류 발급을 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③수입남방참다랑어에 대한 통계서류의 확인은 다음에 의한다.

1.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어획선적물 정부기관이 발급한 통계서류 원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원본을 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소장은 통계서류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에 "남방참다랑어통계서류확인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발급한다.

3.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통계서류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사본 여백에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한다.

4. 수입수산물 신고시 통계서류 또는 재수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④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

제5조(작성요령) 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의 작성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보고) 검사소장은 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지침) 검사소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류 작성요령

I. 별지 제1호 서식

Document Number (문서번호) : 확인기관이 부여한 문서번호를 기입

CCSBT Southern Bluefin Tuna Statistical Document (제목) : Capture (어획) 또는 Farmed (양식) 중 해당란에 v 표시

Export Section (수출)

1. Flag country/Fishing Entity of Capture Vessel (조업선박의 기국/조업실체) : 남방참다랑어를 선적한 조업선박의 기국/조업실체를 기입하며, 통계서식을 발급하는 국가와 일치하여야 함. 양식어류인 경우에, 조업선박의 기국/조업실체란에 수출국가/조업실체의 이름을 대신 기입함.
2. Name of Vessel and Registration Number (선박명 및 등록번호) : 남방참다랑어를 조업한 선박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기입함. 양식어류의 경우에는 선명 및 등록번호 대신에 참치양식장의 이름을 기입함.
3. Information on other forms of capture (어획양식에 대한 정보 (예, 정치망)) : 남방참다랑어가 어선어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포획되었을 경우에, 동 방법을 기입함.
4. Processing Establishment (가공 공장) : 남방참다랑어를 가공한 공장(해당시)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입함. 수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와 같음"을 기입.
5. Point of Export (수출지) : 남방참다랑어를 수출한 시/도/ 및 조업국가/조업실체를 기입함.
6. Description of Fish (어류 형태) : 수출자는 최고의 정확을 기하여, 아래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주 : 서식의 한 줄당 제품 한건을 기입)
Product (a) (제품) : 신선(F) 또는 냉동 (FR) 로서 선적되는 제품의 형태를 밝혀 적음
Type (b) (형태) : 선적되는 제품을 원어(RD), 아가미 및 내장제거(GG), 필렛 (FL), 또는 기타(OT) 로서 구별하여 적음
Time of Harvest (mm/yy) (어획시기) : 연도와 월별로 선적된 남방참다랑어의 어획시기를 적음. 양식어류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Gear Code (c) (어구약호) :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는데에 이용된 어구를 아래 예를 이용, 약호를 기입함. 기타의 경우에는 어구의 형태를 서술토록 함. 양식의 경우에는 "Farmed (양식)"을 기입.

어구약호	어구형태
BB	미끼 낚시선
GILL	자망
HAND	손 낚시
HARP	작살
LL	연승
MWT	중흥 트롤
PS	선망
RR	릴 낚시
SPHL	스포츠 낚시
SPOR	스포츠 어업 (미분류)
SURF	표층어업 (미분류)
TL	입연승
TRAP	정치망
TROL	끌 낚기
UNCL	미분류 어법
OT	기타어법

Area of Catch (d) (어획수역) : 남방참다랑어가 어획된 수역을 부도를 참조, 기입함. 양식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Net Weight (kg) (순중량) : 제품의 순중량을 kg 으로 기입. 양식의 경우에는 출하된 제품의 중량을 기입.

7. Exporter Certification (수출자 증명) : 남방참다랑어를 수출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이름, 주소, 서명, 제품의 수출일자 및 거래허가 번호(필요시)를 기입

8. Validation by Authority (관계당국의 확인) : 통계서류에 서명하는 확인 기관 담당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입함.

Import Section (수입) :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이름, 주소, 서명, 및 남방참다랑어의 수입일자 및 허가번호(필요시) 및 최종 수입지를 기입하며, 이는 중개국의 수입을 포함함. 신선 및 냉장제품에 대하여, 수입자의 서명은 수입자가 정당하게 위임한 경우에, 세관통관회사 직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II. 별지 제2호 서식

Document Number (문서번호) : 확인기관이 부여한 문서번호를 기입

Re-Export Section (재수출)

1. Re-Exporting country/Fishing Entity (재수출 국가/조업실체) : 남방참다랑어를 선적한 재수출국가/조업실체를 기입하며, 통계서식을 발급하

는 국가와 일치하여야 함.

2. Point of Re-Export (재수출지점) 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한 시/도/ 및 조업국가/조업실체를 기입함.
3. Processing Establishment (가공 공장) : 남방참다랑어를 가공한 공장(해당시)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입함. 수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와 같음"을 기입.
4. Description of Imported Fish (어류 형태) : 수출자는 최고의 정확을 기하여, 아래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주 : 서식의 한 줄당 제품 한건을 기입)
Product (a) (제품) : 신선(F) 또는 냉동 (FR) 로서 선적되는 제품의 형태를 밝혀 적음
Type (b) (형태) : 선적되는 제품을 원어(RD), 아가미 및 내장제거(GG), 필렛 (FL), 또는 기타(OT) 로서 구별하여 적음
Weight (kg) (중량) : 제품의 중량을 kg 으로 기입. 양식의 경우에는 출하된 제품의 중량을 기입
Flag Country/Fishing Entity (기국/조업실체) : 남방참다랑어를 선적한 조업선박의 기국/조업실체를 기입하며, 통계서식을 발급하는 국가와 일치하여야 함. 양식어류인 경우에, 조업선박의 기국/조업실체란에 수출국가/조업실체의 이름을 대신 기입함.
Imported Date (수입일자) : 수입일자를 기입함.
5. Description of Re-Exporting Fish (재수출 제품의 형태)
Product (a) (제품) : 신선(F) 또는 냉동 (FR) 로서 선적되는 제품의 형태를 밝혀 적음
Type (b) (형태) : 선적되는 제품을 원어(RD), 아가미 및 내장제거(GG), 필렛 (FL), 또는 기타(OT) 로서 구별하여 적음
Weight (kg) (중량) : 제품의 중량을 kg 으로 기입. 양식의 경우에는 출하된 제품의 중량을 기입
6. Re-Exporter Certification (재수출자 증명) : 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하는 개인 또는 회사의 이름, 주소, 서명, 제품의 수출일자 및 거래허가 번호(필요시)를 기입
7. Validation by Authority (관계당국의 확인) : 통계서류에 서명하는 확인 기관 담당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입함.

Import Section (수입) :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이름, 주소, 서명, 및 남방참다랑어의 수입일자 및 허가번호(필요시) 및 최종 수입지를 기입하며, 이는 중개국의 수입을 포함함. 신선 및 냉장제품에 대하여, 수입자의 서명은 수입자가 정당하게 위임한 경우에, 세관통관회사 직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결재			발급일자	발급번호	신청인	제품명 (형태)	수량(kg)	어획수역	수출지	발행부수	비고
지소장	주무	담당자									

남방참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
(참고 : 본 서식은 횡으로 작성되었음)

(별지 제4호 서식)

남방참다랑어 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 발급 및 수입확인 상황보고

구분	지소	회사명 (어획 기국)	어획 수역	어획 어구	최종 수출지 (경유지)	제품형태		중량(kg)	비고
						F/FR	RD. GG 등		
계									
수출	소계								
재수출	소계								
수입	소계								
첨부 : 남방참다랑어 통계서류 및 재수출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사본 부. 끝.									

(2000년 / 분기)

* 본 서류의 기입은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른다.
(참고 : 부도 생략)

황새치수출입확인요령

제정	1999. 6.22.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46호
개정	2000.10.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66호
개정	2003. 2.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8호
개정	2003. 7. 2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38호
개정	2005. 7.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4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고(산업자원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대서양 참치보존협약(이하 "ICCAT협약"이라 한다)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입하는 황새치(제품을 포함하며, 이하 "황새치"라 한다)에 대한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어(原魚)"라 함은 어획하여 절단·가공처리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황새치를 말한다.
2. "드레스"라 함은 원어에서 아가미, 지느러미, 내장 및 두부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3. "수출확인"이라 함은 황새치 수출품이 외국정부가 정하는 황새치 수입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검량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확인"이라 함은 ICCAT협약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서 검수·검량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ICCAT협약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출(재수출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황새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적용) 황새치 수출확인 및 수입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신청) ① 황새치의 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 또는 어획 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2. 어업허가장 사본 1부
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품종·어획해역 및 수량 그밖에 수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② 수입한 황새치(ICCAT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황새치에 한한다)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재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3부
2. 수출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③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ICCAT협약의 체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황새치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
2. 제1호외의 황새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④품질검사원장은 제3항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ICCAT 협약의 체약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황새치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ICCAT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후 제3항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입의 확인기준) ①수출(재수출을 포함한다)하는 황새치의 확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국으로 수출하는 황새치는 대서양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원어, 드레스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처리된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는 당해 어육이 최소한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레스로부터 얻어진 것일 것
2. 벨리즈, 온두라스 및 시에라레온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수입하는 황새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의 적정성 여부
2. 벨리즈, 온두라스 및 시에라레온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7조(수출입의 확인)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재수출은 제외한다)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새치의 수출확인 및 재수출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황새치 수출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 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2. 황새치 재수출 :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확인서
(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②품질검사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의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ICCAT 황새치 통계서 원본 또는 황새치 재수출확인서 원본 이면에 확인기관명·확인자·확인수량 및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 서류의 사본은 확인한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원장 또는 주라스팔마스영사는 수출입확인 신청을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세부실시요령) 품질검사원장 또는 주라스팔마스영사는 이 요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부실시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사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또는 주라스팔마스영사는 황새치 수출확인 발급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1.1~6.30) : 당해년도 8.30일까지 보고
2. 하반기 실적(7.1~12.31) : 다음해 2.28일까지 보고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입하는 황새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황새치를 국내에 이미 수입되었거나 선적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정	2006. 9. 1.	해양수산물부고시	제2007- 56호
개정	2008. 4. 7.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 4호
개정	2009. 8.25.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114호
개정	2010. 5.11.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0- 48호

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배정방식,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이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을 적용받는 품명의 수량(이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제2부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배정 및 추천

제3조(관세율할당추천품명 등) ① 관세율할당추천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

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은 별표1과 같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1의 관세율할당추천품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의 해당품명에 대한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추천신청서에 명기된 사용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이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

제5조(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한도)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은 별표1에 기재된 관세율할당추천품명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정한 수량의 범위내로 추천할 수 있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관세율할당 추천신청 및 추천서 발급) ①관세율할당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배정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 1부
 2. 그밖의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공고한 서류
-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1회 추천한도 수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대행기관이 교부한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나,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울할당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추천서와 교환하여 신규로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8조(관세울할당적용수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관세울할당적용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울할당적용수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세울할당적용수량 분할신청서에 분할신청내용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9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울할당적용수량을 추천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관세울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밖의 관세울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울할당적용수량 추천을 받은 자가 관세울할당적용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

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 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적용수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배정한 수량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의 지정) 수입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국내에 판매 시 판매기관은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부 보 칙

제12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관세율할당 추천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조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필요시 매분기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3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추천대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입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2. 추천을 받고자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추천대행기관은 수입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신청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5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2006.9.1)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7)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5)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세율할당추천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HS 번호	관세율할당 추천품명	관세율할당 배정방식	추천대행 기관	관세율할당 적용수량	원산지
고등어	0303-74-0000	냉동 고등어 (스콤포브루스 · 스콤포버 오스트랄라시 쿠스 · 스콤포버 자포니쿠스)	지정기관 배정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500톤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자	용 도	원산지		
<p>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추천대행기관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추천번호 :							
관세율할당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 추천내용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자	용 도	원산지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위와 같이 추천함							
20							
추천대행기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관세율할당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 당초 추천내용(접수번호 :)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자	용 도	원산지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정	2007. 9.1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65호
개정	2008. 2.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8- 31호
개정	2008. 4. 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6호
개정	2009. 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가 수입권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

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응찰단가와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 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입징수관은 수입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경우 공매납입금 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폐기하게 한다.

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 신청)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 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이사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①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 환급금은 당해연도 12월 26일까지 환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1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12월 26일 경과 후 동월말일까지 요청한 자에 대

하여는 다음년도 공매납입금 수납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12월 3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9.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7)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8.25)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부과내역
산출근거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년	월 일	
법정부담금		원	
		원	

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수
납불가

담당자 :

년 년 일

농림수산식품부 (인)

년 월 일

수납인

안내 말씀
<p>◆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p> <p>◆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p>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

회계 : 수산발전기금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납부자 :

실명번호 :

금융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	납 기 내		납 기 후
			년	월 일	
				원	
				원	

위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년 년 일

농림수산식품부 (인)

수납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1. 입찰번호 :
2. 예금계좌 : 은행 지점
3. 예금주명 :
4.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5. 계좌번호 :
6. 환급 신청액 : 일금 원정 (₩)
7. 신청사유 :
8. 본인(당사)은 기 납부한 공매납입금 중 상기 금액을 환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연 락 처 :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①입찰번호			
②상호 및 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④주소		⑨신청금액	
⑤신청일자		⑩차감액	
⑥신청번호		⑪차감사유	
⑦지급은행			
⑧계좌번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 귀하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제정 2009.12.29 농림수산물부예규 제2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EC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통제법령에 따라 EC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IUU 어업”이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을 말한다.
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 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 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체약국 기를 계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체약국이 체결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 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3. “비보고 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 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4. “비규제 어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 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기를 계양한 어선 또

는 기타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나. 관련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5.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목적인 모든 규모의 모든 선박으로 보조선, 가공선, 전제와 관련된 선박과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한 수산제품 이동 수단을 장착한 운반선을 포함한다.
6. “수산제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03류,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7.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 및/또는 EC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중인 조치를 말한다.
8.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EC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EC 영토 내의 항구에 환적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전제”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역수산물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이의 책임 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2010년1월1일부터 잡은 어획물로서 IUU 통제법 부속서 I의 제외품목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HS 03류,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 제외품목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승인 신청) ① EC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EC IUU 통제법」 부속서 Ⅱ)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어획물의 구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어획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륙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관련서류 사본 1부
2. 원양산 어획물인 경우에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서 사본 1부

② 어획증명서에 대한 승인신청 시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간편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 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EC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Ⅳ)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전장 12미터 미만 선박
2. 양망기(towed gear)가 있는 경우 전체 전장 8미터 미만 선박
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4. 20톤 미만 선박

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EC IUU 통제법」 부속서 Ⅳ)의 수산물 가공증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가공선 포함)은 반드시 EC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 수출자가 EC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별표 2(「EC IUU 통제법 이행규칙」 부속서 Ⅴ)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EC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에 의하여 어획 증명서 등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⑥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어획한 수산물임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① 품질검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EC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국제수산물기구 또는 지역수산물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② 품질검사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1. 문서번호 란에는 대한민국과 품질검사원 지원의 약호를 다음과 같이 붙인다.

가. 서울지원 : KOR-S

나. 인천지원 : KOR-I

다. 장항지원 : KOR-C

라. 여수지원 : KOR-Y

마. 목포지원 : KOR-M

바. 완도지원 : KOR-W

사. 제주지원 : KOR-J

아. 부산지원 : KOR-B

자. 통영지원 : KOR-T

차. 포항지원 : KOR-P

카. 강릉지원 : KOR-G

타. 인천공항지원 : KOR-K

파. 평택지원 : KOR-F

2. 어획증명서, 가공증명서 및 간편어획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지원영문 약호 뒤에 증명서약호를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붙이고 승인연도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어획증명서 : CC

나. 가공증명서 : CP

다. 간편어획증명서 : CS

“(작성예시) KOR-SCC-2010-0001”

제6조(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선박이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공해 상에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이 기국의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국에 있는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허위보고 등의 조치) ①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승인·발급한 해당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 취소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해당 취소내용을 EC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근해어선 IUU 목록) 연근해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연근해어선의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양어선 IUU 목록) 원양어선의 IUU 대상 어선의 목록 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원양어선의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수산기구 등의 IUU 목록)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관리 기구에 등재된 IUU 대상 어선의 목록 작성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장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된 IUU 대상 목록을 매월 20일까지 품질검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EC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승인 신청) 품질검사원장은 EC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예규에 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승인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승인한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사본을 승인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예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2009. 12. 29)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 담수 수산제품(freshwater fishery products)

품목번호	품 명
0301 09	기타 활어 :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키리소가스터)
0301 92	기타의 활어 : 잉어
ex 0301 99	기타 : 담수어(CN 0301 99 11과 0301 99 19)
0302 11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2 1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0302 66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겔라 종)
ex 0302 69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기타: 담수어(CN 0302 69 11과 0302 69 19)
0303 1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 2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3 22	냉동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대서양 연어(살모사라) 및 다뉴브연어 (후코후코)

품목번호	품 명
0303 76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겔라 종)
ex 0303 79	기타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CN 0303 79 11과 0303 79 19)
ex 0304 19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민물어 (CN 0304 19 13; 0304 19 15; 0304 19 17; 0304 19 19와 0304 19 91
ex 0304 29	냉동한 피레트 : 담수어 (CN 0304 29 13; 0304 29 15; 0304 29 17와 0304 29 19)
ex 0304 99	기타 냉동 어육: 담수어 (CN 0304 99 21)
ex 0305 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CN 0305 30 30):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와 잉어(CN 0305 30 90)
ex 0305 41	훈제한 어류, 피페트를 포함한다: 태평양 연어 (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ex 0305 59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와 잉어(CN 0305 59 80)
ex 0305 69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태평양 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CN 0305 69 50); 송어(살모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와 잉어(ex CN 0305 69 80)

품목번호	품 명
ex 0306 1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ex 0306 2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동이 아닌: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1604 11 0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
ex 1604 1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19 10)
ex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연어(CN 1604 20 10);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20 30)
ex 1605 40 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달과 함께 조리한 민물 가재, 냉동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획득한 양식제품
- 0301 10 - 관상용 활어
- 0307 10 -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굴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클라미스 또는 크라코펙텐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품목번호	품 명
0307 2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CN 0307 21 00)
0307 29	기타

○ 홍합

품목번호	품 명
0307 3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 29	기타
ex 1605 90	기타(CN 1605 90 11과 1605 90 19)

- 0307 60 00 - 달팽이(바다 달팽이는 제외한다)
- 0305 10 00 -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ex 1605 90 3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가리비, 굴, 달팽이
- 1605 90 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

[별표 2]

지역수산기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 증명서 제도

1. EC No. 1005/2008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획증명서 제도
 - 가. 디소스티처스종(*Dissostichus spp*)에 대한 어획증명서 제도를 수입한 2001년5월22일자 EC No. 1035/2001에서 정한 디소스티처스에 대한 어획증명서
 - 나. 07-10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프로그램을 개정한 ICCAT 08-12 권고안에서 정한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프로그램

2. 추가조건에 따라 EC No. 1005/2008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획증명서 제도
 - 가. 2008년10월14-17일 제15차 CCSBT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CCSBT 어획 증명서 제도의 이행 결의안

어획증명서와 CCSBT 어획증명서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관련 서류와 더불어 수입자는 수입회원국 당국에 EC No. 1005/2008 부속서 II의 구체적인 이송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			
1. Name		Address			Tel. Fax		
2. Fishing vessel name		Flag-Home port and registration number			Call sign		IMO/Lloyd's number <small>(if issued)</small>
Fishing licence No-Valid to		Inmarsat No, Fax No, Telephone No, E-mail address <small>(if issued)</small>					
3. Description of product		Type of processing authorised on board			4.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pecies	Product code	Catch area(s) and dates	Estimated live weight(kg)	Estimated weight to be landed(kg)	Verified weight landed(kg) <small>where appropriate</small>		
5.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ature-Seal :							
6. Declaration of transshipment at sea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			Signature and date		Transshipment date/area/position		Estimated weight(kg)
Master of receiving vessel		Signature	Vessel name		Call sign		IMO/Lloyds number <small>(if issued)</small>
7. Transshipment authorisation within a port area							
Name	Authority	Signature	Address	Tel.	Port of landing	Date of landing	Seal (stamp)
8.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Signature		Date		Seal	
9.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10. Transport details <i>(see Appendix)</i>					
11. Importer declaration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Signature	Date		Seal	Product CN dode
Documents under Articles 14(1),(2)of Regulation(EC)No .../2008	References				
12. Import control – authority	Place	Importation authorised(*)	Importation suspended(*)	Verification requested–date	
Customs declaration (if issued)	Number		Date	Place	
(*) Tick as appropriate					

[별지 제2호서식]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I) EUROPEAN COMMUNITY CATCH					
CERTIFICATE – 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tel, fax)		
1. Description of product		2.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pecies	Product code		Verified weight landed (kg)		
3. List of vessels that have provided catches and the quantities by each vessel(name, registration number, etc. annexed):					
4. Name, address, tel. and fax of exporter		Signature		Date	Seal (stamp)
5.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6. Transport details (<i>see Appendix</i>)					
7. Importer declaration: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Signature	Date		Seal (stamp) Product CN dode
8. Import control: Authority		Place	Importation authorised(*)	Importation suspended(*)	Verification requested-date
Customs declaration (if issued)		Number		Date	Place

(*) Tick as appropriate

[별지 제3호서식]

Statement under Article 14(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 confirm that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 (product description and Combined Nomenclature code) have been obtained from catches imported under the following catch certificate(s):

Catch certificate number	Vessel name(s) and flag(s)	Validation date(s)	Catch description	Total landed weight(kg)	Catch processed (kg)	Processed fishery product (kg)

Name and address of the processing plant:

.....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if different from the processing plant):

.....

Approval number of the processing plant:

.....

Health certificate number and date:

.....

Endors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person of the processing plant:	Signature:	Date:	Place:
---	------------	-------	--------

.....

Official:	Signature and seal:	Date:	Place:
-----------	---------------------	-------	--------

[별지 제4호 서식]

() CERTIFICATE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 (name, address, tel., fax)	
1. Description of product			
Species	Product code	Net weight (kg)	
2. List of vessels that have provided catches and the quantiti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etc.)			
Name of vessel	Registration applicable	No.(if	Catch area(s) and dates
3. Name of exporter (address, tel. and fax)	Signature	Date	Seal
<p>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fishery products mentioned above have been caught before January 1, 2010 with observing the relevant Korean law(the Fisheries Act) and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p>			
Stamp		Official inspector	
title Signature		Name (in capitals)	/ qualification and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6.1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
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 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

- 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
 - 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
 - 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의 모든 작업 행위
 - 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
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 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 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다. 금어(禁漁)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 라. 금어기간 중에 조업하는 경우
 - 마.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보유한 경우
 - 바.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어획량 제한 조치 또는 할당량을 위반한 경우
 - 사. 금지된 어구(漁具)를 사용한 경우
 - 아.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한 경우
 - 자.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손상 또는 폐기시키는 경우
 - 차.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조치들을 반복 위반하여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 카.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 외의 사유로 승선검색을 거부한 경우
 - 타.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공격, 저항, 위협, 성적학대,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
 - 파. 선박감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의 남쪽해안에서 시작하여 동경 141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30도를 따라 정북으로 남위 4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4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으로 향하는 선의 남쪽과 동쪽선을 경계로 하는 태평양의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제4조(선박검색 당국 등의 의무)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조(승선검색의 우선 실시)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의 기(旗)를 게양한 어선
2.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어선
3. 자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용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의 어선
4. 선상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옵서버가 없는 어선
5. 대형 참치 어선
6. 국제협정 또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어선

제2장 선박검색 당국의 조치

제6조(위원회에 대한 통지) 선박검색 당국이 승선검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색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명, 제원, 사진, 등록 번호, 등록항(어선이 등록된 항구와 선체에 표시된 항구가 다를 경우 선체에 표시된 항구를 말함), 국제무선 호출부호 및 통신 능력

나. 해당 검색선이 정부업무 수행 중임을 확인하는 사항

다. 검색선의 승무원이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2. 검색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승선검색활동의 범위 및 협약의 규정 및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숙지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제7조(어선 당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검색 당국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을 시작하려는 어선의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선박검색 당국이 제1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어선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선박검색 당국이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검색 종료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와 검색을 받은 어선의 국가에 승선검색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선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군함 사용시 준수사항) 선박검색 당국이 군함을 검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함에서 승선검색활동을 행하는 자는 승선검색절차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연례보고서의 작성·보고)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검색선과 검색관의 조치

제9조(일반적 조치사항) ① 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승선검색 전 조치사항) 검색선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어선을 공해 상에서 승선검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파, 국제 신호 코드나 그 밖에 승선검색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이용하여 승선 전 해당 어선과 교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해당 검색선이 검색선이라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
3. 위원회의 허가 및 승선검색의 절차에 따라 선박을 승선검색하려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
4. 선박검색 당국에 승선검색을 시작하려는 사실을 보고할 것

제11조(승선검색 시 조치사항) ①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다(多)언어 질문서를 사용하는 등 해당 어선의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의 입증에 필요한 해당 선박,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과 관련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③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해당 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것
3. 어획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할 것
4. 어선, 어선의 사관이나 선원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
5.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신분증과 공해의 관련 수역에서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사본을 제시할 것
6. 해당 어선의 선장이 어선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4시간 이내에 검색을 종료할 것(중대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기록할 것
9.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할 것
10. 해당 어선 선장의 진술을 포함한 승선검색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은 해당 어선을 떠나기 전에 선장에게 제공할 것
11. 승선검색을 완료하면 해당 어선을 지체 없이 떠날 것

제12조(무력의 사용 제한) ①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검색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무력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승선검색 보고서의 작성·보고)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종료한 후 검색관의 이름, 선박검색 당국명 및 적발된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승선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어선 선장의 조치

제14조(승선검색 시 준수사항)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검색선 및 검색관에 의하여 승선검색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검색관의 승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
3.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저항, 위협,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검색관이 검색 받는 어선의 국가,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할 것
5. 필요한 경우 검색관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
6. 검색관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제15조(승선검색의 거부) ① 검색선 또는 검색관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선 선장은 그 위반 사항을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 선장은 위반 사항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이 검색관의 승선검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그 어선 선장의 승선검색 거부 및 그 사유를 위원회와 해당 어선 국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장 어선 당국의 조치

제16조(승선검색의 협조 명령 등) ① 어선 당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 절차 및 실행에 의하여 승선검색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 선장이 승선검색에 협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선 선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어선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정지하고, 귀항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치)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제6장 분쟁의 조정

제18조(기술이행위원회 등) ① 협약 체결국 간에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기술이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5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패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이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조언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 효력 등) 제18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제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정 2001. 6.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4호
개정 2008. 7. 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6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국측 양자강보호수역에서의 조업활동) ①어선은 북위 31도 50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 40분의 위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수역중 동경 124도 이서의 수역(이하 "양자강보호수역"이라 한다)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선이 2001. 6.30부터 2003. 6.29까지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강보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저인망어선 등"이라 한다)은 매년 6월16일 정오12시부터 9월16일 정오12시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대형트롤어업
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 ①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 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저인망어선 등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16일 정오12시부터 9월16일 정오12시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전문개정	2000. 2.1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 7호
개 정	2001. 1.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 87호
개 정	2002. 6.1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48호
개 정	2003.12.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87호
개 정	2005.12.2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09호
개 정	2008. 7. 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38호
개 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117호
개 정	2010. 4. 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 3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수역에서의 어업생산을 지속,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지원하는 원양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어업경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어장의 유지, 개발 및 국제어업의 여건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소요액”이라 함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대출재원) 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대출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과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한다.

제4조(자금의 세부운용지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금의 세부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과 원양산업협회장(이하 “원양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총규모

2. 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3. 기타 대출방법 및 조건 등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금의 소요액 등 보고) ①원양협회장은 지침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에 어업별, 업종별 자금의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에게는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협회장으로부터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 받은 후 1개월이내에 자금의 배정 및 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취급기관) ①이 요령에 의한 자금의 취급기관은 수협중앙회로 한다. 단, 수협중앙회장이 타 금융기관의 장(이하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자금의 전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전대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른다.

제7조(대출기간) ①이 요령에 의한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내에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면허 및 허가의 자진 폐지, 면허 및 허가의 기간만료(면허 및 허가기간 만료일부 30일 이내에 재면허를 받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용자기간을 당해 어업의 면허 및 허가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

제8조(대출대상자) 대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및 어선
2.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

어장에 출어하는 자 및 어선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및 어선

제9조(대출추천) ①수협중앙회장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원양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②원양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추천시에는 전체 원양어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체 대출추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대출추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양협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구성은 업종과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10조(대출한도) 대출대상자별 자금의 대출한도는 특정 대상자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으로 어업규모별, 소요액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양어업자 및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의 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양어업자가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금의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이미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경우(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어선이 타 어선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본다). 다만, 이미 대출된 자금이 당해 어선의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

액의 범위안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한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자금의 회수) ①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술의 수단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원양어업자 및 어선에 대한 허가 등이 소멸된 경우
3. 대출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된 경우
4. 자금을 대출받은 어선이 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출어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외수역 구조업어장에서 입어가 금지되거나, 조업쿼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1년이내의 회수유예기간은 동기간에 산입치 아니하며, 천재지변, 업종전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어가 지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회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어선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어선에 대출된 자금의 회수를 합작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수협중앙회장 및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대출금이 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협중앙회장은 자금의 대출(전대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포함한다) 및 전대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대출 및 전대현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분기보고는 당해 연도의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전대받은 자금의 매분기

별 대출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수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용세칙)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협중앙회장, 원양협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은 이 요령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제한

구 분	대 출 제 한
<p>1. 원양어업행정처분의기준과해기사행정 처분요구기준에 의거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자 (어선)</p>	<p>○대출금 전액을 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p> <p>○2회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p>
<p>2. 수산물 밀수자 또는 밀수선박(위장수입을 포함)</p>	<p>○대출금 전액을 혐의확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2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무혐의 판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다만, 선원(종업원)밀수인 경우, 밀수에 이용된 당해 선박에 지원된 대출금, 밀수이용선박에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소속 선박중 동선박과 톤수가 가장 비슷한 어선에 지원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문 제한내용과 같이 자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을 중지</p>
<p>3. 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입어조건을 현행보다 악화 또는 입어를 무산되도록 한 명백한 행위가 있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한 어업자 또는 선박</p>	<p>○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보전 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기존대출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중지.</p>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개정	1997. 6.27	해양수산물부고시	제1997-60호
개정	1998.12.19	해양수산물부고시	제1998-83호
개정	2000.12.20	해양수산물부고시	제2000-81호
개정	2001. 2.13	해양수산물부고시	제2001- 8호
개정	2008. 7. 3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08-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와 동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수입하고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을 말한다.
2. < 삭 제 >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수산물"이라 함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4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품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5조(생산수단) ①제3조제3호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허가를 받은 선박·어구 등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업(50톤이상 어선에 한하며,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 이상 어선에 한한다)

2.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제1항의 생산수단이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납하고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어구 등

2.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되었다가 합작국의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작국을 달리하여 새로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어구 등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과 조업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수역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어선의 매입지원금에 한한다)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제6조(지분의 확인) 관세법 제93조제7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해외합작요건 중 지분의 확인은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한다.

제7조(추천물량배정 및 조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량을 정하여 이를 업체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조업상황에 따라 일부어종에 대하여 추가배정을 요청하거나 어종간 배정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 어가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8조(추천신청) ①제4조제1항의 사업자가 합작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의 감면을 추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2. 투입선박(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3.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9조(추천서 재발급)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10조(수급조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 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8·12·19>

제12조(자료요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합작수산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13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물품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14조(다른 조항의 준용) 이 요령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별도시달) 이 요령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한다.

부 칙(1997. 6.27)

-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제2호의 개정(총리령 제607호, 1996.12.31)에 의한 총지분은 1997.7.1부터 수입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고시의 폐지) 수산청 고시 제1996-3호(1996.2.2)로 고시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추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요령 고시이전에 수산청고시 제1996-3호 제6조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은 이 요령 제4조에 의한 추천대상으로 본다.

부 칙(1998.12.19)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고시이전에 수산청고시 제1996-3호 제6조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은 이 요령 제4조에 의한 추천대상으로 본다.

부 칙(2000.12.20)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13)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4 일
신청인	① 업 체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신청내용						
품명 (H·S)	규격	단가	수량(M/T)	금액(\$)	수입국	도착일자
합 계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법 제93조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일자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구비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보고서 사본 1부.</p>						수수료
						없 음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법 제93조 제6호, 제7호 및 동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제6항 규정 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을 추천함.</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번호 추천일자 200 . . . 추천권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인)</p>						
연락처	담당 부서	국제수산물실 원양산업과		전화번호	T. 02-500-2453 F. 02-503-9104	

33531-00111 민
'97. 3.3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용품))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정	1989. 2.22.	수산청고시	제1989- 9호
개정	1989. 5.23.	수산청고시	제1989-19호
개정	1991.11.20.	수산청고시	제1991-28호
개정	2000. 5.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22호
개정	2005. 3. 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8호
개정	2008. 8. 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9호

제1조(목적)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을 국내 반입할 시의 반입량의 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양어획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수급 및 어가 안정을 기하고, 원양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획물"이라 함은 원양어업 허가 어선 등이 어획한 어획물을 말하며, 선상에서 가공한 제품을 포함한다.
2. "반입항"이라 함은 어획물을 반입하는 국내 소재 항구나 공항을 말한다.
3. "반입량"이라 함은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수량을 말한다.
4.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원양모선식 어업허가 어선이 외국의 어선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업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어선이 해외 어장에서 어획한 것으로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 단, 공동어업사업 어획물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해외 어장이나 외국의 항에서 운반선에 옮겨 실어오거나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

제4조(어획물반입신고) 원양어업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본 요령 제3조의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항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이하"검사원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반입량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3부와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 3일 전까지 제출(화객선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일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로 반입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나.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1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다. 하역협정서(반입 5일 이내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사본 1부.

라.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기류인 경우에 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것)

마.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 반입신고사항이 변경 시에는 변경내용을 최소한 반입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반입하는 장소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12시간 전까지 검사원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반입신고사항은 검사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 지원장이 별도 통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반입량 확인)①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검사원 지원장은 신고서류로써 이를 확인한다. 다만 검사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원양어업자는 검사원 지원장의 어획물 확인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매월의 반입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험어업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처리기간
(확인번호)					서류심사시:즉시 물량확인시: 입항후 즉시
조업선	(1)선 명		(2)톤 수		(3)업 종
	(4)조업구역		(5)허가번호		(6)허가기간
운송수단	(7)선명 또는 항공편명		(8)국 적		(9)톤 수
	(10)전적장소		(11)전적일시		
반입사항	(12)반입일		(13)반입장소		(14)반입후 보관장소
(15)어종	(16)반입형태		(17)반입량(M/T)		(18)비고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 국내 반입코자 신고합니다. 20 . . .			검 사 원	직급 : 성명 :	
신고인(주소, 상호, 성명, 전화)(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귀하			위의 신고사항을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함		20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귀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인)					
(첨부서류) 1.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1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3. 하역협정서(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제출용) 사본 1부. 4.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기류인 경우에 한하며, 국립수산식품부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것) 5.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20. .

수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존기간 : 년)

참조

제목 원양어획물 반입상황 보고(월분) 발신 : (인)

(1) 회사명	조업선			(5) 선명 또는 항공편명	(6) 전적일	(7) 반입일	반입실적		
	(2) 선명	(3) 업종	(4) 조업구역				(8)어종	(9) 반입형태	(10) 반입량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

제정	1973. 4.18.	수산청고시	제1973-29호
개정	1975. 5. 7.	수산청고시	제1975-11호
개정	1977. 8.22.	수산청고시	제1977-17호
개정	1980. 2. 1.	수산청고시	제1980- 1호
개정	1989. 7.22.	수산청고시	제1989-26호
개정	1991. 3.11.	수산청고시	제1991- 7호
개정	1995.11.21.	수산청고시	제1995-34호
개정	1998. 4.24.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26호
개정	2008. 8.18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7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무환반출 확인사무 취급요령을 정함에 있다.

제2조(선용품의 정의) 이 요령에서 "선용품" 이라 함은 음식료, 연료, 소모품및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오타보드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나용선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반출 확인신청) ① 운반선을 이용하여 제3조의 선용품에 대하여 무환반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선용품을 선적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용(은행용제외)을 확인 신청하여야 한다.

가.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신청서(서식 1호)

나.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수증) 다만,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첨부

다. 기타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증명서 사본

② 확인신청을 받은 회장은 신청선박의 어업허가사항 신청물품이 당해 선박의 선용품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① 반출확인서를 받은 해당물품은 60일이 내에 반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 의한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확인받은 당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무환반출확인서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 법규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규와 일반수출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장은 본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91. 3. 11)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반출 확인된 분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5. 11. 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1항6호의 개정(총리령 제502호, '95. 10. 20)으로 관세환급되는 선용품에 대하여는 '95년 10월 20일이후 반

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2) 이 고시시행일 이전에 반출 확인된 분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4. 24)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반출 확인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08. 8. 19)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반출 확인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원양어업용선용품 무환반출 확인 신청서

000회사소속어선 000호는 000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동선박용 선용품()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환반출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반출 품목별 내용

(단위: 천원)

업종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선 용 품 생산국명

2. 용 도 :

3. 반출목적지 :

4. 반출예정일 :

5. 선적어선 :

6. 실수요자(인수자) :

신청자(공급자)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발급대장

확인일자	확인번호	신청인	실수요자			출어상황		확인사항				수출상황			비고
			회사명	선명	업종	출어해역	기지	품명	수량	금액 (원, US\$)	선용품 생산국명	보고일자	신고번호	면허일자	

33531-00611 비
'98. 4. 14 승인

380mm×268mm
(보존용지 2종 70g/m²)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정	2007. 6.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33호
개정	2007. 8.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3호
개정	2008. 4.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5호
개정	2008. 8.2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7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에 대한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2. “협정관세”란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3. “협정관세추천기관장”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협정관세적용추천대행기관장”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별표1에서 정한 협정관세적용 추천대상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하고 협정관세 적용 추천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관세율할당물량의 수

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관세차액 범위내에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관세율할당 적용품명 등) 관세율할당 적용품명·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협정관세적용세율·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품명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에 따라 적용물량 범위내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②제4조의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배정에 반영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이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할 때, 이를 위한 추천대행기관과 실수요자간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한도) ①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에 따라 협정관세적용 추천 신청서 1부.
2. 그밖에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

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④추천대행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수입권 공매는 별표 1에 의거 품명별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 주관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입찰 10일전에 품명별 수입권공매 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품명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품명별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한다.

③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2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5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추천대행기관장은 제11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제14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

당년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따른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울할당적용 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공고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조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울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장에게 관세울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7. 6. 1)

이 고시는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4)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8.22)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적용 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관세율할당 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 적용물량(톤)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
새우와 보리새우 (새우살, 냉동)	0306-13-1000	5,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냉동)	0306-13-9000				
새우, 보리새우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6-23-1000	3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갑오징어 (냉동)	0307-49-101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 훈제, 브레드한 것 제외)	1605-20-909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신청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p>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추천대행기관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추천번호 :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팩스번호						
○ 추천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 정자	용 도
<p>○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대행기관장 (인)</p>						

(별지 제2-1호서식)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 청하오니 연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 .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추천대행기관장 귀하</p> <p style="margin-top: 10px;">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p>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4.2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안 61/106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상 저층어업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하므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 및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란 식물계, 동물계 및 미생물계와 이들과 교류하는 무생물적 환경의 역동적인 집합체를 말한다.
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해양생태계를 의미하며, 산호, 해산, 열수공, 냉수 산호 또는 냉수성 스폰지 대(帶)를 포함한다. 취약한 해양생태계는 쉽게 교란이 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생태계를 말한다.
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교체 능력을 저해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시)을 의미한다.
4. "저층 어구"란 정상적인 조업 중에 해저와 접촉하게 되는 어구를 말하며, 저층트롤, 저인망, 저층자망, 저연승, 통발 어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동 규정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모든 공해수역에서 "저

층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선에 적용된다.

1. 조업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또는 약정의 책임 하에 있는 영역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의 참가자들이 저층어구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에 합의한 영역

제4조(조업허가) ①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원양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어구가 전개될 수심 및 대상어종의 해저수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업위치에 어선이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한 후, 조업 활동이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업허가를 발급한다.

제5조(공해상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업어선은 조업위치, 조업시간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해상 저층수역의 조업과정에서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경우
2. 기타 공해상 저층수역의 조업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6조(공해상 저층어업의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장은 제5조의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1마일 떨어진 대체장소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언급된 대체장소에서 또 다른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확인한 때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가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항에 따라 계속해서 조업장소를 이동해야 한다.

③ 다만, 과학적 평가에 의한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조건하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때에는 저층어구를 이용한 저층조업을 폐쇄할 수역을 파악하고 해당 조업어선에 대하여 폐쇄를 지체 없이 실시하며, 폐쇄상황을 유엔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및 조업실적 보고) ①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들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해상 저층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 및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월의 조업실적을 익월 7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보고서

성 명 (선장)	선박제원				어업허가		취약한 해양생태계			
	선 명	톤 수	어선 번호	선 령	종류	번호	일자	종류	장소 (경위도)	기타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한 해양생태계” 확인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선 장 명 (서명)

364mm×25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8.21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68호
개정 2009. 6.17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을 말한다.
 - 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협약수역 내에서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유럽연합(EC) 등 실체 및 대만 등 어업실체(이하 “CPC”라 한다)의 국적선(國籍船) 또는 CPC가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의 유통
 - 나.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동일한 CPC의 국적선 또는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를 축양한 후 동일한 CPC로 유통
 - 다.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유럽연합(EC)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의 국적선 또는 한 회원국이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 또는 축양한 참다랑어의 유럽연합(EC) 회원국 간 유통
2.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적선, 정치망 또는 축양장이 설치된 CPC에서 다른 CPC 또는 ‘위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비체약국(이하 “비체약국”이라 한다)으로 어획 또는 가공(축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 나. 자국의 축양장에서 조업 선박의 기국(旗國)이 아닌 다른 CPC 또는 비체약국으로 어획 또는 가공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
3. “수입”이란 국적선 또는 정치망 및 축양장이 설치된 CPC의 국가가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4. “재수출”이란 참다랑어를 이미 수입하였던 CPC로부터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5. “태그”란 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6.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ICCAT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양륙·이동·어획·환적하거나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 등 준수사항)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환적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환적,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의 발급

제5조(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 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환적·국내유통 또는 수출하는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축양장 운

영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 선장등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

나.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어획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검사원장은 첨부서류 및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어획쿼터량 등을 확인하여 어획증명서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별도의 교역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판매 가능한 모든 참다랑어가 어획 선박 또는 어획한 정치망이 설치된 국가의 태그를 부착한 경우 제1항의 어획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어획증명서 확인 기준) ①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
3. 해당 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어획 증명서를 발급 하는 경우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획증명서”를 각각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로 본다.

제3장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 발급

제7조(재수출 증명서 신청 및 발급) ①참다랑어를 재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장에게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반입한 참다랑어를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수출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 증명서 사본 1부

다.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3부

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 증명서 사본 1부

다.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검사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여러국가를 거쳐 수입된 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및 재수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재수출 증명서 확인 기준) ①제7조 규정에 의한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재수출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
2. 어획증명서가 재수출 증명서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
3. 해당 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어획증명서의 제품과 동일할 것
4.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사본이 재수출 증명서에 첨부될 것

제4장 참다랑어 수입 확인

제9조(수입 확인) 검사원장은 수입업자가 수입수산물 신고 시 어획선적물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 후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하단 여백에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확인필」 이라고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장 보 칙

제10조(태그의 부착) ①선장등은 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참다랑어에 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태그에는 해당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어획일자,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태그는 누적된 총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요령 및 보고) ①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

③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년 2회(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본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별(상반기 : 8월 3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Bluefin Tuna Catch Document Form

1. ICCAT BLUE FIN TUNA CATCH DOCUMENT (BCD)				N° CC-YY-XXXXXX				1/2	
2. CATCH INFORMATION									
VESSEL/TRAP									
NAME :				FLAG		ICCAT RECORD No.			
				ATEC					
CATCH DESCRIPTION									
DATE (ddmmyy)		AREA		GEAR					
No. of FISH		TOTAL WEIGHT (kg)		AVERAGE WEIGHT (kg)					
TAGS No. (if applicable)		ICCAT RECORD N° of Joint Fishing Operation (if applicable)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3. TRADE INFORMATION									
PRODUCT DESCRIPTION									
LIVE WEIGHT (kg)		No. of FISH		ZONE					
EXPORTER/SELLER									
PT EXPORT/ DEPARTURE		COMPANY			ADDRESS				
FARM OF DESTINATION			STATE		ICCAT FFB No.				
SIGNATURE									
DATE									
TRANSPORTATION DESCRIPTION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attached)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IMPORTER/BUYER									
COMPANY			PT IMPORT / DESTINATION (city, country, State)						
ADDRESS									
DATE OF SIGNATURE		SIGNATURE							
ANNEX(ES): YES / NO (circle one)									
4. TRANSFER INFORMATION									
TOWING VESSEL DESCRIPTION									
ICCAT TRANSFER DECLARATION N°									
NAME		FLAG		ICCAT RECORD No.					
No. of FISH DEAD DURING TRANSFER		TOTAL WEIGHT OF DEAD FISH (kg)							
TOWING CAGE DESCRIPTION				CAGE N°					
ANNEX(ES): YES / NO (circle one)									
5. TRANSHIPMENT INFORMATION									
CARRIER VESSEL DESCRIPTION									
NAME		FLAG		ICCAT RECORD No.					
DATE(ddmmyy)		PORT NAME		PORT STATE					
POSITION (LAT/LONG)									
PRODUCT DESCRIPTION (Indicate net weight in kg for each type of product)									
F	RD (kg)	GG (kg)	DR (kg)	FL (kg)	OT(kg)	TOTAL WT F (kg)			
FR	RD (kg)	GG (kg)	DR (kg)	FL (kg)	OT(kg)	TOTAL WT FR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ANNEX(ES): YES / NO (circle one)									

ICCAT BLUE FIN TUNA CATCH DOCUMENT (BCD)				N° CC-YY-XXXXXX				2/2	
6. FARMING INFORMATION									
FARMING FACILITY DESCRIPTION	NAME			STATE		ICCAT FFB N°			
	NATIONAL SAMPLING PROGRAM? Yes or No (circle one)					LOCATION			
CAGE DESCRIPTION	DATE(ddmmyy)			CAGE No.					
FISH DESCRIPTION	No. of FISH		TOTAL WEIGHT (kg)		AVERAGE WEIGHT (kg)				
OBSERVER INFORMATION	NAME			TITLE		SIGNATURE			
	SIZE COMPOSITION			< 8kg		8-30 kg		> 30 kg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ANNEX(ES): YES / NO (circle one)									
7. HARVESTING INFORMATION									
HARVESTING DESCRIPTION									
DATE (ddmmyy)		No. of FISH		TOTAL ROUND WEIGHT (kg)					
AVERAGE WEIGHT (kg)		TAGS No. (if applicable)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8. TRADE INFORMATION									
PRODUCT DESCRIPTION (Indicate net weight in kg for each type of product)									
F	RD (kg)	GG (kg)	DR (kg)	FL (kg)	OT(kg)	TOTAL WT F			
FR	RD (kg)	GG (kg)	DR (kg)	FL (kg)	OT(kg)	TOTAL WT FR			
EXPORTER/SELLER									
PT EXPORT / DEPARTURE			COMPANY			ADDRESS			
STATE OF DESTINATION									
SIGNATURE									
DATE									
TRANSPORTATION DESCRIPTION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attached)									
GOVERNMENT VALIDATION									
NAME OF AUTHORITY					SEAL				
TITLE									
SIGNATURE									
DATE									
IMPORTER/BUYER									
COMPANY				PT IMPORT / DESTINATION (city, country, State)					
ADDRESS									
DATE		SIGNATURE							
ANNEX(ES): YES / NO (circle one)									

(별지 제2호 서식)

1. DOCUMENT NUMBER		ICCAT BLUEFIN TUNA RE-EXPORT CERTIFICATE			
2. RE-EXPORT SECTION:					
RE-EXPORTING COUNTRY/ENTITY/FISHING ENTITY					
POINT OF RE-EXPORT					
3. DESCRIPTION OF IMPORTED BLUEFIN TUNA					
Product Type <i>F/FR RD/GG/DR/FL/OT</i>		Net Weight (kg)	Flag CPC	Date of import	BCD No.
4. DESCRIPTION OF BLUEFIN TUNA FOR RE-EXPORT					
Product Type <i>F/FR RD/GG/DR/FL/OT</i>		Net Weight (kg)	Corresponding BCD number		
F=Fresh, FR=Frozen, RD=Round, GG=Gilled & Guttled, DR=Dressed, FL=Fillet, OT=Others (Describe the type of product:)					
STATE OF DESTINATION:					
5. RE-EXPORTER STATEMENT: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Name	Address	Signature	Date		
6. GOVERNMENT VALIDATION:					
I validate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Name & Title	Signature	Date	Government Seal		
7. IMPORT SECTION					
IMPORTER STATEMENT: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mporter Certification					
Name	Address	Signature	Date		
Final Point of Import: City	State/Province	CPC			

(별지 제3호 서식)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발급 대장

결재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신청인	제품명 (형태)	수량 (kg)	어획 수역	수출지	발행 부수	비고
지원장	주무	담당자									

(별지 제4호 서식)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 및 수입확인 상황보고

(0000년 / 반기)

구분	지원	회사명 (어획 기국)	어획 수역	어획 어구	최종 수출지 (경유지)	제품형태		중량(kg)	비고
						F/FR	RD, GG 등		
계									
수출	소계								
재수출	소계								
수입	소계								
<p>첨부 :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사본 부. 끝.</p>									

[별표 1]

서류 작성 및 확인 요령

I. 별지 제1호 서식(참다랑어 어획증명서)

1. ICCAT BLUEFIN TUNA CATCH DOCUMENT #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 번호)

○ 문서 발급번호 체계

- KR(국가코드)-08(어획연도)-001(기관코드)000(문서발급 일련번호)

※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 확인기관 번호부여 방법

기 관 명	어획문서 발급번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	KR-08-001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KR-08-002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KR-08-003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	KR-08-004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KR-08-005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	KR-08-006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KR-08-007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KR-08-008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KR-08-009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KR-08-01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강릉지원	KR-08-011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	KR-08-012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	KR-08-013000

2. CATCH INFORMATION (어획정보)

가. 어획 정보 작성

어선의 선장 또는 어선의 운영자, 정치망(trap) 또는 축양장 운영자 및 기국(旗國)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어선 또는 정치망(VESSEL/TRAP)의 명칭(NAME), 기국(旗國) CPC(FLAG),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어획일자(DATE), 어획마리수(NO. FISH), 총중량(TOTAL WT kg), 어획수역(AREA - 예 : Mediterranean, western Atlantic, eastern Atlantic 또는 Pacific), 사용된 어구(GRAR - “참조”의 어구 코드명 참고), 어체 평균 중량(AVE WT, kg)을 기재(전체무게가 아닌 경우에는 총중량 및 평균중량으로 표기된 제품유형(가공중량 등)을 구체화 한다.)하여야 하며, 태그번호(TAG NOS)는 이용 가능한 경우 기재 한다.

만약 어획된 수역이 ‘태평양(Pacific)’인 경우에는 ‘어획정보(2. CATCH INFORMATION)’의 수역란(AREA FIELD)에만 기재하고 ‘교역정보(7. TRADE INFORMATION)’ 부분에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어획 정보 확인)

어획 정보는 양륙, 가두리(cage)로 이전 또는 전제되는 모든 참다랑어에 대하여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기국(旗國) CPC의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를 기재한다.

다. 축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역정보에 관한 표기¹⁾

어선의 선장 또는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만약 참다랑어가 양식목적으로 타 CPC로 이전되는 경우 동 부분을 기재한다.

살아있는 참다랑어를 교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F/FR” 및 “RD/GG/DR/FL/OT”를 삭제하고, 선적된 순중량(NET WT kg)을 기입하여야 한

1) ICCAT 권고안에 의거 축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기존 교역 정보외에도 별도의 교역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또한 도시, 지방 및 CPC별(참다랑어가 연안에서 어획된 경우에는, 만약 알고 있다면 CPC의 수역명을 구체화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공해(high seas)”라고 표기한다) 수출지점 및 출발지점과 수출업자 또는 판매자의 회사명, 주소, 서명 및 수출일자를 기재한다.

기국(旗國) CPC가 발급한 태그가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다랑어의 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수출 또는 판매에 대해 권한을 부여 받은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도시, 지방 및 CPC 별로 수입지점 및 최종지점과 수입업자 또는 구매자 회사명, 서명, 도착 및 수입일자 등을 확인 및 기재한다

어선 및 정치망의 CPC가 발급한 태그를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태그는 어획증명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표지의 확인번호는 어획증명서내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연계되어야 한다.

3. TRANSFER INFORMATION (이송정보)

참다랑어가 축양목적으로 견인선박에 이송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어획된 참다랑어를 견인하는 견인선(TOWING VESSEL)의 선명(NAME), 기국(旗國)(FLAG) 및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및 이송되는 참다랑어의 가두리(cages) 숫자(NUMBER) 등을 기입한다.

4. TRANSSHIPMENT INFORMATION (전재정보)

가. 전재 정보 작성

어선의 선장, 정치망의 운영자 또는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참다랑어가 전재되는 경우, 이송시 운반선(CARRIER VESSEL) 선명(NAME), 기국(旗國)(FLAG), 등록항구(PORT - NAME AND COUNTRY), ICCAT 등록번호(ICCAT RECORD NO), 전재일자

(DATE), 위도 및 경도를 표시한 전재위치(PPOSITION(LAT/LONG)) 및 제품유형(F/FR(RD/GG/DR/FL/OT - “참조”의 제품유형 참고)을 기입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전재 정보 확인)

동 정보는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 또는 정치망의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을 기재한다.

5. FARM INFORMATION (축양정보)

가. 축양정보 작성

축양장이 위치해 있는 CPC의 축양장 운영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이하 "축양 CPC")는 참다랑어가가 축양장으로 이송되는 경우, 축양장에 입식되는 시점에 이름(NAME), 축양 CPC(FLAG), 위치(LOCATION) 및 ICCAT FFB 번호별(ICCAT FFB NO.)로 축양시설을 기재한다.

축양 CPC가 국별 샘플링 프로그램(National Sampling Program)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Yes” 또는 “No”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송날짜(DATE)와 가두리 번호(CAGE NO)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두리별로 추정된 참다랑어 마리수(NO. OF FISH), 총중량(TOTAL WT, kg), 평균중량(AVG WT, kg) 및 추정된 크기구성(SIZE COMPOSITION) 등을 기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축양 정보 확인)

동 정보는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을 기재한다.

6. HARVEST FROM FARM INFORMATION (축양정보로부터의 수확)

가. 수확정보 작성

축양 CPC의 축양장 운영자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참다랑어를 축양장으로부터 수확할 때 수확 일자(DATE), 마리수(NO FISH), 원어 총중량(TOTAL ROUND WT, kg) 및 평균중량(AVG WT, kg)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지번호(TAG NOS.)는 이용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 (수확정보 확인)

동 정보는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권한을 부여 받은 축양 CPC 대표자는 이름(NAME), 직책(TITLE) 및 서명(SIGNATURE)을 기재한다.

7. TRADE INFORMATION (교역정보)

가. 교역정보 작성

수출업자 또는 수출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프로그램 권고 07-10”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참다랑어가 수출되기 전에 제품유형(F/FR(RD/GG/DR/FL/OT)), 선적된 순중량(NET WT, kg)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지방 및 CPC 별로 수출지점 및 출발지점과 수출업자 또는 판매 회사명(COMPANY), 주소(ADDRESS), 서명(SIGNATURE) 및 수출일자(DATE)를 기재한다.

나. GOVERNMENT VALIDATION(교역 정보 확인)

동 정보는 CPC가 발급한 태그가 모든 참다랑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 또는 정치망 허가를 받은 CPC의 대표자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는 도시, 지방 및 국가 또는 어업실체별로 수입지점 및 최종목적지점, 수입업자 또는 구매자의 회사명, 주소, 서명, 그리고 도착 및 수입일자를 기재한다.

< 참 조 >

- 모든 참다랑어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의 어획증명서로 한번 이상 교역, 수출 또는 선적거래 실시 경우에는, 원본 어획증명서의 사본을 선박, 정치망 또는 축양 기국(旗國) CPC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어획증명서사본은 원본 어획증명서로서 간주된다.
- 모든 중량은 k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유형은 F/FR(신선 또는 냉동)와 RD(round), GG(gilled and gutted), DR(dressed), FL(fillet) 또는 OT(other)중 하나로 선적된 제품 유형으로 기재한다. "OT"에 대하여는 선적된 제품유형을 기재한다.
- 교역정보(TRADE INFORMATION) 부분에서 운송정보사항 : 관련된 공식문서가 어획증명서에 부착되어야 한다.
- 어구(漁具) 코드는 BB(Baitboat - 미끼낚시선), GILL(Gillnet - 자망), HAND(Handline - 손낚시), HARP(Harpoon - 작살), LL(Longline - 연승), MWT(Mid-water trawl - 중층트롤), PS(Purse seine - 선망), RR(Rod and reel - 릴낚시), SPHL(Sport handline - 스포츠 낚시), SPOR(Sport fisheries unclassified - 스포츠 어업(미분류)), SURF(Surface fisheries unclassified - 표층어업(미분류)), TL(Tended line - 입연승), TRAP(Trap - 정치망), TROL(Troll - 끌낚기), UNCL(Unspecified methods - 미분류 어업), OT(Other type - 기타 어법)로 기재한다

II. 별지 제1호 서식(참다랑어 어획증명서)

1. ICCAT 참다랑어 어획문서번호*

2. 어획 정보

선박명 또는 트랩명*

기국

ICCAT 기록번호

어획지역과 일시 및 사용된 어구*

참치개체 수, 총중량 및 평균중량

표지번호(가능한 경우)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3. 살아있는 어류 교역을 위한 교역정보

제품설명

수출업자/판매자 정보

이동수단에 대한 설명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수입업자/구매자

4. 이송 정보

선적 선박 설명

선박명, 국적

ICCAT 기록번호 및 견인용 케이지(towing cage) 번호(가능한 경우)

5. 환적 정보

운반선 설명

기국

ICCAT 기록번호

일자

항구(항구명 및 나라 혹은 위치)

상품 기술

(F/FR; RD/GG/FL/OT)

총중량(NET)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6. 양식 정보

양식시설 설명

양식장 이름, 양식장 기, ICCAT FFB번호. 및 양식장 위치

국가샘플링프로그램 참여 여부(참여 혹은 불참)

케이지(cage) 기술

입식일자(date of caging), 케이지 번호

개체 기술

개체 수, 총중량 및 평균중량 견적

구조물 규모 견적(<8kg, 8-30kg,>30kg)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7. 양식장 수확 정보

수확 기술

수확 일자

개체 번호, 총중량(대략) 및 평균중량

표지번호(가능한 경우)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8. 유통 정보

제품 기술

(F/Fr; FD/GG/DR/FL/OT)

총중량(NET)

수출자/판매자 정보

수출 또는 출발 위치

수출회사명, 주소, 서명 및 일자

도착국가

수송 기술(관련 문서 첨부)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주소, 서명, 인장, 일자

수입자/구매자 정보

수입 또는 도착지 위치

수입회사명, 주소, 서명 및 일자

Ⅲ. 별지 제2호 서식(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

1. 재수출증명서 문서번호

2. 재수출

재수출 CPC/실체/조업실체

재수출 지점

3. 수입된 참다랑어 설명

생산 유형 F/FR RD/GG/DR/FL/OT

네트 중량(kg)

어획증명서 번호(들) 및 수입 일자(들)

조업선박의 국적(들) 또는 트랩 설치 국가 (적절한 경우)

4. 재수출될 참다랑어 기술

생산유형 F/FR/FE/GG/DR/FL/OT

네트 중량(kg)

위 3항에 상응하는 어획증명서 번호(들)

도착국가

5. 재수출자 신고

성명, 주소, 서명, 일자

6. 정부당국에 의한 유효화

기관명 및 주소

담당관의 성명 및 주소

서명

일자

정부 인장

7. 수입 부분

참다량어 탁송물을 수입하는 CPC의 수입자에 의한 신고

수입자 성명 및 주소

수입자의 대표 성명 및 주소와 일자

수입 지점 : 도시 및 CPC

주의사항 - 참다량어 어획증명서(들) 및 운송문서(transport document)(들)의
사본이 첨부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쿄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관한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관한국제 연합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 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 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도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 속 서 I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의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Ⅱ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 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

제 2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3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기간·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에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한 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7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 |
|--------------------|--------------------|-------|
| 가. 북위 37도 00분, | 동경 123도 40분의 점 | (A1) |
| 나. 북위 36도 22분 23초, | 동경 123도 10분 52초의 점 | (A2) |
| 다. 북위 35도 30분, |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 (A3) |
| 라. 북위 35도 30분, |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 (A4) |
| 마. 북위 34도 00분, |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 (A5) |
| 바. 북위 34도 00분, |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 (A6) |
| 사. 북위 33도 20분, | 동경 122도 41분의 점 | (A7) |
| 아. 북위 32도 20분, | 동경 123도 45분의 점 | (A8) |
| 자. 북위 32도 11분, | 동경 123도 49분 30초의 점 | (A9) |
| 차. 북위 32도 11분, | 동경 125도 25분의 점 | (A10) |
| 카. 북위 33도 20분, | 동경 124도 08분의 점 | (A11) |
| 타. 북위 34도 00분, |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 (A12) |

- 파.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A13)
-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4)
- 거. 북위 36도 45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A15)
- 너.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20분의 점 (A16)
- 더. 북위 37도 00분, 동경 123도 40분의 점 (A17)

2. 양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계약당사자가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계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까지 다음 (1) 및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과도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한국측 과도수역 좌표

-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
-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07분 30초의 점 (K2)
-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30초의 점 (K3)

-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의 점 (K4)
- 마. 북위 32도 11분, 동경 125도 25분의 점 (K5)
- 바. 북위 32도 11분, 동경 126도 45분의 점 (K6)
- 사. 북위 32도 40분, 동경 127도 00분의 점 (K7)
- 아. 북위 32도 24분 30초, 동경 126도 17분의 점 (K8)
- 자. 북위 32도 29분, 동경 125도 57분 30초의 점 (K9)
- 차. 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 28분의 점 (K10)
- 카. 북위 34도 00분, 동경 124도 35분의 점 (K11)
- 타. 북위 34도 25분, 동경 124도 33분의 점 (K12)
- 파.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48분의 점 (K13)
- 하. 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0분의 점 (K14)

(2). 중국측 과도수역 좌표

- 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
- 나. 북위 35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2)
- 다. 북위 34도 00분, 동경 121도 30분의 점 (C3)
- 라.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00분의 점 (C4)
- 마. 북위 31도 50분, 동경 123도 00분의 점 (C5)
- 바. 북위 31도 50분, 동경 124도 00분의 점 (C6)
- 사. 북위 32도 20분, 동경 123도 45분의 점 (C7)
- 아. 북위 33도 20분, 동경 122도 41분의 점 (C8)
- 자.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11분 54초의 점 (C9)
- 차.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0)
- 카. 북위 35도 30분, 동경 122도 01분 54초의 점 (C11)
- 타. 북위 35도 30분, 동경 121도 55분의 점 (C12)

2.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승선·정선·승선검색 등을 포함한 공동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그 어선의 명부를 상호 교환한다.

5.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조

양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각 체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연안에서 해난이나

기타 긴급사태를 당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구조 및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상황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악천후 또는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II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구 등에 피난할 수 있다. 해당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12 조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필요한 자료교환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 13 조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4.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제2항(1)의 권고를 존중하고, 제2항(3)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I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허가에 관한 아래 조치를 취한다.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 제3조에 정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발급에 있어 적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에 관한 절차규정(허가증의 신청과 발급, 어획량에 관한 통계자료제출,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 등)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규정한 어선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부속서 Ⅱ

이 협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아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관련 항구를 관할하는 항구감독기관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연락방법에 대하여는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보한다.
3. 각 계약당사자의 어선이 타방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연락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명 · 호출번호 · 현재위치(위도 · 경도) · 선적항 · 총톤수 · 전장 · 선장의
성명 · 선원수 · 피난이유 · 피난요청목적지 · 도착예정시각 및 통신연락
방법

VI. 원양어업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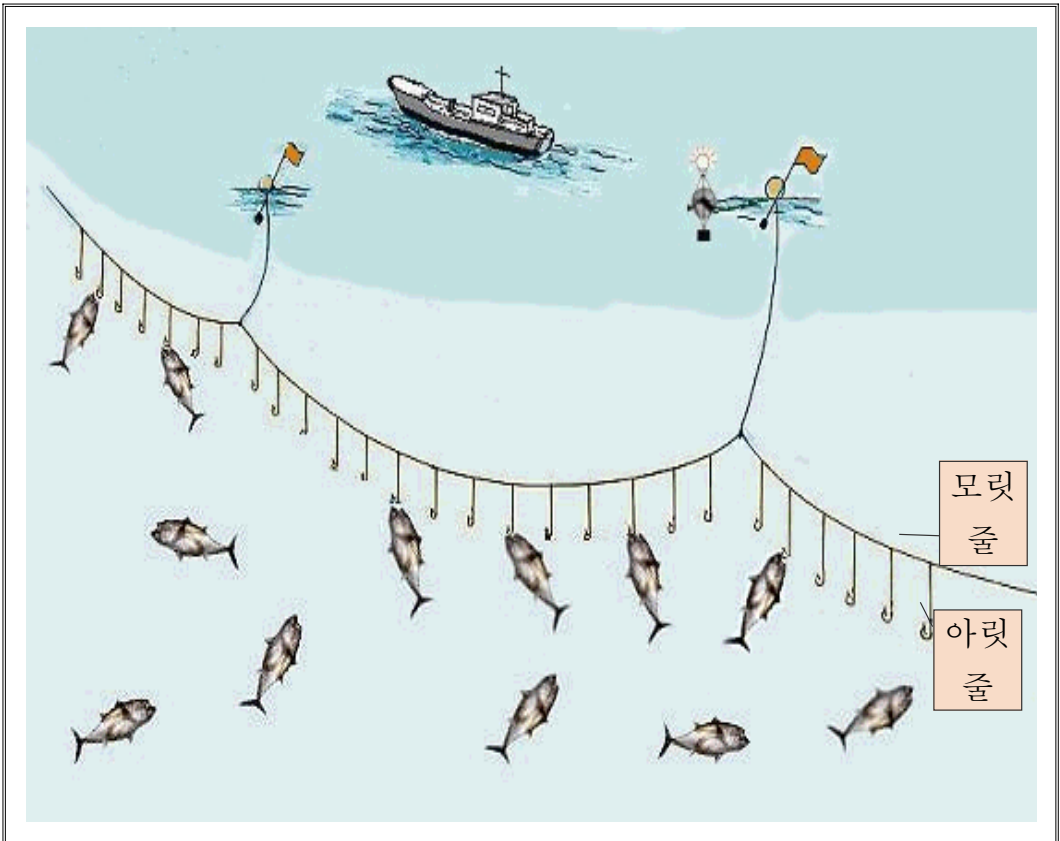
1. 참치연승어업 405
2. 참치선망어업 406
3. 원양트롤어업 407
4. 원양봉수망어업 408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409
6.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어업) 410

참치연승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25개사 165척(평균 300~500톤급)
- 주요조업구역 : 태평양 중서부, 인도양, 대서양
- 어획량 : ('04) 54천톤 → ('05) 50천톤 → ('06) 46천톤 → ('07) 45천톤
- 선령(165척) : (15년이하) 3척, (16~20년) 91척, (21년이상) 71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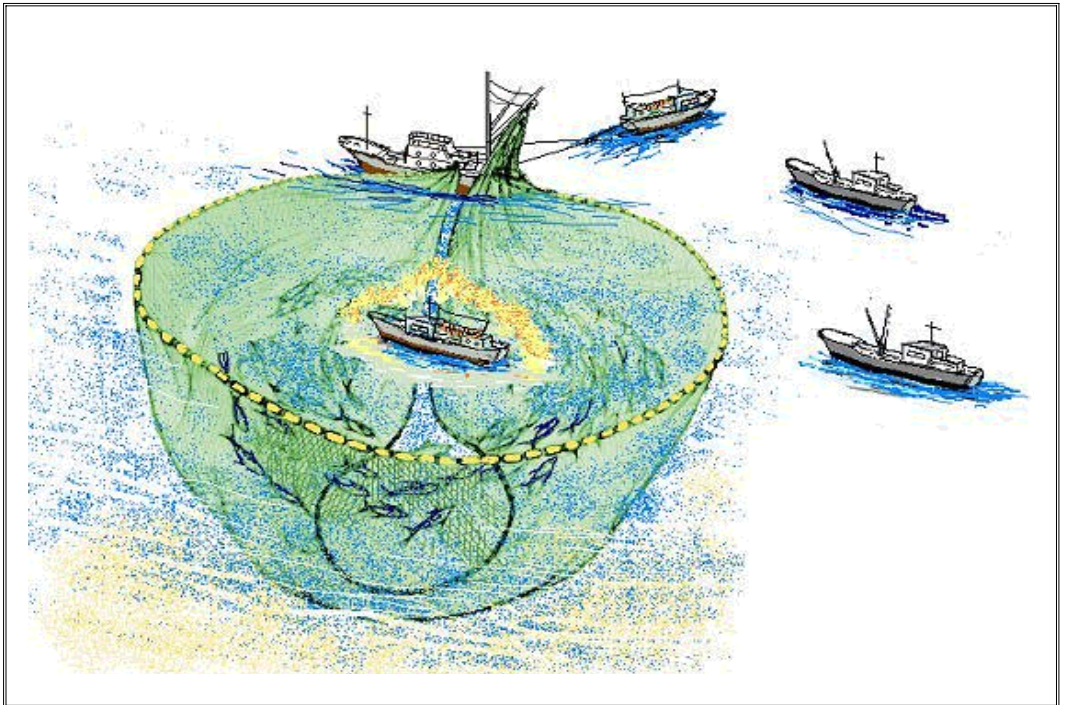
- 길게 늘어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마다 아릿줄을 달고 꽂치, 오징어 등 미끼를 이용하여 참치가 낚시에 걸리도록하여 어획

참치선망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6개사 28척(평균 800~1,500톤급)
- 주요조업구역 : 중서부 태평양
- 어획량 : ('04) 185천톤 → ('05) 211천톤 → ('06) 249천톤 → ('07) 255천톤
- 선령(28척) : (15년이하) 2척, (16~20년) 4척, (21년이상) 22척

《조업방법》



- 긴네모꼴의 그물로 가다랑어등 어군을 둘러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어획

원양트롤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52개사 122척(100톤~5,000톤급)
 - 북양트롤(러시아) 6척, 해외트롤 116척
- 주요조업구역 :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뉴질랜드 등
- 어획량 : ('04) 205천톤 → ('05) 215천톤 → ('06) 236천톤 → ('07) 266천톤
- 주요어종 : 명태, 돔류, 조기류, 민어류, 오징어류, 기타저서어류
- 선령(122척) : (15년이하) 3척, (16~20년) 5척, (21년이상) 114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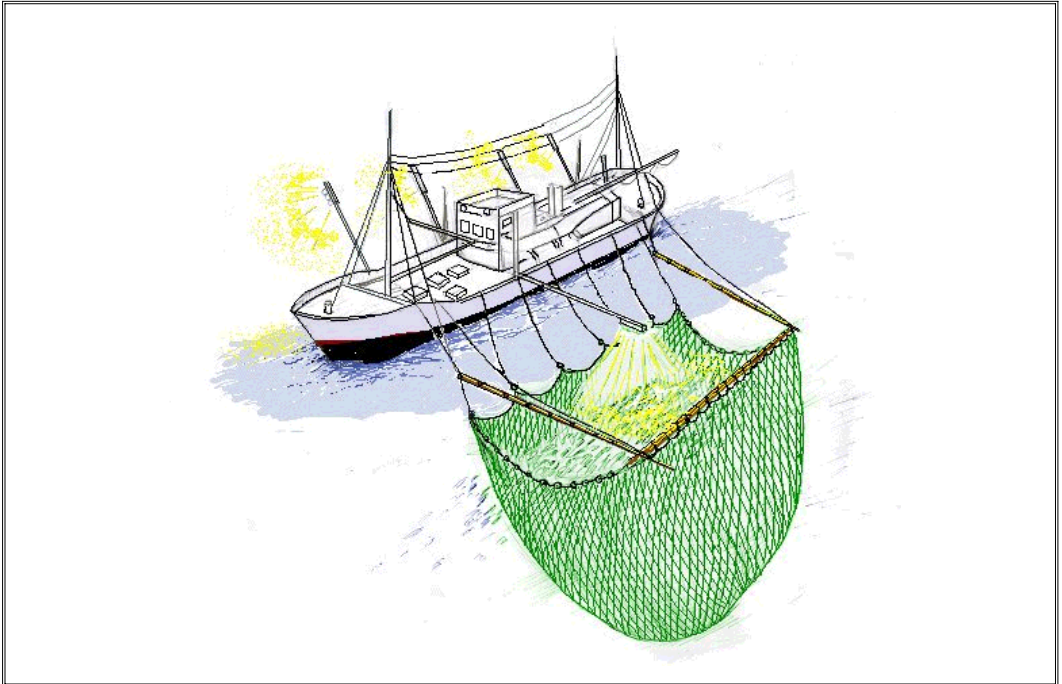
- 끌줄, 전개판, 후릿줄, 뜸줄과 발줄 및 힘줄의 순으로 연결하여 예망되며, 어획된 고기는 끌자루에 담겨 인양 처리, 현재 대부분 선미식으로 예망

원양봉수망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17개사 20척(평균 400톤급)
 - 원양오징어채낚기 겸업선 19척, 봉수망 전업선 1척
- 주요조업구역 : 일본 산리쿠 근해, 러시아 남쿠릴 주변
- 어획량 : ('04) 23천톤 → ('05) 41천톤 → ('06) 12천톤 → ('07) 12천톤
- 주요어종 : 꽁치
- 선령(20척) : (16~20년) 5척, (21년이상) 15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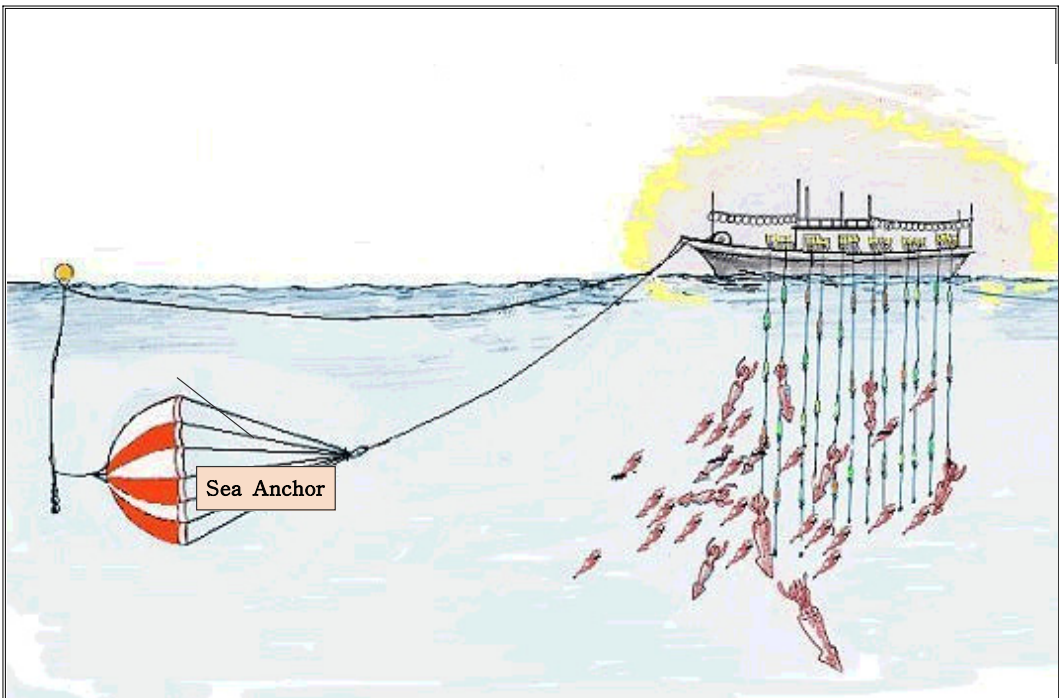
- 집어등으로 어군을 선박의 우현에 모이도록 하고, 그물을 선박 좌현에 보자기 모양으로 전개하여 유도등을 이용하여 그물속으로 어군을 유도한 후 돌음줄 및 조임줄로 그물을 감아서 어획함.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29개사 30척(평균 500톤급)
 - 원양봉수망 겸업선 19척, 원양외줄낚시 겸업선 1척 포함
- 주요조업구역 : 남서대서양 포클랜드어장 및 공해수역
- 어획량 : ('04) 25천톤 → ('05) 28천톤 → ('06) 88천톤 → ('07) 116천톤
- 주요어종 : 오징어류
- 선령(30척) : (16~20년) 6척, (21년이상) 24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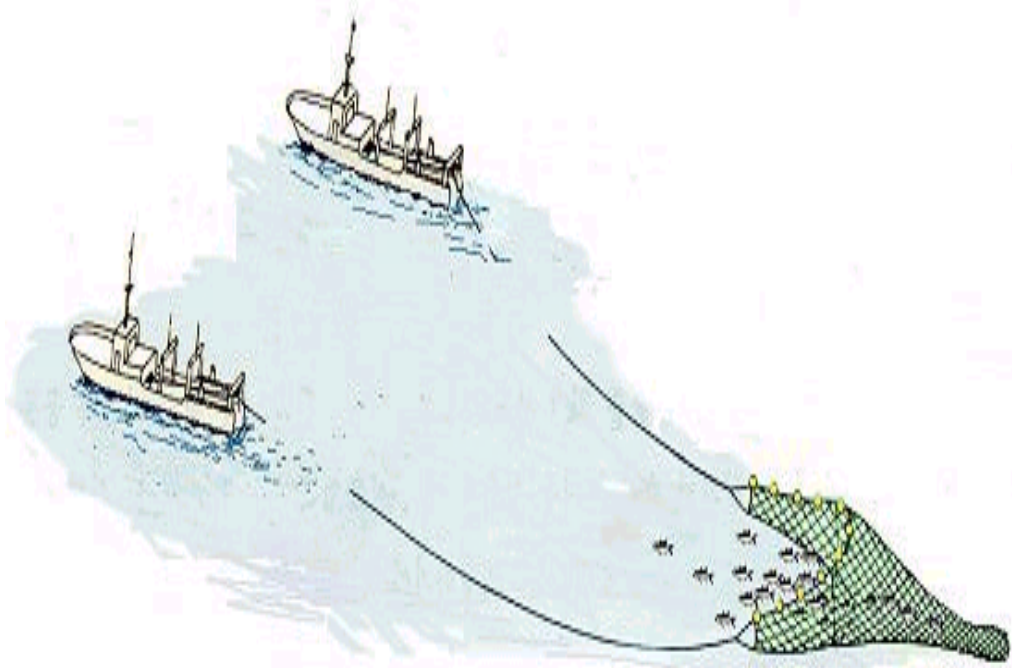
《조업방법》



- 집어등으로 어군을 선박밑에 모이도록 하고, 자동조상기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여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어획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 【 근해어업 】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평균 799마력(1척당) / 척당 약 12~1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9월~6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갈치, 삼치, 고등어, 참조기, 병어류, 오징어, 전갱이, 가자미류, 말쥐치, 붕장어, 갑오징어
- 조업모식도



VII. 수역도

1. 지역기구도(1)
2. 지역기구도(2)
3. 원양어업어장도
4.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

1. 지역기구도(1)

2. 지역기구도(2)

3. 원양어업어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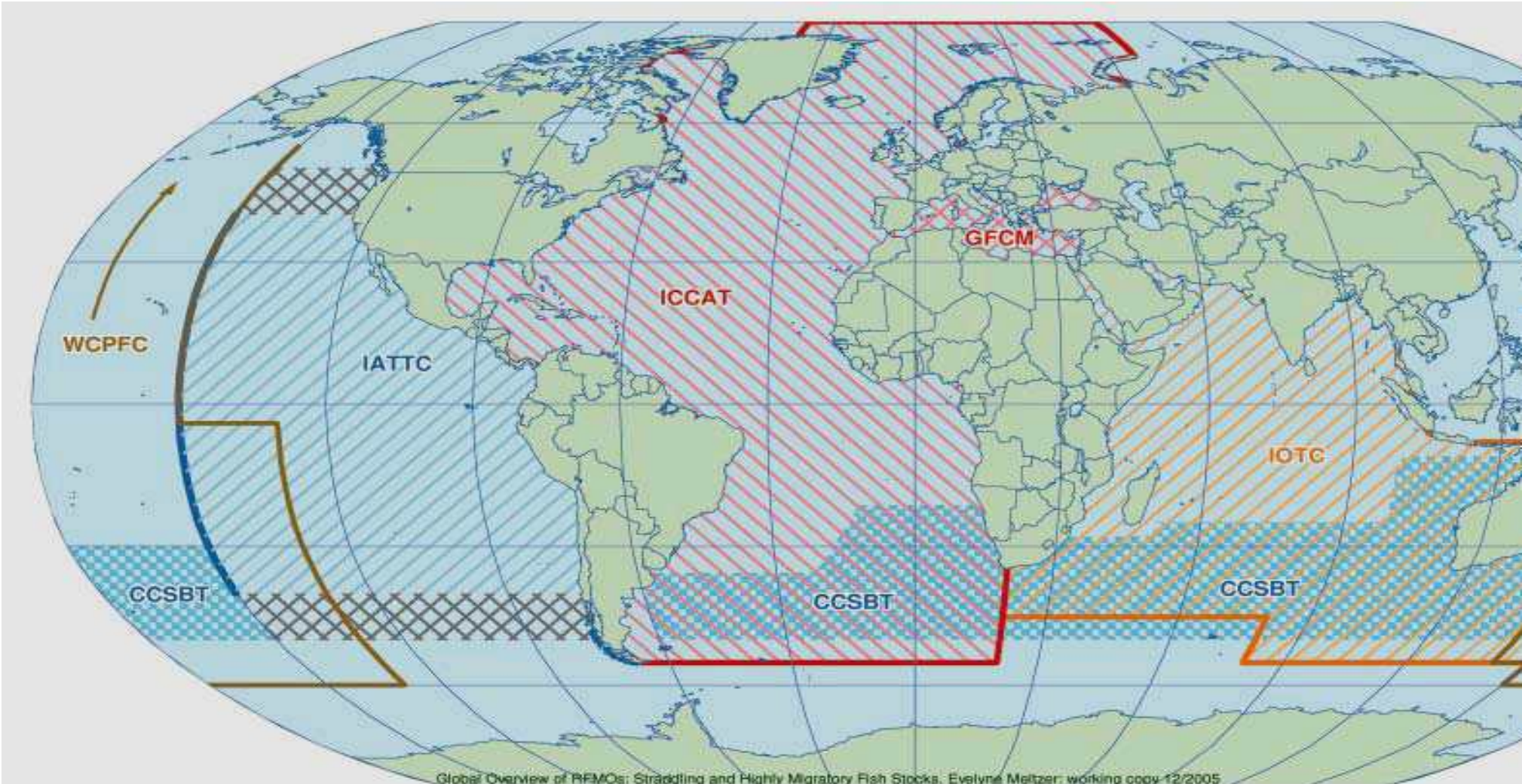
4. 한중일 어업협정수역도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인 쇄 일 2010년 6월
발 행 일 2010년 6월
발 행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편 집 인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장
발 행 처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중앙동 1번지
전 화 (02)500-2395~6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인 쇄 처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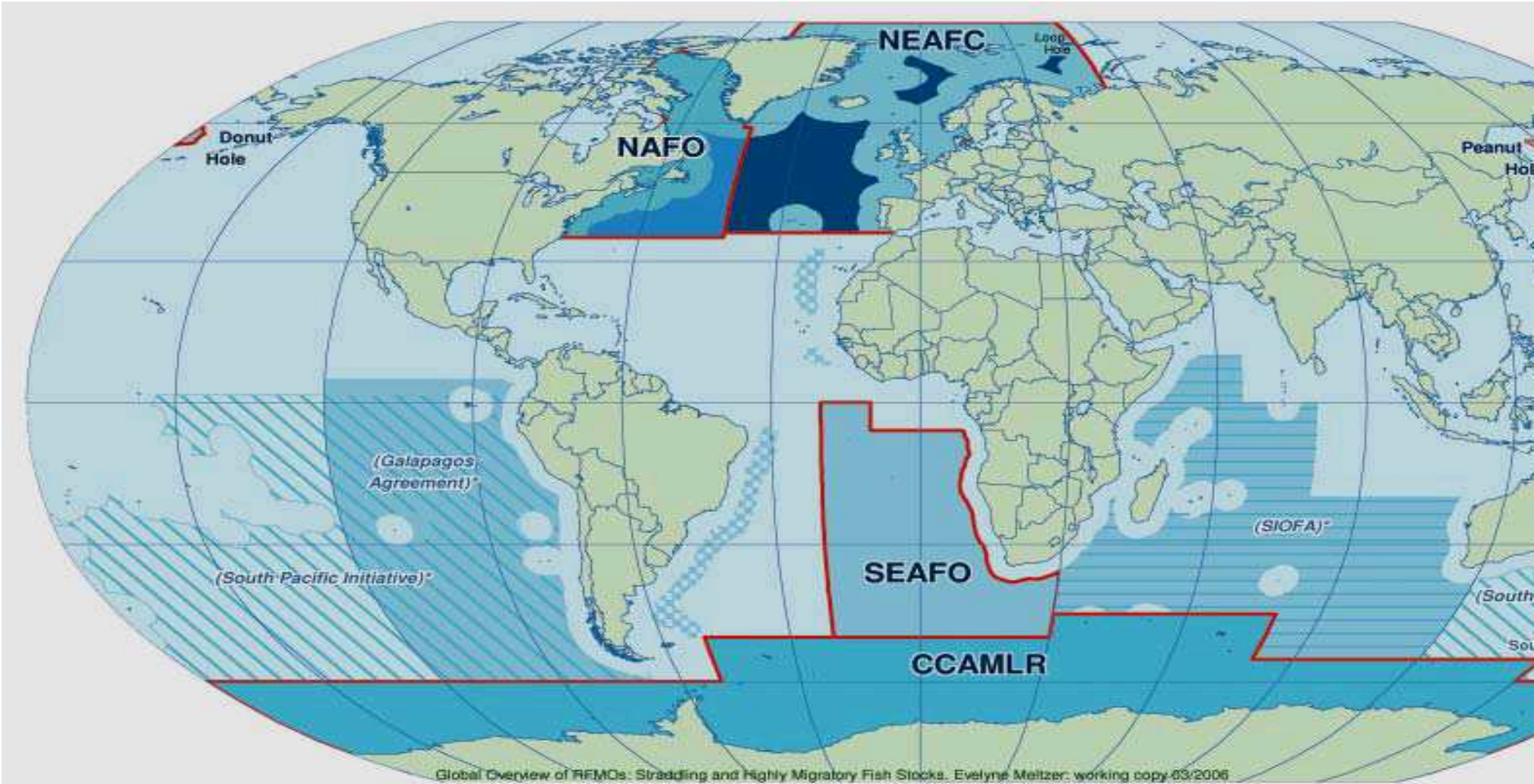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Global Overview of RFMOs: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una and Tuna-Like)**

 IATTC  ICCAT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Evelyne Meltzer, working copy 03/2006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Map Projection: Robinson

— RFMO Boundary

(*) RFMO area under negotiation, not yet adopted or not yet in force.

SEA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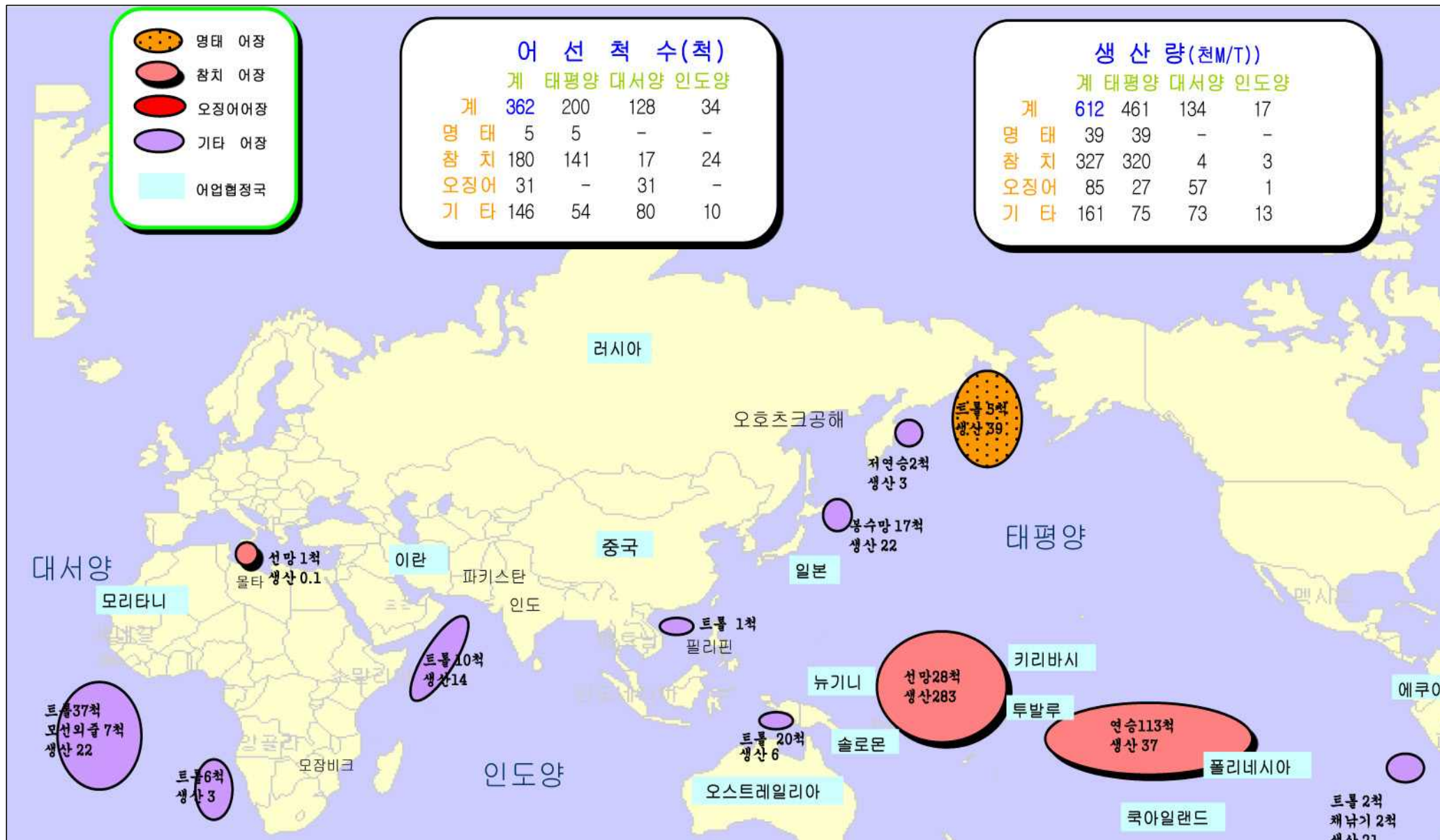
NAFO Convention Area

(Galapagos Agreement)* (Not yet in force)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Fish Stocks

遠洋漁業漁場圖

2009.12.31 현재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 이 수역도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항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중 양측 과도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 2005년 6월 30일 자로 양국의 EEZ로 포함됨.

러시아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한·일 중·일 잠정조치수역